

연 구 진

이희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이 효(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 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국내 경제상황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으나 영유아 보육, 아동급식, 기초연금, 누리과정,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지출의 팽창이 급속도로 이루어져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하가 걸리고 있음
 - 재정운용의 기본인 건전성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점임
- 2014년 6월 4일, 대한민국 전역에서는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선거 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과반수 이상인 11개 자치단체장이 교체되었음
 - 2015년은 처음으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린 1995년 이후 20년이 되는 해임과 동시에, FY2014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첫 재정성과를 분석해보는 해임
- 지난 2014년 지방재정분석은 우수단체만 공개하였던 기존의 재정분석과 달리, 정보공개를 강조하는 정부 3.0의 기조에 맞추어 전 자치단체의 등급을 공개하였음
 - 이로 인해 지방재정분석에 대한 자치단체 및 주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진 상황임

□ 연구목적

○ 상기 배경에 따른 지방재정분석의 위상 및 자치단체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현행 재정분석 체계 및 세부 지표를 검토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 으며, 활용방안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제언

□ 주요 연구내용

- O 재정건전성 분야 지표 개선
 - 지표 간 상관관계가 높아 중복 우려가 있는 지표 점검
- 재정분석 체계 정합성 강화
 - 효율성과 재정운용노력도로 나누어져 있는 현행 체계의 재검토
 - 유사 중복 우려가 있는 지표 파악 및 통합 검토
- 자치단체 노력 강화 유도
 - 재정분석은 지방재정의 현황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분석기능 이외에도종합점수를 통한 자치단체 재정상황의 평가기능도 가지고 있음
 - 재정분석 지표를 상태지표와 노력지표로 구분하였을 때, 노력지표적인 성격이 높은 지표들의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안 마련
- 정책유도기능 강화
 - 재정분석 지표의 방향성을 파악하여 재정분석 지표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이 어느 방향으로 유도될 것인지 검토
 - 재정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이므로 정책유도기능 강화방안 고려
- 재정분석 평가방안 개선
 - 전년도 실적에 따라 현년도 성과가 크게 좌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방안 검토

- 자치단체들의 지속적인 재정운용노력 유지를 위한 절대평가 기준검토
- 지방재정분석 결과의 활용도 제고 방안
 -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재정의 종합적인 진단 및 평가기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결과 공개 시 자치단체들 간의 서열화 우려, 중앙정부에 의한 자치단체의 통제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단체장들의 정치적 악영향 우려 등으로 인해 그 활용도가 제한되어 왔음
 - 재정분석 결과 공시와 조치사항 공시 등을 통한 활용도 제고 및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재정관리 기법 교육 등 사후관리의 강화 방안 검토
- 2015년도 재정분석을 위한 신규 체계는 건전성·효율성의 2개 분야 체계를 중심으로 국가 정책과 관련된 부가적인 지표를 모은 정책유도 분야의 3개 분야로 구성하도록 함
 - 건전성 분야 체계는 2014년도 재정분석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구성 지표는 실제 데이터에 근거하여 건전성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지표들로 재구성
 - 효율성 분야 체계는 2014년도 재정분석 체계에서 효율성과 재정운용노
 력을 통합하여 재구성
 - 이상의 2가지 분야 이외에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지표들을 모
 아서 정책 방향에 맞도록 자치단체의 행태를 유도하는 지표를 구성하도
 록 하고, 정책유도 지표로 명명하기로 함
- 2015년 재정분석 지표 개선안은 건전성 7개(광역시도는 8개), 효율성 13개의 총 20(+1)개 지표에 정책유도 페널티 지표 3개로 개편되었으며, 총점은 건전성 500점, 효율성 500점의 1,000점 만점으로 결정함

<표> 2014년 지표와 2015년 지표(안) 비교

2014년 지표		2015년 지표(안)		
분야	분석지표	분야	분석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실질수지비율		2. 실질수지비율	
	3. 경상수지비율		3. 경상수지비율	
I . 재정 건전성	4. 관리채무비율	재정	4. 관리채무비율	
	5. 관리채무 부 담비율		참고지표로 이동	
	6. 관리채무상환비율	건전성	참고지표로 이동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5.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8. 공기업부채비율		6. 공기업부채비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8. 실질채무비율(신규, 광역만)	

	2014년 지표		2015년 지표(안)	
분야	분석지표	분야	분석지표	
II.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15.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9 자체세입비율(증감률) 10.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11.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참고지표로 이동 12.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참고지표로 이동	
Ⅲ. 재정 운용 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재정 효율성	13. 지방세징수율(제고율) 변경 14.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감률) 변경 15.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변경 16. 세외수입체납액비율(증감률) 변경 17.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8. 인건비 절감 노력도 19.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20.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21.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변경 참고지표로 이동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2016년 신규)	
		정책 유도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상생발전기금 확보 위탁금 편성 후 보조금 집행 자체사업 보조금 절감(2016년 신규)	

^{※ &#}x27;14년 5개 지표(관리채무부담비율, 관리채무상환비율, 의무지출비율, 자본시설지출비율, 민간이전 경비절감노력도)는 참고지표로 이동하고, '15년 3개 지표(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상생발전기금 확보, 위탁금 편성 후 보조금 집행)는 신규 추가하고, '16년 2개 지표(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자 체사업보조금절감) 추가

□ 정책제언

- O 재정분석 환류기능 강화
 -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 될 경우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국고보조사업의 운영 등 개선점을 발굴하여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 전년도 분석결과 미흡사항을 익년도 예산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함
- 재정분석결과의 자치단체 수용성 강화
 - 시행령에 나와 있는 조항을 열거적 조항이 아닌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 하고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하위 4개 단체를 진단단체로 선정하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정분석 우수단체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 및 연찬회 필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검토 및 개선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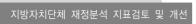


제1장 서	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3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6
1.	연구범위6
2.	연구방법6
제2장 지	방재정분석제도의 현황 및 신 규분 석체계 …9
제1절	재정분석 개요 11
1.	재정분석의 필요성11
2.	지방재정분석제도의 목적과 개념 12
	법적 근거와 분석 절차 14
제2절	재정분석 지표의 변천15
1.	지방재정분석 추진 경위15
2.	재정분석 기본 운영방향 18
	지방재정분석지표의 변천 19
제3절	재정분석 신규체계 마련25
1.	2014년 재정분석 성과와 반성25
2.	기본체계 26
3.	신규체계의 구성31
	방재정분석 지표개선
제1절	2015년도 지방재정분석 기본방향 3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 2015년도 기본 방향 37
2. 지표 선정 기준38
제2절 2014년 재정건전성 지표의 검토 39
1. 재정수지39
2. 채무관리 41
3. 지방공기업 관리46
4. 개선 사항 및 자치단체 의견 검토 47
5. 데이터 시뮬레이션(FY2013) ····· 52
제3절 2014년 재정효율성 지표의 검토 59
1. 수입관리 59
2. 지출관리62
3. 개선사항 및 자치단체 의견 검토 69
4. 데이터 시뮬레이션(FY2013) ······ 75
제4절 정책유도 지표의 검토 78
1. 정책유도 지표의 도입 78
2. 2015년 도입될 페널티 지표 82
제5절 지표개선안 종합 검토 84
1. 종합 가중치의 설정 84
2. 2014년 지표와의 비교 86
3. 재정분석 추가가능 지표 88
제4장 지방재정분석 실효성 강화방안91
제1절 재정상황에 대한 미래예측기능 강화 93
1. 거시적 지방재정정책 개발 및 활용 93







2.	환경적, 조직적 변수를 활용한 재정문제의 원인 분석94
3.	미래예측기능 향상을 위한 방법론 94
	재정진단기준의 개선96
제3절	재정분석 결과 활용도 제고 97
1.	예산편성에의 반영여부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97
2.	재정분석결과와 조치사항 동시 공시 98
3.	사후관리 강화 98
4.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99
5.	재정문제파악의 장기적 자료 제공 100
6.	지방재정 관리제도들 간의 연계 강화… 101
제5장 요	약 및 정책건의103
제1절	연구내용 요약105
제2절	정책제언 110
〈 부록 1〉	대정분석지표개선TF 주요 내용(1차-8차) · 115
〈부록2〉	AHP 평가를 위한 설문132
/ロロッ) /	2015년도 기바대자보시되고

표 차 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표 2-1> 2010년도 지방재정분석지표의 특징 21
<표 2-2> 유시단체 재정비교를 위한 자치단체 유형화 23
<표 2-3> 2012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23
<표 2-4> 2013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24
<표 2-5> 2014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25
<표 2-6> 2015년 지방재정분석 분석체계 33
<표 3-1>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평가 48
<표 3-2> 재정 건전성 지표 개선안 52
<표 3-3> 수지관리 지표 간 상관계수 52
<표 3-4> 채무관리 지표 간 상관계수 53
<표 3-5> FY 2013 도 단위 실질채무현황 ····· 54
<표 3-6> FY 2013 도 단위 관리채무비율과
실질채무비율의 비교55
<표 3-7> 2015년 가중치 비율(안) 57
<표 3-8> 2015년 건전성 가중치 비율과 2014년도
비교 58
<표 3-9> 2015년 가중치 비율(안)
<표 3-10> 2015년 효율성 기중치 비율과 2014년도
비교77
<표 3-11> 2015년 총 배점과 2014년도 비교 84
<표 3-12> 총 배점 시뮬레이션 결과 ····· 85
<표 3-13> 2014년 지표와 2015년 지표(안) 비교 87
<표 5-1> 2015년 지방재정분석 분석체계 106
<표 5-2> 2014년 지표와 2015년 지표(안) 비교 107
<표 5-3> 2015년 재정분석 지표 가중치(안) 109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검토 및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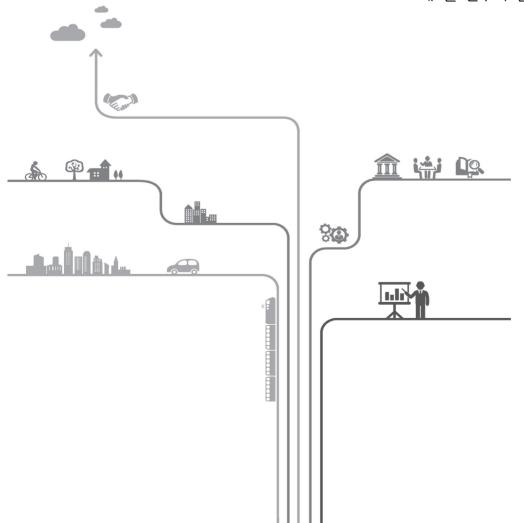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흐름	도 ·····		······································
<그림 2-1>	혐의의 현	효율성과 광의의	효육성 ·	29



제1<mark>장</mark>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지방재정의 환경 변화
 -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국내 경제상황은 저성장 기조
 에 접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음
 - 세입측면에서 국세는 2013년에 8.5조 원, 2014년에 11.1조 원의 세수결
 손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직접 연계되는 내국세 수입은 2015년에 184.5조 원으로 편성되어 교부세 규모의 축소도 예상되고 있음
 - 국가시책 지원을 위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이 크게 증가(2011년, 15.2 조 원)하면서 지방 세수도 감소하였음
 - 반면, 세출측면에서는 영유아 보육, 아동급식, 기초연금, 누리과정, 기초 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지출의 팽창이 급속도로 이루어져 국가재정과 지 방재정에 막대한 부하가 걸리고 있음
 - 재정운용의 기본인 건전성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점임
 - 그러나 무리하게 대형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부실한 재정 관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자치단체도 일부 존재함
 - 지방재정분석을 통해 전 자치단체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일부 우려 단체를 파악하여 재정 위기를 예방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임

○ 지방자치 화경의 변화

- 2014년 6월 4일, 대한민국 전역에서는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 되었으며, 선거 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과반수 이상인 11개 자 치단체장이 교체되었음
- 2015년은 처음으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린 1995년 이후 20년이 되는 해임과 동시에, FY2014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첫 재정성과를 분석해보는 해임
- 재정분석 결과 전체 공개 이후 첫 번째 분석
 - 지난 2014년 지방재정분석은 우수단체만 공개하였던 기존의 재정분석과 달리, 정보공개를 강조하는 정부 3.0의 기조에 맞추어 전 자치단체의 등급을 공개하였음
 - 이로 인해 지방재정분석에 대한 자치단체 및 주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진 상황임
 - 지방재정분석의 위상 및 자치단체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임

2. 연구목적

- O 재정건전성 분야 지표 개선
 -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안정성과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
 - 지표 간 상관관계가 높아 중복 우려가 있는 지표 점검
 -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보다 잘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지표 선정과 관리
- O 재정분석 체계 정합성 강화
 - 효율성과 재정운용노력도로 나누어져 있는 현행 체계의 재검토
 - 유사 중복 우려가 있는 지표 파악 및 통합 검토

○ 자치단체 노력 강화 유도

- 재정분석은 지방재정의 현황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분석기능 이외에도 종합점수를 통한 자치단체 재정상황의 평가기능도 가지고 있음
- 재정분석 지표를 상태지표와 노력지표로 구분하였을 때, 노력지표적인 성격이 높은 지표들의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안 마련

○ 정책유도기능 강화

- 재정분석 지표의 방향성을 파악하여 재정분석 지표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유용이 어느 방향으로 유도될 것인지 검토
- 재정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이므로 정책유도기능 강화 방안 고려

○ 재정분석 평가방안 개선

- 전년도 실적에 따라 현년도 성과가 크게 좌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방안 검토
- 자치단체들의 지속적인 재정운용노력 유지를 위한 절대평가 기준검토

○ 지방재정분석 결과의 활용도 제고 방안

-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재정의 종합적인 진단 및 평가기능을 갖추고 있음
 에도 결과 공개 시 자치단체들 간의 서열화 우려, 중앙정부에 의한 자치
 단체의 통제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단체장들의 정치적 악영향 우려 등으로 인해 그 활용도가 제한되어 왔음
- 재정분석 결과 공시와 조치사항 공시 등을 통한 활용도 제고 및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재정관리 기법 교육 등 사후관리의 강화(방안 검토)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 재정건전성 분야 개선안
 - 지표 간 상관관계가 높아 중복 우려가 있는 지표 점검 및 조정안
- 재정분석 체계 개선안
 - 효율성과 재정운용노력도의 통합안
- 자치단체 노력 강화 유도안
 - 노력지표적인 성격이 높은 지표들의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안
 - 자치단체들의 지속적인 재정운용노력 유지를 위한 절대평가 기준검토
- O 재정분석 종합평가 개선안
 - 지표분석방법 등 종합평가 방안
 - 지표별 가중치 부여
- O 재정분석 결과 활용도 개선안
 - 재정분석 결과활용을 위한 종합보고서 개선방안
 - 재정분석결과 연찬회, 재정관리기법 교육 등 사후관리 강화안

2. 연구방법

- O 문헌연구
 - 선행연구 검토 등 재정분석에 관한 이론 고찰
- 전문가 의견 수렴
 - 외부전문가 Workshop, 자문회의 개최
 - Task Force(TF) 구성 후 전문가 토론을 통해 정책대안 마련
 - ※ 학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정자치부 공무원 참여

- 현행 재정 분석에 대한 개선 의견 수렴
- 재정분석 지표체계 및 평가방법 관련 의견 수렴
- 재정분석 가중치 부여를 위한 분석적 계층화(AHP) 조사 시행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시뮬레이션

현황 분석

- 2014년도 재정분석 데이터(FY 2013)를 활용하여 2015년도 체계 변경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시

이론과 현황 ⇒ 운영실태 및 쟁점 분석 개선(안) 도출 \Rightarrow 자 건전성, 이론 고찰 문 분석대상 효율성. 기본방향 회 재정운용노력 정 의 책 원인 진단 및 재정분석 체계 및 TF회의 Ţ 대 쟁점사항 검토 개편(안) 실 안 증 재정분석 지표분석방법 등 분

데이터

실증분석

석

<그림 1-1> 연구흐름도

시뮬레이션

제2장 지방재정분석제도의 현황 및 신규분석체계

제1절 재정분석 개요 제2절 재정분석 지표 변천 제3절 재정분석 신규체계 마련 نها لي 0

제2장

지방재정분석제도의 현황 및 신규분석체계

제1절 제정분석 개요

1. 재정분석의 필요성

- 정부 개혁, 지방분권의 시대적 패러다임(paradigm) 변화에 부응하여 지방재 정의 자율성, 책임성, 건전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 주는 제도적 장치의 보 강이 요구됨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재정책임성 제고 장치
 -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여 재정위기를 사전예방
-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로서 공생·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주기적으로 종합 점검하는 시스템 필요
 - 재정의 현재 상태 및 위상(position), 운영 실태 및 개선노력 파악
 - 재정운영의 불건전성, 비효율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조기경보시스템
 역할
 - 재정분석결과 환류·반영 및 차등적 재정지원 기준 활용
 - * 2009년도부터 재정분석결과 중 재정효율성 분야의 10개 지표가 보통교부세 배 분과 직접 연계되었으며, 2014년도의 경우 재정운용노력도(10개 지표)가 보통교 부세 배분과 연계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및 예산절감의 노력도와 예산운영의 성과를 객관 적으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할 시대적 당위성이 부각됨
 -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계획·결과를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
 - 재정 선진화를 위해 주민감시·통제 및 참여 유도
- 재정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유형별 재정비교표를 제시해줌으로써 자체적

으로 재정운영의 상황을 점검·학습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재정선진화를 유도

- 자치단체 스스로 자체 재정진단을 할 수 있는 준거 제시
-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 및 재정운영의 선진화에 기여
- 모든 지역의 주민이 일정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보장받도록 재정 측면의 균형발전 정도를 파악하는 장치가 요구됨
 - 전국 평균 또는 국가 최소 수준(national minimum)의 서비스 공급
 - 재정 측면에서의 자치단체 간 재정성과와 균형 발전 정도 파악

2. 지방재정분석제도의 목적과 개념

1) 도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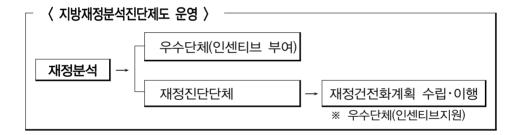
- 지방재정 운영결과에 대한 정례적인 분석·공개를 통해 지방재정운영의 건 전성·효율성·책임성 확보와 재정위기 사전예방
-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진단을 실시 하고, 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를 통해 미흡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 한 실질적 지원기능으로서 역할
 -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진단 역량 강화에 기여
 - 재정분석 결과에 대한 분야별·지표별 재정운용방향 제시
 - 재정운영 문제요인(구조적, 관리적) 도출 및 개선전략 마련
- 재정분석제도는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운영 실태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재정·통계자료를 토대로 종합 점검·분석·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의 노력을 진작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지방재정분석의 정책목적은 재정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실한 정부 관리"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임

2) 개념과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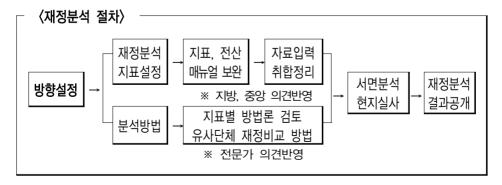
- 지방재정분석제도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핵심 재정·회계 관련 측정수단을 활용하여 재정분석을 실시한 다음, 분야별·지표별 분석결과 및 유사단체별로 재정비교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실질적 재정관리 수단임
 - 재정분석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재정·재무관련 사항을 정교한 분석기법을
 통해 전체 현상을 파악하면서 구체적이고 비교 가능한 측정 결과를
 제시한
 - 분석과정에서는 각 분야별/지표별 핵심 분석지표에는 활용되지 않지만, 지방재정의 상태·운영·성과 등에 관한 각종 참고정보들이 활용됨
 - 재정분석 결과의 활용과 연계하여 보완·보충·참고수단으로 기능
 - 재정통계 정비 및 분석지표에 대한 세부내용 분석에 활용
- 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수요자에 대한 재정정보 제공, 그리고 국가의 지방재정에 대한 거시적 조망(점검) 및 정책 활용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님
 - 지방재정분석은 자치단체의 수입·지출 및 재정수지, 자산·부채와 관련 정책이 미칠 긍정 및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는 "사전적 활동"의 성 격과 정책(예산) 집행 이후 나타나는 상태와 결과를 측정하는 "사후적 활동"의 특성을 함께 지님
- 유사단체별 재정비교표를 작성·공개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가 동 급단체의 상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율적 분 석기능을 강화
 - 인구수, 재정규모, 재정력, 인구증감률 등을 기초로 자치단체를 유형화 (14개 그룹)
 - 유사단체 재정비교표를 활용한 재정위상 확인 및 점검
 - 유사단체 상위수준 목표설정 및 개선 유도

3. 법적 근거와 분석 절차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 지방재정부석진단제도의 유영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결과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
 - 재정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 실시
- 재정진단단체를 대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재정건전화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권고
- 재정분석결과 및 재정건전화이행 우수단체에 대해 정부포상 및 재정 인센티 브 지원 및 분석결과 공개



○ 지방재정분석 절차



제2절 기재정분석 지표의 변천

1. 지방재정분석 추진 경위

-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해 1998년부터 10개의 분석지표를 활용, 재정운영 결과를 분석·공개하였음
 - 1998년도부터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운영
 - 10개 재정지표(재정상태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재정분석
- 2005년도에 지방재정분석제도를 혁신적으로 확대 개편함 [목적]
 - 지방재정의 총량,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재정책임성 강화
 - 재정책임성 견제·점검수단으로서의 역할 강화
 - 상호비교학습을 통한 재정운영 자율통제시스템 구축
 - OECD 등 국제수준과 보조를 같이하는 선진기법 반영

[주요 내용]

- 10개의 분석지표를 30개 분석지표로 확대(정성지표 개발 등)
- 분석의 신뢰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현지실사(전 자치단체)
- 분석결과 5개 자치단체 유형별 등급 공개(광역 3등급, 기초 5등급)
- 우수단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강화 등(A등급 자치단체 특별교부세 지원)
- 재정분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연구기관에 위탁
- 2006~2007년도에 분석지표를 조정하고 분석방법을 개선하였음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형 국가정책 구현에 따른 지방재정의 총량 및 자율
 성 확대에 상응하는 재정책임성 강화 필요
 - 재정책임성(fiscal accountability)의 견제·점검 수단인 새로운 지방재정분 석제도의 정착

- 납세자인 주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재정운영 자율 통제시스템 구축
 - ① 개선노력도, 주민만족도 지표 등 개발(지방세징수율 등)
 - ②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연구기관에 위탁(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재정분석실시단 운영(교수, 연구원, 공인회계사, 공무원 등 110명)
 - ③ 신뢰성 확보 차원의 서면분석 및 현지실사 병행
 - ※ 현지실사(자료검증, 비계량지표 평가 : 전 자치단체 대상)
 - ④ 분석결과 공개를 통한 주민자율통제기능 강화(등급별 공개)
 - ⑤ 우수단체 특별교부세 지원, 부진단체 재정진단 시행
- 2008년도에는 광역단체 주관으로 자체 재정분석을 실시
 - 지표별 적정기준을 마련하여 재정분석결과 지표별 등급 부여
 - 자치단체에서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자치단체 종류별/분야별 우수
 단체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종합분석 후 심층진단 여부를 결정하고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권고 및 해 당단체는 자체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
- 2009년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국가정책이행 및 재정투명성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그동안 예산회계제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정정보의 측정 필요성과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재정분석의 기본 틀과 지표체계를 개편함
 - 복식부기회계제도(2007년), 사업예산제도(2008년) 도입에 따른 새로운 정보를 측정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와 사업예산 관련 지표를 반영
 - 국제기준(IMF) 반영을 위해 통합재정수지비율 포함
 - 유사단체별 재정비교표의 작성·공개로 자율적 재정분석 기틀 마련
- 2010년에는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분야에 걸쳐 20개 재정분석지표를 개발하고 분야별 등급화를 자치단체에 공지하는 한편, 재정분석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
 -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재구성 : 분석지표 20개, 참고지표 6개
 - 재정효율성 지표(세입확충노력도 : 5개, 세출절감노력도 : 5개)를 대상으

- 로 재정분석 결과를 지방교부세 배분과 연계
- 자치단체 유형화 개선을 통해 재정비교표 작성
- 2011년에는 재정분석지표 산정방식 일부를 보완하고 추세분석 및 유사단체 재정비교를 통한 자율 분석평가 기능을 강화
 - 자체세입비율 등 연도별 추이분석이 중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시계열 데 이터(5년 경향)에 의한 재정예측 가능성을 강화
 - 재정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유형화를 통해 스스로 재정운영 실태와 재정위상을 확인하도록 자율 분석평가체계 확립
- 2012년에는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 도입에 따라 재정분석제도와 사전모 니터링을 연계 운영하고 재정 컨설팅 기능 등을 강화
 - 재정분석결과 하위단체에 대한 심층진단 일원화
 - 인구감소 지역 등 문제유형 재정컨설팅 기능 강화
 - 유사단체 유형 구분 방식의 합리적 개선
 - 인구수, 재정력지수, 인구증감률 기준 방식에 "재정규모"를 추가하여 동 일그룹 내 자치단체 간 유사성을 높임
 - 경상재원비율 등 재정운영 관련 지표 보완
- 2013년도 지방재정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분석과 지출관리를 강화하였으 며, 지방재정 문제요인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효율성 지표에 서 비율과 증감률의 조합을 통한 평가 방식을 채택하였음
 - 재정건전성 분석 강화: 채무관리 범위 및 분석지표 수를 확대하여 채무
 의 수준과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측정
 - 지출관리 강화: 제 3섹터로의 출연 출자금, 민간이전경비비율 등 고정적
 으로 지출되어 재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 지표 추가
 - 효율성 평가 지표: 세입관리 지표 1개, 세출관리 지표 3개, 자본시설관리 지표 2개로 구성하고, 단순비율지표의 경우 70%의 점수를 부여하고, 이 를 보완하기 위한 증감률 지표에 30%의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하였음

- 2014년도 지방재정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세 분석 강화를 위해 재정건전 화지수를 개발하였으며, 지방재정 유용노력의 평가를 강화하였음
 -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 및 평가할 수 있는 통합지표를 개발하여 재정 건전화지수라고 명명하고 2개년 분석
 - 지방재정운용노력에 관한 평가 비중을 강화(200->300)하였음
 - 자치단체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절대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음
 - 지방세징수율의 경우 2년 연속으로 98%가 넘어가는 경우, 작년대비 실적이 낮더라도 징수율 증가 자치단체들의 평균점을 부여함

2. 재정분석 기본 운영방향

- 1)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책임성 제고
 - 재정 안정성과 건전 재정운영 기조 유지(재정수지, 채무관리 등)
 - 효율적 재정운영 유도
 - 세입기반 확충 노력, 세출경비 절감 노력
 - 재정분석 결과의 대외 공개를 통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주민에 대한 설명책임 등 재정책임성(fiscal accountability)
 - 자치단체 재정공시 등 투명성 및 외부통제 강화
- 2) 재정분석의 일관성 및 신뢰성 제고
 - 분석체계와 재정지표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지표산정방식 등을 보완·개선
 - 지표의 중요성, 정보 유용성, 변별력 등을 고려하여 지표 개선
 - 추세분석을 통한 재정상황 예측 가능성 제고
 - 재정분석지표의 연도별 시계열 데이터 확보

- 지자체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추세분석을 통해 재정예측 기능 강화
- 3) 재정분석 결과의 활용 및 주민관심도 제고
 - 재정분석 결과의 공개를 통해 주민자율 통제 기능 및 관심도 제고
 - 재정운영 문제요인 및 해결방안 등 수요자중심의 컨설팅 기능 강화
 - 유사단체 재정비교를 통한 자율 분석평가체계 확립

3. 지방재정분석지표의 변천

- 2005년도부터 확대 실시중인 지방재정분석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과거 10개 분석지표를 토대로 하는 재정분석의 문제와 한계 극복
 - 지방재정의 거시적 상태와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거시적 지표)
 - 지방재정의 미시적 상태와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미시적 지표)
 - 지역주민과 사회의 관심 및 반응이 높은 지표(주민관심 지표)
 - 국가정책에 순응하는 지표(국가정책 지표)
 - 세계적 선도 추세를 반영하는 지표(global standard 지표)
 - 자치단체 간 상호학습 및 벤치마킹이 가능한 지표(상호학습 지표)
 - 자치단체 스스로의 판단을 유도하는 정보제공 지표
- 다양한 유형의 지표는 각기 다른 관점과 목적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실적 및 성과 등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주)민,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함
- 2005년 이후 확대 실시한 재정분석제도의 운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리 는 다음과 같음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동반자적 관계로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는 공감대 를 전제함

- 제도운영(목적, 지표설정, 결과활용 등)의 초점을 주민의 복지증진에 맞춤
 - 서비스 질의 제고/ 자율과 책임의 균형
-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분석시스템을 설계·가동함
- 2008년도에는 광역단체 주관으로 자체분석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로 제 출토록 하여 지방재정 운영결과를 종합 분석함
 - 광역단체는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기초로 자체재정분석과 함께 소속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을 실시
 - 안정성,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4개 분야에 16개 계량지표에 의한 분석을 실시하고 재정분석결과를 기초로 지표별로 등급을 부여
- 2009년도 지방재정분석지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그동안 재정제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와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지표체계 조정
 - 경상비용, 자산부채관리 등을 파악하기 위한 복식부기회계지표
 - 정책사업비, 행정운영비용 등 사업정보 측정을 위한 사업예산 관련지표
 - IMF 통합재정수지비율
 - 유사단체 재정비교표 작성을 통한 자율분석평가체계 도입
 - 인구수, 재정력 등을 기초로 유사자치단체 선정
 - 유사단체 재정비교표를 활용한 재정위상 확인 및 점검
 - 유사단체 상위수준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자율적 자구노력 유도
- 2010년도 지방재정분석지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재정상태를 중심으로 한 건전성 지표, 재정운용 노력도를 측정하는 효율 성 지표 및 계획적 재정운영 노력을 측정하는 계획성 지표를 통해 종합 적 점검·진단 기능을 강화
 - 재정분석 결과를 보통교부세와 연계
 - 재정분석「재정운용 노력 지표」가 보통교부세「자체노력 항목」과 목 적·취지가 동일하고 지표도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을 확대·개편 하면서, 자체노력 수요·수입 산 정 시 재정분석 결과를 활용
- 2011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2010년 재정분석 결과를 반영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 중 세출 절감 및 세입 확충 노력과 관련된 사항은 재정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기타 사항(지역경제 활성화, 녹색성장 추진 등)은 관련부서로부터 별도 취합하여 활용
- ※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연계 제외, 자치구는 특·광역시에 포함 반영
-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 시스템 구축
 - 재정분석「재정상황 지표」에 지방재정 위기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를 일부 반영
 - 자치단체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011년부터 가동 목표, e-호조 시스템 개선)

_			
	분야	취지·목적	세부지표(예시)
	①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재정위 험에 대한 조기경보	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 자체세입 확충 비율 등
	②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 지표)	자치단체별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을 평가하여, 재정적 인센티 브·페널티를 부여 (보통교부세와 연계)	관심·낭비성 지출(인건비, 행사축제, 민 간이전경비, 업무추진비 등) 자체세입 확충(지방세징수율, 세외수입 확충, 지방세(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등)
	③ 계획성	자치단체의 계획적 재정운용 노 력을 분석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예산집행률, 투 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등

<표 2-1> 2010년도 지방재정분석지표의 특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정분석 결과 통합 공개
 - 자치단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재정분석 결과를 재정고 등 에 통합적으로 공개
- 주민의 이해를 돕고 유사단체 간 상호 비교 등이 가능하도록 설명 및 도식화를 보완
- 재정분석 간소화 → 재정진단·컨설팅 강화
 - e-호조시스템을 활용, 자치단체 결산결과 분석 및 검증 간소화

- 재정진단·컨설팅을 문제요인을 발견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컨설팅 성격으로 전화 실시
- 2011년도 지방재정분석지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컨설팅기능 전화
 - 재정분석 현지실사 시 지표데이터의 오류확인 · 점검 위주에서 자치단 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컨설팅 기능으로 전환
 - 부진 자치단체의 문제요인 발견 및 현실성 있는 개선전략 도출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대안 강구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득, 산업구조, 도농복합도시 등
 - 지역의 내부적 강점과 약점, 외부적 기회와 위협을 고려한 지역여건분 석(SWOT 활용)
 - 재정분석지표 산정방식 일부 보완 및 개선
 - 투용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에서 투용자심사 대상사업 범위를 의뢰심 사에서 자체심사대상 사업까지 확대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의뢰심사 대상사업이 없어 변별력 저하
 - 의뢰심사와 자체심사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의뢰심사와 자체심사의 예산반영률에 대한 비교파악 가능
 - 재정분석 결과(효율성 지표)를 보통교부세와 연계 강화
 - 2010년도부터 재정분석결과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산정과 연계
 - 2011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산정과 연계 강화
 - 추세(시계열)분석 기능 강화
 - 그동안 분석지표의 변경과 전년도 결산위주의 분석에 치중함에 따라 추세에 따른 미래 재정전망 및 예측 기능 미흡
 -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조합) 등 연도별 변화 추이가 중요한 지표는 시계 열 분석(5년 추세)을 통해 재정예측 가능성을 제고
 - 유사단체 재정비교표를 통한 자율분석평가체계 강화
 - 재정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의 유형화(grouping)를 통해 스스로 재정운 영 실태와 재정위상(financial position)을 확인하도록 유도

- 인구규모, 재정력지표, 인구증감률 변수 기준의 14개 그룹 선정
- 유사단체 재정비교표에 기초하여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재정운영 방향 및 개선방안을 마련
- 유사단체 평균값, 사분위수, 표준편차 등 기초통계량 제공

<표 2-2> 유사단체 재정비교를 위한 자치단체 유형화

구분	특·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단체 수	7	9	73	86	69
기준 변수	-	-	인구수, 재정력지수, 인구증감률		특별시와 광역시 구분, 재정자립도
유형구분	1개	1개	4개	4개	4개

- 2012년도 지방재정분석지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재정분석 지표체계는 기존 지표 검토 및 전문가, 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개 핵심지표를 선정
 - 지표의 중요도, 단체별/지표별 변별력 등 고려
 - ※ 기본지표 외에 재정통계와 관리 목적의 참고지표 8개 선정

<표 2-3> 2012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분 야	세부지표(20개)	배점 (1,000점)
① 건전성 (상태지표)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채무잔액비율, 자체세입비율(증감률) 등 6개 지표	400
② 효율성 (노력지표)	지방세징수율 제고 등 세입확충 노력 5개 지표 행사축제경비 등 낭비성 세출절감 노력 5개 지표	400 ※보통교부세 산정 시 연계
③ 계획성 (노력지표)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예산집행률,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비율 등 4개 지표	200

- 2013년도 지방재정분석지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재정건전성 분석 강화
 - 건전성 9개 지표, 효율성 6개 지표, 재정운영노력 10개 지표의 25개 지 표 체계로 확대
 - BTL 잔액을 채무범위에 포함한 관리채무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을 도 입하고, 공기업 부채 관련 지표가 추가되었음
 - 지출관리 강화
 - 민간이전경비비율, 출연출자금비율, 의무지출비율,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추가

<표 2-4> 2013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분 야	세부지표(25개)	배점 (1,200점)
① 건전성 (9개지표)	■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재정수지 3개 지표 ■ 관리채무비율 등 채무관리 4개 지표 ■ 공기업부채 등 공기업관리 2개 지표	700
② 효율성 (6개지표)	■ 자체세입비율(증감률)을 통한 세입관리 1개 지표 ■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등 세출관리 3개 지표 ■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등 자본시설관리 2개 지표	300
③ 운용 노력 (10개지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입 확충 노력 5개 지표 ■인건비 절감 노력 등 세출 절감노력 5개 지표	200 ※보통교부세 연계

- 2014년도 지방재정분석지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재정건전성 추세 분석 강화
 - 매년 지방재정 건전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재정 건전화지수 개발
 - 지방재정운용노력에 관한 평가 강화
 - 배점 상향 조정, 일부지표 절대평가 기준 산정

<₩	2-5>	2014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Ш	2-5-	2017 L	게이게이正다	$\mathcal{N}_{\mathbf{I}}$

분 야	세부지표(25개)	배점 (1,300점)
① 건전성 (9개지표)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재정수지 3개 지표 ■관리채무비율 등 채무관리 4개 지표 ■공기업부채 등 공기업관리 2개 지표	700
② 효율성 (6개지표)	■ 자체세입비율(증감률)을 통한 세입관리 1개 지표 ■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등 세출관리 3개 지표 ■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등 자본시설관리 2개 지표	300
③ 운용 노력 (10개지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입 확충 노력 5개 지표 ■인건비 절감 노력 등 세출 절감노력 5개 지표	300 ※보통교부세 연계

제3절 기재정분석 신규체계 마련

1. 2014년 재정분석 성과와 반성

- 1) 2014년 재정분석 성과
 - 재정분석 결과 공개를 통한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
 - 243개 전 지자체 재정운영결과를 등급별로 공개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세출절감 등 자구노력 유도로 지방재정운영 책임성 강화
 - 지자체 주민 및 언론 등의 관심도 제고에 기여
 - 재정건전성 및 재정운용노력 관리 강화
 - 총 예산과 자체수입 증가율, 부채 증가액과 증가율, 지방세 수입 대비 인 건비 등을 지표로 반영하여 지자체의 통합부채관리 노력 유도
 - 재정운용노력도 지표의 배점을 확대(200점 → 300점) 하고, 지자체의 재정운용노력 개선

- 지방재정 추세분석 및 평가방법 개선
 -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는 대표지표를 선정하여 다년도 기준의 추세분석을 위한 재정건정화지수* 개발
 - * 재정건전화지수 : 사회복지비,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관리채무상환비율을 조합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2013 회계연도의 재정건전화지수는 평균 74.89점(FY 2012 : 74.64점)으로 전년대비 0.25점 상승·개선된 것으로 판단
 - 상위 점수임에도 전년대비 증가율이 저조하여 낮은 점수를 받는 지표(지 방세징수윸*) 평가방법 개선
 - * 지방세징수율 : 2년 연속 98%이상은 징수율 증가 자치단체들의 평균점을 부여함

2) 반성

- 평가지표 및 분석체계 개선 필요
 - 재정효율성 분야와 재정운용노력도 분야는 상호 유사하여 분류체계상
 개선 여지
 - 재정 운용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지표를 점검·보완하고, 지자체 자구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부 지표 개선이 필요
 - 예) 법정기금 적립 의무를 소홀히 하는 지자체가 오히려 평가를 높게 받 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보완
- 지자체의 평가에 대한 수용성 제고 필요
 - 재정분석은 전년도 결산데이터를 사용하는 관계로 지자체의 당해연도
 재정운영 방향성 제시에 한계
 - 지자체에 재정운용방향을 미리 알려주어 재정운용을 하도록 할 필요

2. 기본체계

○ 신규체계는 앞서 살펴본 기존 2014년도 재정분석의 반성 사항을 개선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임

- 현행 제도의 시행근거는 지방재정법 55조 및 시행령 65조이며, 재정분석 신 규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이 근거 조항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임
 - 지방재정법 55조에서는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분석의 목적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자치단 체를 찾아 재정진단을 실시하기 위함임을 명기하고 있음
 - 따라서 신규 체계에서 핵심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되어야 함
 - 다음 단락에서는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에 대한 학술적 개념을 검토 하기로 함

1) 재정건전성의 개념

- 미국의 정부회계기준위원회(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사용하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개념은 재무적 위치(financial position), 재정적 상태(financial condition) 및 경제적 상황(economic condition) 등 3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무적 위치는 유동성(liquidity) 관련 측면으로서 단기적으로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자산과 현금으로 상환될 필요가 있는 부채에 초점을 맞 추고 있음
 - 재무적 상태는 지불가능성(solvency) 관련 측면으로서 상환기간이 도래 했을 때 채권자에게 재무적 의무를 다하고, 현재와 미래에 지역주민들 에게 행정서비스 제공의무를 다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 경제적 상황은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의 재무적 위치와 재무적 상태가 지속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지방정부가처한 현재 상태를 보여줌
- 미국의 국제도시관리협회(International City/County Management Association)에 서는 재무적 상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현금지불능력(cash solvency), 예산상

지불능력(budgetary solvency), 장기지불능력(long run solvency), 서비스수 준 지불능력(service level solvency) 등 4개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음(Groves, et al. 2003)

- 현금지불능력은 지방정부의 유동성, 효과적인 현금관리 그리고 현재의
 부채 지불능력을 측정함
- 예산상 지불능력은 현재 혹은 바람직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충당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 장기지불능력은 현재의 장기적 의무가 미래 자원에 대해서 미치는 충격을 의미함
- 서비스수준 지불능력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 미국의 국제도시관리협회(International City/County Management Association)는 지방정부들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재정동향감시체계(Financial Trend Monitoring System)을 제공하고 있음
 - FTMS는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들로 12개의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요인들의 서로 다른 측면들을 측정하는 28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12개의 요인들은 크게 환경적 요인, 조직적 요인및 재무적 요인들로 그룹을 지을 수 있음
 - 환경적 요인들은 행정수요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 요한 자원을 제공함
 - 조직적 요인들은 다양한 재정적 도전들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행정관리, 효과적인 지방세 징수 등을 위한 조직적 지원을 의미함
 - 재무적 요인들은 지방정부의 내부재정을 반영하는데, 이는 환경적 요인 들과 조직적 요인들의 영향들이 초래한 결과임

2) 재정효율성의 개념

-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투입과 산출 간의 관계로 적은 투입으로 많은 산출을 낼수록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Farrell (1959, 11)은 산업의 효율성은 추가적인 자원 없이 산출물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음
 - 이와 같이 정의하는 경우, 효율성과 능률성은 같은 개념임
 - 그러나 정부부문에서의 산출물은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아 가격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정부의 산출물에는 복수의 목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출을 계량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Mandl, Dierx, and Ilzkovitz, 2008: 4)1)
 - 효율성을 기술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은 단순한 투입과 산출의 관계이며,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은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최적의 투 입과 산출의 조합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효율성을 보다 넓게 정의하여 효과성과 서비스의 질까지 포함할 수 있음
 - 효율성이 효과성 같이 확장되는 것은 산출을 output을 넘어서 outcome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며, 서비스의 질까지 포함하는 경우는 output을 outcome까지 포함하여 보다 광의로 해석하는 경우임

<그림 2-1> 협의의 효율성과 광의의 효율성

협의의 효율성

광의의 효율성

EOL (Inn. 4)	배분적 효율	산출	효과성	결과
투입 (Input)	기술적 효율	(Output)		(Outcome)

¹⁾ Mandl, Ulrike, Adriaan Dierx, and Fabienne Ilzkovitz. 2008.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ublic Spending. and of public performance. European Economy. Economic Papers 301.

- 효율성을 좁게 해석하여 투입과 산출 간의 관계로만 국한한다면, 재정효율 성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산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도서관을 건립하는 경우 주어진 예산으로 가장 많은 도서관을 건립하거나 하나의 도서관을 건립할 때, 가장 적은 비용으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재정 효율성이 높음
 - 재정분석 측면에서 본다면 재정효율성은 주어진 세입의 범위 내에서 가장 많은 산출을 내는 지출을 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는 낭비의 요소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만약 배분적 효율성과 기술적 효율성을 구분한다면, 재정 효율성은 배분
 적 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광의의 효율성으로서 효율성에 효과성 개념까지 포함시킨다면,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가장 효과성이 높은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경우가 효과성이 높을 것임
 - 이는 산출의 개념을 output 이 아니라 outcome으로 판단하는 경우임
 - 영국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세금의 금전적 가치(Value for Money)를 확보하기 위하여(차주현, 2011; 118),²⁾ 민간투자사업을 선정할 때에도 반드시 금전적 가치 테스트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김수삼 외, 2003: 300).³⁾
 - 임성일 (2008: 85)는 재정효율성을 생산성 향상과 낭비의 제거 등 예산 절감과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정의함⁴⁾
 - 신유호(2008, 42)는 재정효율성을 세입확충 활동, 한정된 재원에 대한 투입최소화·절감활동 및 탄력적 최적배분 활동, 재정투입을 통한 최대 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함5)

²⁾ 차주현. 2011. 재정분권이 지방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행정학보>. 45(4): 117-151.

³⁾ 김수삼 외. 2003. 한국의 건설산업 그 미래를 건설하자. 삼성경제연구소

⁴⁾ 임성일. 2008.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 자료집 83-121

⁵⁾ 신유호. 2008. 지방재정효율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단계 부트스트랩-DEA 절삭회귀모형을 통한 분석.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미애(2013, 16)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정부부문의 투입인 예산 대비 산출인 재정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정의함이

3. 신규체계의 구성

- 양 개념을 검토해 본 결과,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정상황의 분석을 위해서는 건전성과 효율성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하여 분석해야 할 것임
- 현행 2014년도 재정분석제도는 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노력의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에서 재정효율성과 재정운용노력도 지표는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효율성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음
 - 실제로 앞서 재정분석의 지표 변천사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재정분석의 "재정운용노력도" 분야 10개 지표는 2012년도 재정분에서 는 "효율성" 분야로 명명되어 있었음
 - 비록 2013년도 재정분석에서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효율성과 분리되어 교부세 연계 지표로서 "재정운용노력도"로 명명되어 독립되어 있었으나
 그 본질적 성격은 재정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임
- 분석체계의 대분류는 상호간의 위상이 동등해야 할 것이며, 상호 중복되는 부 부이 없어야 함
 -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은 재정운영을 위한 두 가지 큰 가치로서 그 위상이 동등하며, 개념 상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구분이 가능함
 - 재정건전성이 지방재정의 거시적 상태와 실적을 측정하는 분야라고 한다면, 재정효율성이 미시적 상태와 실적을 측정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재정효율성은 재정건전성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⁶⁾ 이미애. 2013.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정운용의 효율 성과 재정 형평성 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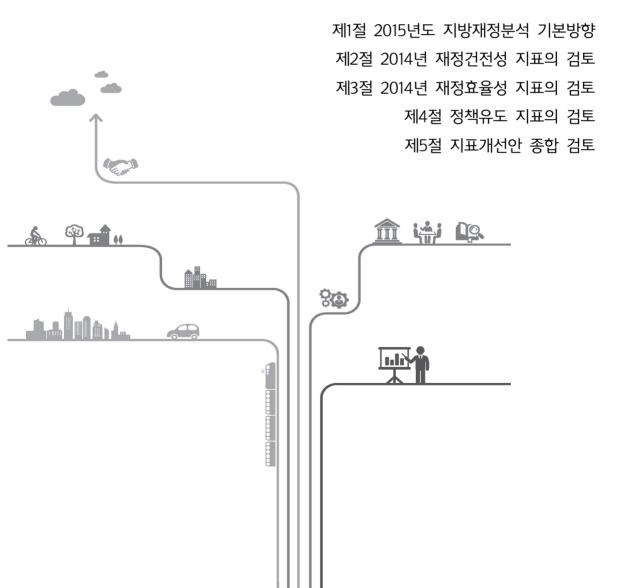
- 볼 수 있으며, 재정건전성은 재정효율성이 누적되어 쌓인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재정효율성이 단기적 재정운영성과를 보여준다면, 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 재정운영성과로 자치단체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인식할 수 있음
- 이 두 가지 분석체계를 기본으로, 신규 분석체계에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역주민과 사회의 관심 및 반응이 높은 지표(주민관심 분야)
 - 국가정책에 순응하는 지표(국가정책 분야)
 - 세계적 선도 추세를 반영하는 지표(Global standard 분야)
 - 자치단체 간 상호학습 및 벤치마킹이 가능한 지표(상호학습 분야)
 - 자치단체 스스로의 판단을 유도하는 정보제공 지표(투명성 분야)
 - 자치단체의 계획과 실적을 연계하는 지표(계획성 분야)
- 검토 결과, 건전성·효율성 2개 분석체계와 동일한 위상으로 고려할 만한 분 야는 없었음
 - 주민관심, 국가정책, 글로벌 스탠다드, 상호학습 분야의 경우에는 건전 성·효율성 분야와 측정지표가 겹쳐지게 됨
 - 투명성과 계획성의 경우 측정지표가 중복될 우려는 낮으나, 세부 측정 지표의 수가 건전성·효율성 분야에 비해 적어 위상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정"분석이라는 목적과 이어지기에는 그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투명성, 계획성, 주민관심, 글로벌 스탠다드, 상호학습 분야를 모두 묶을 수 있는 대분류로 국가 정책을 고려할 수 있음
 - 국가 정책으로 투명성을 강조하는 경우, 투명성이 국가 정책 분야로 포 함될 수 있듯이 나머지 분야를 포괄할 수 있기 때문임
 - 다만 그 경우에도 위상이 건전성· 효율성 2개 분석체계와 동일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부가적 성격을 띠게 될 것임
- 종합하여, 2015년도 재정분석을 위한 신규 체계는 건전성· 효율성의 2개 분

- 야 체계를 중심으로 국가 정책과 관련된 부가적인 지표를 모은 정책유도 분야의 3개 분야로 구성하도록 함
- 건전성 분야 체계는 2014년도 재정분석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구성 지표는 실제 데이터에 근거하여 건전성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지표들로 재구성
- 효율성 분야 체계는 2014년도 재정분석 체계에서 효율성과 재정운용노 력을 통합하여 재구성
- 이상의 2가지 분야 이외에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지표들을 모
 아서 정책 방향에 맞도록 자치단체의 행태를 유도하는 지표를 구성하도
 록 하고, 정책유도 지표로 명명하기로 함
- 상기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2-6>과 같음

<표 2-6> 2015년 지방재정분석 분석체계

2014년도	2015년도
건전성	건전성
효율성	\$ 0 <i>1</i> 1
재정운용노력	효율성
	정책유도

제3장 지방재정분석 지표개선



제3장

지방재정분석 지표개선

제1절 1 2015년도 지방재정분석 기본방향

1. 2015년도 기본 방향

- 1) 실질적 재정건전성 관리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안정성과 건전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
 - 재정건전성 분야 내 지표 간 유사 중복성 파악 및 자치단체 의견 반영

2) 재정효율성 강화

- 기존 분석의 효율성 분야와 재정운용 노력도 분야는 그 의미가 유사하 여 이를 통합
- 재정효율성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표들로 지표체계 재구성

3) 재정분석 평가방법 개선

- 기존 노력도 지표의 상당부분이 기저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평가방법을 변경하여 기저효과를 축소하도록 개선
 - * 기저효과-비교대상 시점(기준시점)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

4) 자치단체 운영노력 강화 유도

○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지표와 운영 노력을 파악하는 지표로 구분하였을 때, 노력지표적인 성격이 높은 지표들로 평가비중을 높이는 방안 마련

5) 평가지표의 운용 방향 왜곡 개선

- 재정분석 지표의 방향성을 파악하여 재정분석 지표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 유용이 어느 방향으로 유도될 것인지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은용이 왜곡되는 부분을 파악하여 개선

6) 지방자치단체에 지표 예측가능성 부여

○ 2016년 평가지표를 미리 공개함으로써 피평가자인 자치단체들로 하여금 평 가의 수용성제고

2. 지표 선정 기준

○ 지표 선정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을 고려함

1) 대표성

- 지표의 선정은 각 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분석의 목표와 뚜렷한 연관성을 지녀야 함
- 분야별로 유의미한 복수의 지표를 검토 한 후 그 중에서 지표의 중요도와 유용성을 고려하여 대표지표를 선정함

2) 명확성

○ 지표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지표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간명하고 정확 하게 전달되어야 하고 자료가 일관되게 수집될 수 있어야 함

3) 신뢰성

○ 선정된 지표가 시간적 변화와 지역적 차이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여야 하고 상황이 변하더라도 유용성을 잃지 않아야 함

○ 특히, 특정지역에서만 적용 가능하거나 일정시점에서만 측정 혹은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함

4) 비교가능성

○ 지역 간 편차가 심하거나 통계수집이 곤란한 지표는 가급적 배제하여 비교 가능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함

제2절 2014년 재정건전성 지표의 검토

1. 재정수지

- 1) 통합재정수지비율
 -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 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 O 산식

통합재정수지비율 =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행정자치부 통합재정수지 기준에 의해 산출(합동작업 결과)

회계구분 세입액(A) 세1		세입액+순	지출 및 순융자 (B)		통합	순세	통합재정수	순세계잉여금포함	
	세계잉여 금(D)	소계 (B=a+b)	지출액 (a)	순융자 (b)	재정 규모 (C)	계잉 여금 (d)		통합재정수지 비율 (D-B)/C×100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2) 실질수지비율

- 자치단체의 재정적자 여부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수지균형성을 측정하는 지표
 -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나타내어 줌으로써, 통합재정수지비율의 단점을 보조하는 역합을 하는 지표임

O 산식

- ※ 실질수지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이월금 보조금집행잔액
 - * 이월금 :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 ※ 일반재원 : 결산서상 세입 결산부문의 실제수납액
 -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모두 포함
 - ⇒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분권. 부동산교부세를 모두 포함
 - * 재정자주도 작성 시 분자에 해당하는 일반재원과 동일한 범위를 포괄

	실	일반재원결산액	TI TT 71/0/)			
계 (A=a-b-c-d)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이월금 (c)	보조금집행 잔액(d)	(B)	지표값(%) (A/B)×100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3) 경상수지비율

- 복식부기 재정운영보고서의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 표
- O 산식

※ 경상비용: 인건비+운영비+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수익: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수익+재정보전금수익지방교부세는 보통·특별·분권·부동산교부세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

	경상비용(A)				경상수익(E	3)		
계 (①+②+③+④ +⑤)	인건비 ①	운영비 ②	조정 교부금 (③광역)	계 (⑥+⑦+⑧+⑨+ ⑩)	지방세수익 (⑥)	경상 세외 수익 (⑦)	지방 교부세 수익 (⑧)	지표값 (A/B)
일반회계				일반회계				×100
기타특별				기타특별				, , , ,
공기업특별				공기업특별				
기금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내부거래				
	재정 보전금 (④광역)	전:	특별회계 출금 광역)		조정 교부금수익 (⑨기초)		전금수익 기초)	
일반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공기업특별				
기금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내부거래				

2. 채무관리

- 1) 관리채무비율
 - 세입결산 대비 지방채무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저량(stock) 지표
 - O 산식

- ※ 지방채무잔액은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산정시 적용하는 지방채무잔액 적용
- ※ 지방채무 잔액
 - ⇒ 지방채 증권+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 지급액
 - ⇒ 자치단체의 일반·특별회계·기금이 그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상환하는 금액은 제외
 - ⇒ 지방채무 잔액은 원금기준으로 작성

※ BTL 지급액

⇒ 준공 후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사 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 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

		2014 지방치	배무 잔액(A))		2014	지표값	
구 분	계(A = (a)+(b)+(c)+ (d)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	채무 부담 행위 ⑤	보증 채무 이행액 ⓒ	BTL 지급액 @	세입 결산액 (B)	(%) (A/B)×100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공 기 업 특별회계								
기금								

2) 관리채무부담비율

○ <u>경상일반재원 대비</u> 지방채무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저량(stock) 지표

O 산식

- ※ 지방채무잔액은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산정시 적용하는 지방채무잔액 적용
- ※ 경상일반재원
 -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014 지방채무 잔액(A)					2014 경상일반재원 결산액(B))	
구분	Я(A = (a)+(b)+ (c)+(d)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	채무 부담 행위 (b)	보증 채무 이행액 ⓒ	BTL 지급액 @	계 (B= ①+②+①+ ①+①)	지 방 세 ①	경상세 외 수입 9	지방교부세(h)	조정교 바대(1)	재정보전금()	지표값 (%) (A/B) × 100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공 기 업 특별회계												
기금												

3) 관리채무상환비율

○ 경상일반재원 대비 미래4년의 지방채무 상화액의 비율

O 산식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 100(%)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미래 4년 : n+1. n+2. n+3. n+4

- ※ 2014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산정식과 동일
-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지급액 총액
- ※ 경상일반재원
 -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 ※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은 조기상환액, 차환액, 국·도비 채무상환액 제외
- ※ 평균 관리채무상환액 및 평균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계산식
 - ⇒ 미래4년 상환할 평균채무액 : 미래 4년 관리채무상환액* / 4년
 - * 기준일 현재 지방채무 잔액을 기준으로 미래 4년 관리채무상환액 산정, 이자액은 과거 4년 평균 이자액을 미래 4년간 관리채무상환액에 합산
 - ⇒ 평균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 미래 4년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 4년
 - * 직전연도의 경상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 경상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

미래4년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A)				미래 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B)				액(B)			
	미래 4년								이래 49	큰		지표값
계 A=(1)	순지본 채무 상환액 (1)	장비(a=1 조기 상환액 (2)	+2+3) 차환액 (3)	국비 지원 상환 (b)	시도비 지원 상환 (c)	계 B=e+f+ g+h+i+j	지 방 세 (e)	경상 세외 수입 (f)	지방교부세(저정 교 바 대	재정 보전 금(i)	(%) (A/B) ×100
	*기초단체 만 해당						(g)	(h)	(1)			

4) 현금창출자산대비부채비율

-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자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로 채무부담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자산"이라는 의미로 "현금을 창출하는 자산" 은 아니므로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O 산식

- ※ 현금창출자산 : (유동자산 기타유동자산 + 일반미수금★) + 장기금융상품 + (장기대여금★ 학자금위탁대여금) + 기타 투자자산
 - * 일반미수금 및 장기대여금은 해당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
- ※ 부채총계: 복식부기 재정상태보고서 상의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부채:	총액(A)			현금창	출자산	(B)		지표값
구분	계 (A= a+b+c)	유동 부채 (a)	장기 차입 부채 (b)	기타 비유동 부채 (c)	계 (B= d+e+f+g)	유동 자산 (d)	장기 금융품 상품 (e)	장기 대여 _대 (f)	기타 투자 자산 (g)	(A/B) × 100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O 유동자산

- 고정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1년 이내에 환금할 수 있는 자산 또는 전 매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현금, 예금 등)

○ 기타유동자산

- 선급금과 선급비용

O 일반미수금

-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을 제외 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확정 채권

○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단기금 융상품, 단기대여금을 제외한 부분

O 유동부채

- 1년 이내 갚아야 하는 부채

○ 장기차입부채

- 기한이 1년 이상인 차입부채

O 기타비유동부채

- 비유동부채로서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격의 부채를 모두 통합한 금액으로 장기미지급금, 장기선수금, 장기선수수익 등

3. 지방공기업 관리

1) 공기업 부채비율

○ 지방공기업(직영기업, 지방공사)을 대상으로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공기업의 부채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O 산식

- *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상의 자본, 부채
- *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과 지방공사 포함

구분	부채총액(A)	자기자본(B)	지표값 (A/B)×100
합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2)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 지방공기업(직영기업, 지방공사)에 대해 총자본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며 공기업 영업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

O 산식

* 영업이익 : 지방공기업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이익

* 총자본: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상의 총자본(자본+부채)

*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포함

			지표값			
구분	영업이익(A)	소계 (a+b)	자기자본(a)	부채(b)	(A/B)×100	
합 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4. 개선 사항 및 자치단체 의견 검토

1) 재정건전성의 범위

- 지방재정건전성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은 단년도의 재정운용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수지관리측면과 과거 재정운용성과의 누적적인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채무관리의 양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 수입은 단기적으로 지방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가는 물론, 세입의 추세를 파악함으로써 세입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음
 - 수입은 경상수입과 임시수입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지출은 경상지출
 과 자본지출로 파악함으로써 통합재정수지뿐만 아니라 경상수지도 파악
 할 필요가 있음

<표 3-1>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평가

구분	지표명	산정공식				
	1인당 세입액(\$)	순경상세입/인구X100				
	목적재원비율(%)	목적재원/순경상세입X100				
	정부간 세입비율(%)	정부간 경상세입/순경상세입X100				
	탄력세수입비율(%)	탄력적 경상세입/순경상세입X100				
세입 측면	1회성 세입비율(%)	1회성 경상세입/순경상세입X100				
	재산세액(\$)	재산세수액				
	체납재산세액율(%)	체납재산세액/순수재산세징수액X100				
	사용자부담비율(%)	사용료, 사용자부담금/서비스관련 지출액X100				
	세입부족비율(%)	세입부족액/순경상세입X100				
	1인당 지출액(\$)	순경상지출/인구				
ਮੀਟ ਤੇਜ਼ੀ	1인당 공무원 수(명)	지방정부 공무원 수/인구				
세출 측면	고정비용비율(%)	고정비용/순경상지출X100				
	부가급부비율(%)	부가급부액/임금과 보수X100				
	경상적자비율(%)	일반재정경상적자/순경상세입X100				
운영상태	사업손실액(\$)	사업이익 또는 손실액				
측면	이월금비율(%)	비도 미지정 이월금/순경상세입X100				
	유동자산비율(%)	현금, 단기투자자본금/경상부채X100				
	경상채무비율(%)	경상채무액/순경상세입X100				
채무구조	장기채무비율(%)	순직접장기채무액/평가자산액X100				
측면	채무상환비비율(%)	순직접채무상환액/순경상세입X100				
	중복채무비율(%)	장기중복채무액/평가자산액X100				
	연금채무비율(%)	연금채무액/자산평가액X100				
채무부담	연금자산비율(%)	연금계획자산/연간지불연금혜택X100				
측면	공무원의 누적휴가(일)	미사용 총휴가, 병가일수/지방공무원 수 또는 (연가, 병가 총비용/지방공무원 수)X100				
-14 (12)	자산유지비용비율(%)	고정자산유지보수비용/총자산X100				
자본시설 측면	자본지출비율(%)	경상재원의 자본지출/순경상지출X100				
그건	감가상각비율(%)	감가상각비용/감가상각 고정자산의 비용X100				

출처: Sanford M. Groves and Maureen Godsey Valente, Evaluating Finacial Condition: A Handbook for Local Government Washington D.C:The ICMA, 1986, 이상용 편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평가,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3 재인용.

- 지방공기업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재정적 운영에 관여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재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로 지방공기업의 운영수지가 너무 나쁘고 그 적자가 누적되어 지방공기업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즉 파산의 위기에 몰리는 경우임
 - 운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관련해서 재정건전성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운영수지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채 측면에 한정하는 것이 타 당함

2) 기존의 재정건전성 지표 문제점

- O 관리채무부담비율
 - 경상일반재원 대비 지방채무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저량지표로서,그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을 의미함
 - 세입결산 대비 지방채무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관리채무비율과 중복 적인 측면이 강하며, 경상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를 상환하여야 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문제가 있음
 - 도의 경우, 자동차 등록 등 자치단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채권 판매가 증가함으로써 관리채무부담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데, 이로 인하여 재정분석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관리채무상확비율

 경상일반재원 대비 미래 4년 간의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로서 채무상 환에 따른 단기적 재정운영의 안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며, 비율이 높 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되는 것을 의미함 관리채무비율이 높을수록 관리채무상환비율도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중복성이 높고, 이 비율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이중적인 보상을 받고,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이중적인 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O 현금창출자산 대비 부채비율

-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자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로 채무부담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 현금창출 자산으로는 유동자산, 일반미수금,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기타 투자자산 등이 포함됨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가운데 민간에 임대를 주고 그로부터 수
 익을 얻는 수익용부동산도 현금을 창출하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주로 금
 융자산만을 포함하는 지표가 그 명칭과 불일치함

○ 경상수지비율

- 복식부기 재정운영보고서의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로서, 자치 단체의 경상적 수지와 비용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수익으로 경상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건전성이 낮음을 의미함
- 수지비율은 수입과 지출의 비율로서 현금기준 하의 개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내용은 발생기준의 수익과 비용의 비율이라는 점에서 지표의 내용과 명칭이 서로 부합하지 않음

3) 기존의 재정건전성 지표 개선안

O 관리채무부담비율

- 관리채무비율과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석지표에서 참고지표로 전환함으로써 지표의 시계열 자료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도가 시군에 빌려주는 융자금과 보유 현금 등 상환을 위한 채권을 보유

-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채무라고 보기 어려운 채무들을 제외한 실 질채무비율지표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실질채무비율은 광역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지표로서 광역자치단체 관리채무에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중 기초자치단체 융자금부분을 제외하고 본청에서 사용하는 융자금만을 포함하는 경우, 세입결산 대비 실질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함

○ 관리채무상환비율

 관리채무비율과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석지표에서 참고지표로 전환함으로써 지표의 시계열 자료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현금창출자산 대비 부채비율

현금창출자산 대비 부채비율 지표의 명칭과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표의 명칭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의미의 환금자산 개념을 활용해서 환금자산 대비 부채비율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 경상수지비율

수입과 지출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경상수지비율 대신 수익과 비용의 개념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비율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였지만, 경상수지비율이 발생기준을 이용하는 기업회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3-2>	재전	건전성	지표	개서아

	2014년 지표	2015년 지표(안)			
분야	분석지표	분야	분석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실질수지비율		2. 실질수지비율		
	3. 경상수지비율		3. 경상수지비율		
	4. 관리채무비율		4. 관리채무비율		
건전	5. 관리채무부담비율		참고지표로 이동		
성	6. 관리채무상환비율	전 성	참고지표로 이동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5.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8. 공기업부채비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6. 공기업부채비율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신규) 8. 실질채무비율(광역만)		

5. 데이터 시뮬레이션(FY2013)

- 1) 수지관리 지표들의 통합의견
 - 실질수지비율과 경상수지 비율을 통합하자는 의견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는 다음과 같음

<표 3-3> 수지관리 지표 간 상관계수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통합재정수지 비율	Pearson 상관계수	.290**	186**				
	유의확률 (양쪽)	.000	.004				
	N	244	244				
	Pearson 상관계수		.206**				
실질수지비율	유의확률 (양쪽)		.001				
	N		244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소결) 경상수지비율은 복식부기회계 활용을 위한 정책성 지표이며, 통합재 정수지비율과 실질수지비율은 상관관계가 그리 높지 않은 것(0.29)으로 나 타나고 있어 각자 의미가 있는 지표로 판단됨

2) 채무관리 지표들의 통합의견

- 관리채무비율과 관리채무부담비율은 분자가 같고, 분모만 세입결산액이냐 경상일반재원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으로 지표 분석 결과가 동일하게 나올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의 대표 지표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치단체들의 요구에서도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지표로 채무관리관점 지표를 들고 있음
 - 이론상으로 관리채무상환비율은 미래 상환액을 측정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분리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 " = 3= ""									
		채무부담	채무상환							
관리채무비율	Pearson 상관계수	.968**	.798**							
	유의확률 (양쪽)	.000	.000							
	N	244	244							
	Pearson 상관계수	1	.890**							
채무부담	유의확률 (양쪽)		.000							
	N	244	244							

<표 3-4> 채무관리 지표 간 상관계수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소결) 관리채무비율과 관리채무부담비율은 상관관계가 0.968로 단일변수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관리채무상환비율과 관리채무부담비율 역시 상관관계가 0.890으로 상당
 히 높음
 - 관리채무비율과 관리채무상환비율의 상관관계도 0.798로 상당히 높은 상황임

- 통계 관리 측면에서 세 변수를 모두 보관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평가의 측면에서 본다면, 세 변수는 채무 관리를 대표하는 하나의 변수로 모아서 점수 계산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광역의 경우 관리채무비율과 더불어 실질채무 고려

○ 평가 시 실질채무(가칭)의 산정

- 지역개발기금은 학술적 개념으로는 부채 혹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이 중에서 몇 가지는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채무라고 보기 어려움
- 지역개발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도, 궤도, 자동차 운송, 지방유로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등의 사업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기금조성을 위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는 지방채로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개인이나 법인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함
- 시군 등 대외융자채권이나, 자동차 신규등록 혹은 이전등록시 공채의 경 우에는 채권이 확보된 채무이므로 분석 지표 이외의 평가지표는 제외하 고 산정할 필요가 있음

<표 3-5> FY 2013 도 단위 실질채무현황

(단위 : 억원)

			구 성						
시도별 총	총채무	계 (실질채무)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 금	지역개발기금7) (본청 융자금 원금잔액)			
강원		5,722	2,489		6	3,227			
충북		4,606	413			4,193			
충남		3,557	203	430	13	2,911			
전북		4,606	1,307			3,299			
전남		7,432	2,255		72	5,105			
경북		4,671	500			4,171			
경남		9,737	2,101		11	7,625			
대전		5,784	2,429		16	3,339			

<표 3-6> FY 2013 도 단위 관리채무비율과 실질채무비율의 비교

(단위 : 억원)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관리채무비율	0.17	0.17	0.17	0.14	0.15	0.13	0.15
관리채무	8,605	6,585	8,964	7,546	10,955	10,201	11,899
지역개발기금	6,116	5,692	8,318	6,239	8,356	9,701	9,797
본청융자금 원금잔액	3,227	4,193	2,911	3,299	5,105	4,171	7,625
확보채권(시군등대외 융자채권)	2,889	1,499	5,407	2,940	3,251	5,530	2,172
실질채무	5,722	4,606	3,557	4,606	7,432	4,671	9,737
실질채무비율	0.11	0.12	0.07	0.09	0.10	0.06	0.12

- (소결) 광역단위에서 관리채무비율과 더불어 실질채무비율도 고려하여 평가
 - 시뮬레이션 결과, 실질채무비율을 산정했을 때, 채무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자치단체들이 있었음
 - 이들은 채권을 확보한 채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하였거나, 차량 판매 등을 많이 하여 지역개발 채권 실적이 올라간 상태이므로 평가 시 고려해 줄 필요가 있음
 - 한편으로는 학술적인 관리채무의 관점에서 판단해보면, 비록 채무불이 행 확률이 아주 낮다고 하더라도 100% 확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채무 인 것은 사실임
 - 따라서 광역의 경우, 실질채무비율도 산정한 다음 일정 부분을 평가 시 반 영해주되, 관리채무비율의 평가 비중보다는 낮게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한

4) 범주별 가중치

- 건전성 분야는 수지관리, 채무관리 및 공기업 관리로 구성되므로, 이들에 대해서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함
 - 수지관리와 채무관리 간의 관계는 수지관리 지표들의 결과가 누적됨에
 따라 채무관리 지표들의 적정성이 결정되는 관계임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은 최종적으로 채무관리 지표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채무관리 지표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기업관리의 경우, 영업이익률의 누적적인 결과가 공기업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므로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은 최종적으로 공기업부 채비율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지방재정분석을 위한 지표로 공기업재정 관련 지표를 포함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의 주체인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을 때 공기업의 설립 및 관리·감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 이처럼 공기업의 재정상태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으로서 공기업의 채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 그지속가능성이 의심 받을 때에 한하므로,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보다 공기업 부채비율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리채무비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질채무비율의 신설 필요
 - 기존의 관리채무비율의 경우, 지역개발기금처럼 대외채권(시군융자금 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채무라고 보기 어려운 채무들도 채무로 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채무판단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질채무비율 지표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지표의 정의는 "광역자치단체 관리채무에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중 기초자치단체 융자금 부분을 제외하고 본청에서 사용하는 융자금만을 포함하는 경우, 세입결산 대비 실질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저량(stock) 지표"임
 - 따라서, 실질채무비율은 시군에 융자해 주는 지역개발기금을 보유 및 운용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지표임
- 각각의 범주 별 가중치 값은 수지관리에 35%, 채무관리에 45%, 공기업관리

에 20%을 부여함

- 수지관리 내의 3개 지표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5%, 실질수지비율은 10%, 경상수지비율은 10%을 부여하여,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기금 등을 모두 포함한 통합재정수지의 비중을 가장 높게 부여함
- 채무관리 내의 3개 지표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관리채무비율에 가장 높은 20%을 부여하고, 이와 유사한 성격의 실질채무비율에 10%을 부여함으로써 총 30%을 채무비율에 부여하고 환금자산대비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15%을 부여함
- 채무관리 내의 3개 지표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관리채무비율에 가장 높은 30%을 부여하고,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에 대해서는 15%을 부여함
- 공기업관리 내의 2개 지표에 대해서는 공기업부채비율과 총자본대비영 업이익률에 동일하게 10%을 부여함⁸)
- 그 결과가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있음

<표 3-7> 2015년 기중치 비율(안)

1차분류	2차분류		지표	비율(%)
			통합재정수지비율	15
		스키 키키	실질수지비율	10
		수지 관리	경상수지비율	10
			소계	35
건전성 (100%) 채무 관리		광역자치단체	관리채무비율	20
			실질채무비율	10
	20 FT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5
			소계	45
	- 단의	기초자치단체	관리채무비율	30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5
			소계	45
			공기업부채비율	10
		공기업관리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0
			소계	20

⁸⁾ 공기업부채비율을 올리자는 의견도 있어 2015년 분석 시작 후 고려하기로 함

57

- 이러한 개편안을 2014년도의 가중치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9% 감소함
 - 실질수지비율은 2.9% 증가함
 - 경상수지비율은 0.7% 감소함
 - 관리채무비율은 광역자치단체는 23% 감소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는 13% 감소함
 -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은 10% 증가함
 - 실질채무비율은 광역자치단체는 10% 증가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는 변화가 없음
 - 공기업부채비율은 0.4% 증가함
 -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은 3.3% 증가함
 - 수지관리에서는 0.7% 감소하고, 채무관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 치단체 모두 3% 감소하며, 공기업관리에서는 3.7%이 증가함
 - 결국, 수지관리와 채무관리에서의 감소를 통해서 공기업관리의 %가 중 가하게 되는 것이 여기서 제시하는 개편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수발채무를 비롯한 통합부채관리를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므로 시대흐름을 반영한 가중치 수정안임

<표 3-8> 2015년 건전성 가중치 비율과 2014년도 비교

1차분류	지표	2015년(안)	2014년	증감
	통합재정수지비율	15	17.9	-2.9
	실질수지비율	10	7.1	+2.9
	경상수지비율	10	10.7	-0.7
건전성	관리채무비율: 광역(기초)	20(30)	43.0	-23.0(-13.0)
(100%)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5	5	+10.0
	실질채무비율: 광역(기초)	10(0)	0	+10(0)
	공기업부채비율	10	9.6	+0.4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0	6.7	+3.3

제3절 2014년 재정효율성 지표의 검토

1. 수입관리

- 1) 자체세입비율(증감률)
 - 자체세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를 측정하는 지표
 - O 산식

※ 지방세 실제수납액 : 보통세(111) + 목적세(112) - 지방교육세(112-02) 및 과년도(지난년도 수입)분(113) 제외

※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경상적 세외수입(210)

- 임시적 세외수입(220) 제외

		٦	·체세입액(A) (실제수\	납액)			
			지방세	(100)		세외수입 (200)	세입	지표값
연도	계 (A=d+e)	지방세 총액 (110) (a)	지난년도 수입 (113) (b)	지방교육 세 (112-02) (c)	반영액 d=(a- b-c)	경상적세외수 입 (210) (e)	결산액 (B)	(A/B) ×100
n								

		자체세임	입액(실제	수납액)		과거 4년 평균	5년간 증감률	
연도	n	n-1	n-2	n-3	n-4	피기 4단 8건 	3년신 등심뀰	
구분	(A) (b) (c) (d) (e)		(e)	B=(b+c+d+e)/4	지표값(A/B)×100			

2)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도

O 산식

n년도 지방세징수율 -----(n-1)년도 지방세징수율

- ※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 과년도분 및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실적은 제외
 - * 주행분 : 자동차세 중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nĿ	1 지	방서	l징수	-율						(r	n-1))년	지능	방세	징수	-율				
계 A=(a/b) ×100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a)				지능		다동; 란), 네세		실제수납액- 계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c)		자동; 란), 네세	사	지표 값 A/B									
	소 계 (a)	실제 수 납 액	과 년 도 분	자 동 차 세 (주 행 분)	지 방 소 비 세	소 계 (b)	실 제 수 납 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 방소 비 세		소 계 (c)	실제수 납액	과 년 도 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 방 소 비 세	소 계 (d)	실 제 수 납 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 방소 비 세	

3)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도

O 산식

n년도 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1 - ----(n-1)년도 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 n년 체납누계액: n년 미수납액* n년 자동차세(주행분) 미수납액 (n-1)년 체납누계액: (n-1)년 다음연도 이월액 (n-1)년 자동차세(주행분) 다음연도 이월액
- ※ 자동차세(주행분) 체납액은 산정에서 제외
- * 미수납액(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기준으로 작성 (단. (n-1)년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제외)

n년도	말 현재 첫	ll납누계액	(n-1)	(n-1)년도 말 현재 체납누계액				
반영액 (A=a-b)	체납 누계액 (a)	자동차세 (주행분) 체납 누계액 (b)	반영액 (B=c-d -e)	체납 누계액 (c)	결손 처분액 (d)	자동차세 (주행분) 체납 누계액 (e)	지표값 1-(A/B)	

4)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도

O 산식

n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n-1)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 경상적세외수입(210) 이자수입(216)을 제외하여 작성
- 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도
 - O 산식

n년도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1 - ----(n-1)년도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 세외수입 = 경상세외수입 + 임시세외수입
- ※ 미수납액(결손처분 + 다음연도 이월액) 기준으로 작성(단, 2012년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제외)

6)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O 산식

※ 표준세율 적용 지방세액: n년도 말 지방세 징수액 - n년도 해당자치단체 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n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표준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2. 지출관리

- 1) 민간이전경비비율
 - 세출결산 대비 민간이전경비의 비율로 민간이전경비로 인한 재정부담 정도 를 측정하는 지표
 - O 산식

** 민간이전경비: 민간경상보조(307-2), 사회단체보조(307-03), 민간행사보조(307-04),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민원	간이전경비	결산액(A)				TI TT 71
계 (A=a+b +c+d+e)	민간경상 보조(a)	사회단체 보조 (b)	민간행사 보조(c)	사회복지 보조(d)	민간자본 보조 (e)	세출 결산액 (B)	지표값 (%) (A/B) ×100
일반회계							
기타특별							

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 출연·출자금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O 산식

※ 출연·출자금: 출연금(306), 출자금(502), 전출금(309), 공기업자본전출금(404)

	출연・출	출자금 결산액	(A)			지표값
계 (A=a+b +c+d)	출연금 (a)	출자금 (b)	전출금 (c)	공기업자본 전출금 (d)	세출 결산액 (B)	(%) (A/B) ×100
일반회계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기금						

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 세출결산 대비 의무지출의 비율로 재정운영의 경직도를 측정하는 지표

※ 의무지출: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국도비사업비(지방비부담 포 함), 의회비 (205), 채무상환비, 법정경비(재정보전금(308-04) (광역), 조정교부금(308-03) (광역), 상생발전기금(광역), 재난 관리기금전출금)

• 채무상환비 : 차입금원금상환(601)+차입금이자상환(311)

	<u>-</u>	의무지출 결	산액(A)				
계 (A=a+b +c+d+e+f+g+ h+i+j)	인력 운영비 (a)	기본경비 (b)	국도비 사업비 (c)	의회비 (d)	차입금 원금상환 (e)	세출 결산액	지표값 (%) (A/B)
일반회계						(B)	×100
기타특별							
	차입금 이자상환 (f)	재정보전금 (광역) (g)	조정교부금 (광역) (h)	상생발전 기금 (광역)(i)	재난관리 기금전출금 (j)		
일반회계							
기타특별							

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O 유형고정자산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출결산에서의 비중을 측정하는 지표

O 산식

(n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결산액 - (n-1)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결산액) × 100 (%) (n-1)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결산액

※ 자본시설유지비용: 수선유지비, 연료비, 전기요금

※ 유형고정자산 : 일반유형자산(토지 제외), 주민편의시설(토지 제외)

	자본시설유	지비용(A)		<u>.</u>	유형고정자신	(B)	지표값
계 (A=a+b+c)	수선 유지비(a)	연료비 (b)	전기요금 (c)	계 (B=d+e)	일반유형 자산(토지 제외)(d)	주민편의 시설(토지 제외)(e)	(A/B) ×100

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 정책사업비 대비 자본시설지출의 비율로 사회기반시설 형성을 통한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 O 산식

※ 시설비지출액 : 시설비 및 부대비(401)

	시설비지출액(A)	정책사업비(B)	지표값(%) (A/B)×100
Я	А	В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6) 인건비 절감노력도

O 산식

※ 소방직 인건비는 제외

- ※ 총액인건비 대상 과목(7개 항목)
 -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 민건강보험금

n년도 인건	l비 결산 반	영액(A)	n년도 총	n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B)				
반영액 (A=a-b)	인건비 결산액 (a)	소방직 인건비 (b)	반영액 (B=c-d)	총액인건비 (c)	소방직 총액인건비 (d)	지표값 {1-(A/B)}		
일반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공기업특별					

7)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 ※ 지방의회 경비 중 3개 과목
-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 ※ 지방의회경비 기준액은 2013.12.31 기준 의원 정원수를 기준

	지방의호	1경비 결	별산액(A	۸)	Ţ	방의회경	네 기준액(В)	
소계 (A= a+b+c-d)	국외 여비(a)	정 영 통 비 의 운 공 경 (b)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c)	예외사항 으로 편성되어 집행된 국외여비 (d)	소계 (B=d+e+f)	국외여비 (d)	의정운영 공통경비 (e)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f)	지표값 1-(A/B)
일반					일반				
기타 특별					기타 특별				

8)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 ※ 집행부 업무추진비 중 2개 과목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대상 직위 현황은 2012. 12. 31 기준이며, 2013년 중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분은 증빙자료 제출시 추가로 반영
- ※ 2013년도 조직개편 내용 증빙자표 미제출시 2012.12.31 기준으로 산출

업무	추진비 결산의	片(A)	업무	맥(B)		
소계 (A=a+b)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a)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b)	소계 (B=c+d)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c)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d)	지표값 1-(A/B)
일반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			기타특별			

9) 행사 축제경비 절감노력도

O 산식

- ※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세출결산액)×100
- ※ 행사·축제 관련 4개 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보조(307-04)(민간행사보조 금액 포함), 행사관련시설비(401-04)
- ※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국제행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축제행사, 전국체전·전국소년체전·전국 장애인체전은 제외: 증빙자료 첨부(단, 사후평가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행사는 포함) 국제행사, 문화체육관광부 축제행사 목록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 기타 행사·축제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

	n년 행사축제경비(a)					n년 세출		
계 (a)	201-03 (행사 운영비)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제외대상 행사축제경 비(b)	세출 결산액 (c)	A=(a-b)/ c×100	지표값 1-(A/B)
	(n-1)년 행사축제	경비(d)		제외대상	(n-1)년		
계 (d)	201-03 (행사 운영비)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해보대영 행사축제경 비(e)	세출 결산액 (f)	B=(d-e)/ f×100	

10)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 민간이전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세출결산액)×100
- ※ 민간이전경비 중 5개 과목 민간경상보조(307-02), 사회단체보조(307-03), 민간행사보조(307-04), 사회복지보조 (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ᄱᅕ						
소계 (a)	307-02 (민간경상 보조)	307-03 (사회단체 보조)	307-04 (민간행사 보조)	307-10 (사회복지 보조)	402-01 (민간자본 보조)	세출 결산액 (b)	A=(a/b) ×100	지표값 1-(A/B)
일반회계								
기타특별								
	(n-1)년 민	간보조액(c	:)		ᄱᅕ		
소계 (c)	307-02 (민간경상 보조)	307-03 (사회단체 보조)	307-04 (민간행사 보조)	307-10 (사회복지 보조)	402-01 (민간자본 보조)	세출 결산액 (d)	B=(c/d) ×100	
일반회계								
기타특별								

3. 개선사항 및 자치단체 의견 검토

1) 효율성의 범위

(1) 세입 효율성

- 세입효율성 개념 중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조세의 중립성임
 - 세입 중에서 지방세 또는 조세의 효율성은 초과부담을 일으키지 않아
 자워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함
 - 초과부담은 사회적 잉여가치 감소분으로 정의되는 총조세부담에서 조세 징수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됨9
 - 조세의 효율성이 높은 세를 중립세라고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 또한, 어떠한 조세가 효율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공평성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⁹⁾ 초과부담은 아담 스미스가 처음으로 논의하였음. Apps, P. and R. Rees. 2008. Taxation, Labour Supply and Saving, CEPR Discussion Papers 590,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Research School of Economic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투입과 산출로 본 세입 효율성

- 투입과 산출과의 관계에서 세입효율성을 정의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지방세입을 거두어들이는 것임
- 여기에는 과세표준을 측정하는 비용도 최소화되어야 하며 (Cosgel, 2005; 568),¹⁰⁾ 징수비용도 최소화되어야 함

○ 세출과 관련하여 본 세입효율성

- 세입 추계의 효율성이란 세입 예측을 정확하게 하여 정확한 세출 예산
 의 편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함
-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경우 세출재원이 정확하게 편성되지 못 하여 가용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운영의 적정성 확보가 어렵게 됨

○ 기타 세입 효율성의 개념

기타 세입 효율성의 개념은 세입액 증가, 부과 고지, 신세입원 창출 등에서 효율의 증가로 이해 할 수 있음

(2) 세출 효율성

- 세출 효율성의 개념은 예산편성단계와 예산집행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오동호(2013, 63)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세입의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재정지출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념으로 정의하여 재정낭 비의 방지를 통한 생산성의 제고와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포함하여 정의 하였음¹¹⁾
 - 이러한 정의는 예산편성단계와 예산집행단계를 모두 포함한 정의로 볼수 있음

¹⁰⁾ Coşgel, Metin M. 2005. Efficiency and Continuity in Public Finance: The Ottoman System of Tax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37(4): 567-586

¹¹⁾ 오동호. 2013. 지방소비세 도입효과 분석: 재정 효율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중심으로. 성균관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예산편성단계에서의 세출 효율성

- 예산편성단계에서 세출 사업계획은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기초한 예산편 성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의 결과와 부합한 장기적인 사업 계획에 근거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규모와 적시성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에 기초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불용액과 이월액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예산의 편성에서는 당초 목적과는 다른 방안으로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가 없어야 함
- 또한 예산편성단계에서의 세출 효율성의 개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파악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단기적인 재정효율성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효율성을 위하여 자본시설유지관리 등에 대한 일정 지출을 하여야 하기 때문임

○ 예산집행단계에서의 세출 효율성

- 예산집행단계에서의 세출 효율성은 편성된 예산에 의거하여 세출을 집 행하되, 이러한 과정에서 비용의 절감을 이루는 효율성을 달성함과 동 시에 지출된 세출의 효과성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임
- 비용의 절감에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비의 절감과 불필요한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경비의 절감도 필요함
- 또한 예산집행단계에서는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이를 계획에 반영 하여 사업비 편성 불용액을 감소시켜야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무리 없이 진행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함

2) 기존의 효율성 지표의 문제점

(1) 자체세입비율

- 세입결산액에서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반환금을 제외하여 당해연도 세입 결산액만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2014년도 세외수입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2014년 기준으로 일치시켜 작 성하여야 함
 - 자체세입비율과 자체세입증감률의 가중치 조정 필요 : 5:5 또는 6:4, 7:3 도 좋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6:4로 변경 (주지표와 부지표 구성 관점)
 - 자체세입비율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자료만 서식에 포함하고 5년 경향 수치는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추세분석 강화 차원에서 현행대로 5년 경향 수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함

(2) 민간이전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도

- 사회복지보조(307-10)의 경우, 국도비 매칭으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많다는 자치단체 의견이 많음
 - 이에 따라 순수 시비로 운영하는 사회복지보조금만 평가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음
 - TF 검토 결과, 사회복지보조는 통계유지를 위해 남겨두되, 평가를 위한 점수 산정에서는 사회복지보조 부분을 제외하고 점수를 산정하기로 결 정함

(3) 의무지출비율

- 의무지출비율과 관련해서 국도비 사업비의 경우 노령연금이 매칭 되는 비중 이 커서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많음
 - 이에 따라 노령연금 매칭 비용은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몇 몇 자치단 체들이 있음

- TF 검토 결과, 경상수지를 통해 자치단체의 재정경직성은 파악이 가능하므로, 의무지출비율은 참고지표로 변경하도록 함
- 상생발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전출금의 경우 의무지출로서 재정경직성을 불 러온다는 측면에서 세출효율성 측정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의무지출을 하지 않는 경우 재정경직성이 축소되게 되므로 재정분석에는 유리하게 됨
 - 의무지출을 강조하는 국가 정책과 충돌 우려가 있음
 - TF 검토 결과, 상생발전 기금과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부분은 국가 정책과 방향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되는 정책유도지표에 포함시켜운용하도록 함

(4) 자본시설관리 지표

- 자본시설을 관리하는 2가지 지표인 자본시설지출비율과 자본시설유지관리 비비율은 그 의미가 상반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자치단체들의 의견이 있 었음
 - 자본시설지출비율은 상향지표로 늘어날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지표이며,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은 하향지표로 줄어들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지표임
 - 자본시설지출을 늘이게 되면, 다음 해부터 자본시설유지관리비도 늘어 나게 되므로 지표의 방향이 서로 상쇄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음
 - TF 검토 결과, 두 지표 중에서 재정 지출에서 보다 의미가 있는 부분은 자본시설유지관리비의 축소에 있으므로 자본시설지출지표는 참고지표로 이동시키도록 결정하였음

(5) (구)재정운용노력도의 기저효과 축소

- 기저효과(Base effect)는 비교대상시점(기준시점)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왜 곡되는 현상을 말하며, 2014년도 재정운용노력도 지표의 경우에는 한 해에 성과가 좋으면, 다음 해에는 성과가 나빠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 10개 재정운용노력도 지표 중에서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인건비 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의 4개 지표는 매년마다 기준이 주어지고 기준대비 비율을 측정하게 되므로 기저효과 에서 자유로움
 - 반면,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도,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도, 경상세외수입 제고노력도,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도, 민간이전경비 축소노력도,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도의 6개 지표는 전년도의 상황에 따라 현년도에 평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음
 - 기저효과가 예상되는 이들 6개 지표의 경우, 전년도와의 비교 이외에 지표 자체의 상태를 보는 지표를 추가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저효과를 축소시킴
 - 예컨대,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도는 지방세 징수율 60%, 제고노력도40%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종합하는 접근을 취함
 - 같은 방식으로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도는 지방세 체납액비율과 증감률, 경상세외수입 제고노력도는 경상세외수입비율과 증감률, 세외수입체납 액 축소노력도는 세외수입체납액비율과 증감률, 민간이전경비 축소노력 도는 민간이전경비비율과 증감률,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도는 행사축제 경비비율과 증감률로 나누어 6:4의 비율로 종합하기로 함
 - 기존 효율성 지표의 경우, 상태지표와 전년대비증감지표가 7:3의 비율이 었으나, 올해 자치단체 노력 유도 강화 기조에 따라 6:4로 노력도를 보여주는 증감율의 비중을 높였음¹²⁾

^{12) 5:5}로 하거나 오히려 노력도의 비중을 더 올리자는 의견도 있으므로 2014년 데이터 확보 후

4. 데이터 시뮬레이션(FY2013)

- 1) 주지표와 부지표 간 가중치 문제
 - 주지표와 부지표 항목간 가중치를 6:4으로 함
 - 증감률은 부지표임
 - 증감률 지표에서 생기는 효과를 무마시키기 위하여 기저를 크게 한 것임

2) 효율성 가중치 안

- 효율성은 크게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으나, 세입에 해당하는 측정항목에 비해 세출에 해당하는 측정항목이 많으므로 각각의 범주 별 가 중치 값은 세입효율에 45%, 세출효율에 55%를 부여함
 - 세입효율 내의 6개 지표에 대해서는 자체세입비율, 지방세징수율, 탄력 세율적용노력도는 각각 8%, 지방세체납액비율, 경상세외수입비율, 세외 수입체납액비율은 각각 7%를 부여함
 - 세출효율 내의 7개 지표에 대해서는 민간이전경비비율에 가장 높은 12%를 부여하고, 출연출자금비율,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을 각각 8%, 인건비 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에 각각 7%,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에 가장 적은 6%를 부여함
 - 그 결과가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있음

자문회의를 통해 분석 반영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겠음

<표 3-9> 2015년 기중치 비율(안)

1차분류	2차분류	지표	비율(%)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8%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감률)	7%
	세입효율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7%
		세외수입체납액비율(증감률)	7%
		탄력세율적용노력도	8%
중 인 서		소계	45%
효율성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12%
(100%)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증감률)	8%
	ガネテウ	인건비 절감노력도	7%
	세출효율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6%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7%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7%
		소계	55%

- 이러한 개편안을 2014년도의 가중치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 효율성지표의 경우, 재정운용노력도와 통합하였고, 지표산정식이 대폭 수정되어 1:1로 2014년과 정확히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
 - 근사치로 평가하여 대략적인 증감을 파악해 본 결과, 자체세입비율과 민 간이전경비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지방세 징수율제고와 업무추 진비 절감 등 과거 재정운용노력도에 해당하는 10개 지표들의 가중치가 상향조정되었음
 -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은 8.2% 감소함
 - 지방세징수율(제고율)은 3.1% 증가함
 -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감률)은 1.6% 증가함
 -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은 1.6% 증가함
 - 세외수입체납액비율(증감률)은 1.6% 증가함

- 탄력세율적용노력도는 2.6% 증가함
-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은 5.8% 감소함
-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은 1% 증가함
-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증감률)은 2.8% 감소함
- 인건비 절감노력도는 1.6% 증가함
-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는 0.6% 증가함
-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는 2.1% 증가함
-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은 1.1% 증가함
- 과거 세입부분의 재정운용도에 해당되는 5개 지표들의 가중치가 10.5%p 상 향조정되었으므로 이들의 합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자체세입비율이 8.2%p 하향조정된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됨
- 민간이전경비비율의 가중치가 5.8%p 하향조정되었는데, 이는 과거 효율성 지표의 민간이전경비비율과 노력도지표인 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도가 합쳐 지면서 하향조정된 것으로서, 여전히 나머지 세출절감지표들과 비교할 때, 4%p 이상 높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됨
- 과거 자본시설지출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짐에 따라 자본시설과 관련 된 가중치가 2.8%p 하락되었고, 이 하락분이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절감노 력도 가중치 증가분으로 보정됨

<표 3-10> 2015년 효율성 가중치 비율과 2014년도 비교

1차분류	지표	2015년(안)	2014년	증감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8%	16.2%	-8.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8%	4.9%	+3.1%
효율성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감률)	7%	5.4%	+1.6%
(100%)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7%	5.4%	+1.6%
	세외수입체납액비율(증감률)	7%	5.4%	+1.6%
	탄력세율적용노력도	8%	5.4%	+2.6%

1차분류	지표	2015년(안)	2014년	증감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12%	17.8%	-5.8%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8%	7%	+1%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증감률)	8%	10.8%	-2.8%
	인건비 절감노력도	7%	5.4%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6%	5.4%	+0.6%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7%	4.9%	+2.1%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7%	5.9%	+1.1%

제4절 정책유도 지표의 검토

1. 정책유도 지표의 도입

1) 지표 성격

- 정책유도 분야는 그 성격이 현안 정책의 평가와 관련되어 있고, 변동이 상 대적으로 손쉬우며, 재정분석에서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
 - 2015년 현재 감점지표 3개만 운용될 예정이며, 2개는 재정분석을 위한 지표라기보다는 준법을 유도하는 지표이고, 1개는 재정운용을 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정책성 지표임
 - 건전성이나 효율성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며, 정책 목표가 달성될 경우 삭제하고 다른 정책이 필요할 경우, 가-감점으로 운용하는 지표가 될 것임

2) 지표 취지

○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적으로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기금들을 확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적 제재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문제점 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재난관리기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대표적인 예임
-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경우에도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는 일정 수준의 출연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
 -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와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그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일정규모를 적립하거나 납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규정된 규모의 전출금이나 출연금을 확보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위법적인 재정운영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제재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재정분석 시 이러한 위법성에 대해 페널티를
 준다면 위법적인 행태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지방재정분석의 기본적인 목적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는 것이므로 재난관리기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보에 대한 평가 및 페널티 부여는 동 분석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경우 수도권의 세 광역자치단체에만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어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비판이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법을 준수하여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방 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며, 그 방안의 하나로 지방재정 분석 시 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대안으로 사료됨
- 이와 함께 예산을 위탁금으로 편성하고 보조금처럼 집행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행태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 지방재정분석에서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경비 등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으나 위탁금 운영에 대해서 는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위탁금으로 운영함으로써 평가 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파악됨
 - 하지만 이러한 행태는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페널티가 부여되는 것은 정당함
 - 다만 불법적인 재정운영은 감사에서 적발하여야 할 문제일 뿐 아니라
 지방재정분석 실사단이 현장에서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평가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위탁금과 보조금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구분 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지 않는다면 평가자(실사단)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도 있음

- 하지만 위탁금 코드를 추출해서 사업 명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여부
 를 확인한다면 평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임
- 또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면 10개 정도의 표본을 추출하여 준수여부 를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면 불법적인
 재정운영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상에서 언급한 지표들은 특히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들로서, 건전 성이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방재정분석의 다른 지표들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
 - 건전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다른 지표들은 총점에 포함되지만 이러한
 지표들은 페널티 지표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즉 총점에는 포함되지 않고 총점에서 일정점수를 삭감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총점이 1,000점이라면 지표를 준수 시 감점이 없지만 위반 시 10~20점 정도를 총점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보조금을 위탁금으로의 편성 운영하는 경우 페널티 부여 방안으로 1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준수여부를 평가한다면 위법 건당 5~10점의 감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상에서 살펴본 합법성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들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을 준수하여 재정을 운영하도록 유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2. 2015년 도입될 페널티 지표

- 1)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확보
 - 법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확보 여부 파악
 - 법정 금액 미확보 시 페널티 점수 부여 (최종점수에서 감점 적용)
 - 재난기금관리전출금비율이 법정에 미달할 시 일괄적으로 5점 감점
 - O 산식

- 2014년도 기준재난관리기금전출금의 평균은 재난기금관리전출금비율이 법정에 미달할 시 일괄적으로 5점 감점
- 2) 상생발전기금 전출금(서울, 인천, 경기) 확보
 - 법정 상생발전기금 전출금 확보 여부 파악
 - 법정 금액 미확보 시 페널티 점수 부여 (최종점수에서 감점 적용)
 - 상생발전기금전출금비율이 법정에 미달하면 일괄적으로 5점 감점
 - O 산식

- 3) 위탁금 편성 후 보조금 집행
 - 위탁금으로 편성하고 보조금처럼 집행한 사례를 실사를 통해 파악

¹³⁾ 도세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의 합계를 의미함. 시군세의 경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도축세의 합계를 의미함

- 실사 시 위탁금 샘플 5건 조사 후, 보조금처럼 경쟁 입찰이 없거나 지출근거 없이 지출한 건이 발견되면 감점 시행
- 위탁금 편성 후 보조금 집행 건이 발견되면 일괄적으로 5점 감점

4) 페널티 점수 최대 15점의 근거

- 2013년 데이터 적용하여 1000점 만점으로 재환산한 시뮬레이션 결과, 표준 편차의 최대범위는 특별·광역시 39점이며, 최소범위는 자치구 14점이었음
- 단체 수가 적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가능급과 나능급으로 등급변동 가능 점수 를 산출하는 시뮬레이션 결과, 최소 13점에서 최대 17점의 정도이면 등급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15점 정도를 부여하면, 최소 순위 한 단계 정도에서 최대로 모든 페널티를 받을 시 등급이 변동할 정도의 점수가 될 수 있음
 - 상기 내용을 종합 고려하여 최대 15점으로 결정함

(참조) 자체사업 보조금 절감노력도: 재정분석(FY 2015) 적용

- FY 2015부터 자치단체 자체사업 보조금 관리 강화
 - FY 2016부터 보조금 지출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
 - 지방보조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의 엄격화 등을 통해 지방보조 금이 많은 부분 절감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른 자치단체의 세출예산대비 보조금 절감분을 타 단체와 비교하여 평가 후 가점 부여
 - 절감비율에 따라 평균이상으로 절감하는 경우, +5점을 일괄 부여함

제5절 기표개선안 종합 검토

1. 종합 가중치의 설정

○ 검토 결과 2015년 재정분석 지표 개선안은 건전성 7개(광역시도는 8개), 효율성 13개의 총 20(+1)개 지표에 정책유도 페널티 지표 3개로 개 편되었음

2014년도				2015년도	
	구분	배점	구분	배점(1안)	배점(2안)
	건전성	700	건전성	500	700
	효율성	300	중이서	500	600
	재정운용노력	300	효율성	500	800

<표 3-11> 2015년 총 배점과 2014년도 비교

- <표 3-11>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4년도의 경우 배점은 총 1,300점이었으며, 이와 비교하여 올해 바뀐 체계 하에서의 총 배점을 2가지 안으로 검토하였음
 - 1안은 건전성과 효율성의 비중을 각각 1:1로 두고 1000점 만점으로 산 정한 안이며, 2안은 건전성은 700점 효율성은 600점으로 하여 2014년도 배점과 동일하게 1300점 만점으로 산정한 안임
 - 1안은 건전성과 효율성 체계로 새롭게 개편함에 따라 가중치를 1:1로 두어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
 - 2안은 중요성에 따라 건전성의 배점을 높게 두고(2011~2013), 재정운용 노력의 배점을 일부 상향조정(2014)한 기존의 정책방향과 이어지도록 구성되었음
- O FY2013 데이터를 이용하여 2가지 안을 시뮬레이션 해 보기로 함

- 시뮬레이션 목적은 재정분석 결과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임
- 각 안을 적용하였을 경우, 2014년도 재정분석의 결과와 등급이 변동되는 단체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임
- 시뮬레이션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음
 - 1) 데이터는 FY2013 데이터를 사용 (인센티브 지표도 적용되지 않음)
 - 2) 가중치는 2015년 연구원 안을 그대로 적용
 - 3) 1안과 2안의 차이는 총점의 변동 및 그로 인한 세부 가중치의 변경임
 ex) 건전성 10%의 지표는 1000점 만점일 때, 50점이나, 1300점 만점일
 때는 70점으로 계산됨

	갯수	등급	등급변동(1안)	등급변동(2안)
특광역시	7	3	0	0
도	9	3	6	6
시	75	5	27	27
군	83	5	14	14
구	69	5	10	8

<표 3-12> 총 배점 시뮬레이션 결과

- 분석 결과는 <표 3-12>과 같이 정리됨
 - 등급변동은 2안이 적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음
 - 1안의 경우, 자치구에서만 등급이 변동되는 단체가 2개 더 발생함
- TF 논의 결과, 노력지표 중심으로 평가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노력을 강화한다는 2015년 재정분석의 기본 방향에 따라 건전성 500점, 효율성 500점의 1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함
 - 건전성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누적된 결과이며, 효율성은 노력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재에서는 건전성에 많은 가중치가 주어져 재정분석이 사전경보시스템

과의 차별성이 떨어지고 있음

- 사전경보시스템과 같은 재정위기관리 제도는 건전성을 중시하는 제도이기에 차별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분석제도의 효율성에 더 많은 가중치가 장기적으로 두어져 노력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재정분석은 성과가 좋은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건전성만을 중시할 수 없음
- 제도의 이행과정이므로 우선 단기적으로는 둘의 가중치를 5:5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2014년 지표와의 비교

- 재정건전성 분야는 2014년에 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5년에는 줄여서 운용할 계획임(광역은 8개, 기초는 7개 지표)
 - 수지관리에서 경상수지비율은 수입에서 특별교부세를 제외하여 산정하기로 함
 - 부채관리에서 실증분석 결과 상관관계가 높은 관리채무부담비율과 관리 채무상환비율을 참고지표로 이동함
 - 광역자치단체는 실질채무비율과 관리채무비율을 조합하여 평가함
 - 현금창출자산대비부채비율은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로 명칭을 변경함

<표 3-13> 2014년 지표와 2015년 지표(안) 비교

	2014년 지표	2015년 지표(안)		
분야	분석지표	분야	분석지표	
l . 재정 건전성	6. 관리채무상환비율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8. 공기업부채비율	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실질수지비율 3. 경상수지비율 4. 관리채무비율 참고지표로 이동 참고지표로 이동 5.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6. 공기업부채비율	
II. 재정 효율성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8. 실질채무비율(신규, 광역만) 9. 자체세입비율(증감률) 10.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11.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참고지표로 이동 12.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참고지표로 이동	
■. 재정운용 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재정 효율성	13. 지방세징수율(제고율) 변경 14.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감률) 변경 15.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변경 16. 세외수입체납액비율(증감률) 변경 17.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8. 인건비 절감 노력도 19.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20.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21.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변경 참고지표로 이동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2016년 신규)	
		정책 유도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상생발전기금 확보 위탁금 편성 후 보조금 집행 자체사업 보조금 절감(2016년 신규)	

^{※ &#}x27;14년 5개 지표(관리채무부담비율, 관리채무상환비율, 의무지출비율, 자본시설지출비율, 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도)는 참고지표로 이동하고, '15년 3개 지표(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상생발전기금 확보, 위탁금 편성 후 보조금 집행)는 신규 추가하고, '16년 2개 지표(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자체사업보조금절감) 추가

- 재정효율성 분야는 2014년에 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5년에는 재정운용노력도 지표와 통합하여 13개 지표로 운용할 계획임
 - 의무지출비율, 자본시설지출비율,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도는 참고지표 로 이동함
 - 민간이전경비비율에서 사회복지보조(307-10)은 평가 시에만 제외하기 로 함
 - 5개 노력도 지표는 기저효과 축소를 위해 비율과 증감률로 나누어 분석 하기로 함
- 종합하면, <표 3-13>과 같이 요약됨

3. 재정분석 추가가능 지표

- 1) 재정공시의 투명성 평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정정보가 지역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재정운영의 효율·효과·책임성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재정운영의 투 명성은 매우 중요한 평가지표임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행정활동들은 궁극적으로 주민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활동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임
 - 더욱이 정부 3.0과 관련하여 재정에 대한 투명성 평가는 재조명을 받고있는 상황임
 - 현재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예산,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명시된 법적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는 합법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 재정투명성은 재정정보의 공개성, 이해 가능성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요 재정정보를 지역주민 들에게 "적시에 정확하고 공정하고 접근가능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정

의될 수 있음

- 즉 주민들이 얼마나 재정정보를 획득하는데 용이한가, 그리고 얼마나 주민 친화적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여부 등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투명성 평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재정공시의 적절성은 재정공시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중
 복가능성이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재정공시를 하고 있어, 홈페이지에 등록
 한 날짜 등의 확인이 용이하지 않고 주민친화성은 평가자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어,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 하지만 정교한 지표설계를 통하여 재정정보에 대한 정확성, 주민친화성 등 의 측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재정공시평가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채무조기상화 및 이자비용 절감 노력도 평가

-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축소노력이 필요함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재정분석 시 채무의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의 추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차환 등을 통하여 이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방안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대상임
- 채무조기상환과 이자비용절감 노력은 다양하게 측정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측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채무조기상환 노력 = 조기상환 채무규모 / 상환예정 채무규모
 - 이자비용절감 노력 = 이자절감액 / 세출결산액 × 100
- 다만 채무 조기상환이나 이자비용 절감 노력 등은 현행 지방재정분석지표인

관리채무비율 등에서 이미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의 가능성 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노력 등을 특별히 강조하려는 정책적 의지 가 있는 경우 인센티브 지표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자체사업 보조금 절감노력도

-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보조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사업 보조금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얼마나 자체사업 보조금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임
 - 예를 들어 세출예산대비 보조금 절감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여, 이
 를 타 동종지방자치단체와 비교·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노력도 평가는 인센티브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즉 총점
 에 가점을 주는 방안임
 - 다만 이러한 지표는 민간이전경비비율 지표와 중복성이 높으므로 지표설계 시 이러한 점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제4장 지방재정분석 실효성 강화방안

제1절 재정상황에 대한 미래예측기능 강화 제2절 재정진단기준의 개선 제3절 재정분석 결과 활용도 제고 0

제4장

지방재정분석 실효성 강화방안

제1절 제정상황에 대한 미래예측기능 강화

1. 거시적 지방재정정책 개발 및 활용

- 재정분석의 목적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는데 있음
 - 따라서 매년 이루어지는 재정분석 시 지방재정의 구조와 운용에 대한 거시적 흐름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정책개발에 활용 하다면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하여 재정 지표별, 단체별 분석에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내어 이의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에 활용해야 함
 - 예를 들면, 건전성 지표 중 특정 지표에서 재정건전성 악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새로운 제도 도입등을 검토해야 함
 - 특히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 될 경우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국고보조사업의 운영 등 개선점을 발굴하여 제도개선 등에 활용해야 함
 - 자치단체별 건전성지수를 산출하여 개별 자치단체의 종합적인 건전성 향상 혹은 악화 등을 판별하여 악화할 경우 그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도 록 할 필요가 있음
 - 종합보고서에 재정정책 개발 관련 정책제언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익년도 재정분석에서 이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여 전년도 재정분석의 성과로 적 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 이러한 방안이 좀 더 강화된다면 재정분석의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2. 환경적, 조직적 변수를 활용한 재정문제의 원인 분석

- 재정적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원인파악이 중 요함
 -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자료 뿐 아니라 환경적, 조직적 요인들에 대 한 파악이 필요함
 - 즉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경제, 소득, 산업 등에 대한 장기적인 자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적 특성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다양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재정적 문제를 야기한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재정 자료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문화· 지역특성 자료들이 함께 제공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다양한 분석방법 들에 대해서도 제공되어야 할 것임

3. 미래예측기능 향상을 위한 방법론

- O 단순외삽모형
 - 시간변수만을 이용하여 미래의 변화방향을 예측하는 모형으로 주로 시계열 자료의 장기적 추세변동을 추정하고 예측하는데 사용됨
 - 선형추세모형, 지수성장모형, 2차함수모형, 로지스틱 성장모형, S자 모양모형 등이 있음
- 자기회귀(AR)모형
 - 동 시계열이 과거관측치만을 이용하는 모형
 - p기 이전까지의 과거관측치가 포함된 모형을 p차 회귀모형이라고 부르 며 AR(p)라고 표시함
- 이동평균(MA)모형
 - 교란항 또는 백색잡음과정을 따르는 확률변수만을 이용하는 모형

- q기 이전까지의 교란항이 포함된 모형을 q차 이동평균모형이라고 부르 며 MA(q)라고 표시함
- 자기회귀-이동평균(ARMA)모형
 - 자기회귀(AR)모형과 이동평균(MA)모형이 혼합된 모형
 - 동 시계열의 시차(p, q)에 따라서 ARMA(p, q)로 표시함

O ARIMA모형

- 관측치를 생성하는 확률분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불안정적 시계열 모형
- 시계열로부터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추출해내기 위해 자기회귀(AR), 적 분(Integration), 이동평균(MA)의 세 가지 필터를 사용
- 필터의 종류나 특성을 찾음으로써 시계열의 구조와 행태를 설명하는 모
 형을 구성
- 다른 설명변수의 도입이 없이 변수의 과거치와 교란항만을 가지고 시계
 열에 적합한 모형을 설정할 수 있음
- 예측치가 최소평균평방오차(minimum mean square error)에 의해 도출되 므로 자료가 불충분한 통계자료의 경우 보간이나 외삽을 통해 시계열의 연속성 유지가 가능
- 시계열의 특성을 가장 적은 모수의 수로써 표현할 수 있는 모형임
- 현재 재정분석의 데이터가 상당 부분 쌓여있으므로(행정자치부 재정고에 전 회계연도의 통계보고서 이용가능) 이들을 잘 정리하여 자치단체의 유형별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고, 이 모형을 활용하여 예측한 결과를 종합보고서에 반영해 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제2절 재정진단기준의 개선

- 재정분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분석의 결과를 활용하는 재정 진단 기준의 개선이 필요함
- 시행령에 따르면, 재정진단의 기준은 아래와 같음

지방재정법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재</u> 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u>세입예산 중 채무비율</u>이 세입예산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 잔액이 과다한 경우
- 2. <u>결산상 세입실적</u>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 3. 인건비 등 경상비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보고서의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등이 현 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14년도 재정분석의 진단단체 선정 기준은 시행령을 열거조항으로 보고 그대로 따랐음
 - 관리채무비율 25% 초과 계룡시, 당초세입예산대비 결산차이로 광양시, 경상수지비율로 광주북구, 재정운용노력도에 따라 함평군을 선정
 - 시행령에 나와 있는 조항을 열거적 조항이 아닌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하고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하위 4개 단체를 선정하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상위법에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재정분석 체계 개편을 통해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개편하였

기 때문에, 종합점수 산정 후 최하위 단체들을 진단단체로 선정한다면 모법에 적합한 진단단체 선정방식이 될 것임

- 장기적으로는 시행령 65조를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u>건전성과 효율성을 종합하여 당해 자치단체가 현저한 문제가</u> <u>있다고 판단하는 경우</u>,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와 같이 수정하고 하 부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현재 단서조항의 해석만 예시적 조항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시행령을 어기는 것은 아님

제3절 기재정분석 결과 활용도 제고

1. 예산편성에의 반영여부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 재정분석의 환류기능의 강화가 필요함
 - 환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분석결과 미흡사항을 익년도 예산 및 정책에 반영해야 함
 - 또한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반영 여부를 평가하여 개선노력이 큰 자치 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자치단체별 전년도 미흡사항의 개선 노력도는 정량 혹은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지표설계가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전년 대비 노력도 우수단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재정분석 현지실사 시 단체별로 전년도 미흡사항을 파악하여 이의 개선
 노력을 파악하는 방법, 혹은 관련 지표를 선정하여 해당 지표의 개선도

평가 등의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우수단체 및 개선도 향상 단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이에 기여한 담당 공무원(예산부서뿐만 아니라 사업부서 포함)에 대한 표창과 해외 우수사례 시찰 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재정분석결과와 조치사항 동시 공시

- 현재 재정분석 결과는 재정지표의 경우 중요지표는 자치단체 유형별 통합공시(행정자치부)를 통해 최댓값, 최솟값, 평균 등이 공표되어 개별 자치단체는 그 위상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음. 또한 단체별 보고서는 개별 자치단체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음. 앞으로는 개별 자치단체별 공시에서 미흡사한 등에 대한 조치사항도 공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개별 자치단체의 공시는 분석결과만 공시되고 있어, 향후에는 미흡 사항 등의 개선 조치(예정) 사항을 함께 공시하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재정분석 결과와 미흡사항 및 향후 조치 방향을 마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노력과 재정운영에 대한 주 민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사후관리 강화

- 재정분석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지방공무원을 대 상으로 한 연찬회가 필요하며, 재정분석결과 도출된 재정관리 기법 등의 교 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재정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련 담당자뿐만 아니라 각종 재정지
 표와 관련이 있는 사업부서 및 지원부서 등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찬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함

- 재정분석 결과의 교육과 홍보를 고려하여 전국 규모의 학회 등을 활용 하는 방안도 검토함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에 재정운영이 개선된 단체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평가 위원들의 활동이나 보고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4.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과거 재정분석 우수단체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를 통해 명확한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나, 2011년 이후 보통교부세 자구노력지표와 연계되어 실제 인센 티브가 부여되더라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센티브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특별교부세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우수단체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 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하여 향후 재정효율성 지표의 보통교부세 자구노력 연계지표의 효용성을 재검토하고, 보통교부세로의 연계보다는 특별교부세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들 공무원들의 경우 재정분석결과의 환류, 교류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대응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도움이 필요함
 - 지나친 순환보직은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분석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 이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그 이유 중 하나는 인센티브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즉 인센티브의 규모가 얼마인지 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지방재정

분석의 중요성을 폄훼하는 경우가 있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담당공무원들
 의 지방재정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효과적 관리가 요구됨

5. 재정문제파악의 장기적 자료 제공

-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측면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정확한 재 정적 분석 없이는 그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들의 재정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재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세입의 감소로 인한 재정압박을 들 수 있음
 - 세입의 감소는 여러 측면에서 야기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거래,인구의 감소 및 지역경제의 악화 등이 세입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
 - 둘째, 행정서비스의 증대로 인한 세출의 증대를 들 수 있음
 - 특히 복지서비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복지 지출의 증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셋째, 부채의 증가에 따른 재정의 압박을 들 수 있음
 - 즉 지방채의 발행이 지나치게 많으면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결국은 선진외국의 지방정부들처럼 재정의 파탄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음
 - 넷째, 재정운영을 방만하게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임
- 재정분석지표들 속에는 건전성과 효율성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부채의 증가 때문인지, 세입

- 의 감소 혹은 세출의 증가 때문인지, 방만한 재정운영이나 세입확충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인지 등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
- 특히 장기적인 자료가 축적되면 지방재정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지 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인 문제점들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재정분석 시 장기적인 자료를 평가단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추이분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세분석을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미래의 재정상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언제 어떠한 재정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예측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평가단은 이러한 장기적인 자료에 따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6. 지방재정 관리제도들 간의 연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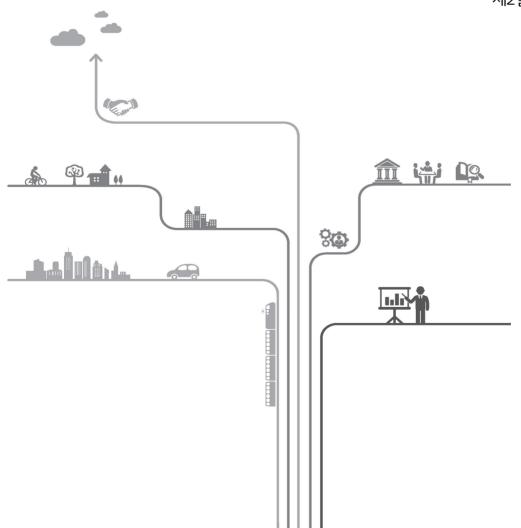
- 현재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사전적인 재정관리제도로서 중기재정계획제도, 투자심 사제도,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등이 있으며 사후적인 관리제도로 지방 재정분석 및 진단제도, 교부세 인센티브 및 감액, 지방재정위기 사전경 보시스템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보완한다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제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과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간
 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각 제도들이 간과할 수 있는 문제들을 서로 보완하도록 한다면 보다 명확하고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임
 - 또한 투자심사제도의 심사대상인 새로운 대형사업들은 미래 지방재정에

대한 위험 요소이므로, 투융자심사 시 사업별 심사 뿐 아니라 재정분석에서 나타난 여러 지표들과 지표들의 추이자료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심사 및 판단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렇듯 여러 제도들이 서로 보완적으로 운영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통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건전성, 책임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큰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연구내용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연구내용 요약

- 현행 2014년도 재정분석제도는 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노력의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에서 재정효율성과 재정운용노력도 지표는 효율성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어 통합이 필요함
-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은 재정운영을 위한 두 가지 큰 가치로서 그 위상이 동등하며, 개념 상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구분이 가능함
 - 재정건전성이 지방재정의 거시적 상태와 실적을 측정하는 분야라고 한다 면, 재정효율성이 미시적 상태와 실적을 측정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재정효율성은 재정건전성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재정건전성은 재정효율성이 누적되어 쌓인 결과에 해당하는
 는 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재정효율성이 단기적 재정운영성과를 보여준다면, 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 재정운영성과로 자치단체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인식할 수 있음
- 종합하여, 2015년도 재정분석을 위한 신규 체계는 건전성·효율성의 2개 분야 체계를 중심으로 국가 정책과 관련된 부가적인 지표를 모은 정책유도 분야의 3개 분야로 구성하도록 함
 - 건전성 분야 체계는 2014년도 재정분석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구성 지표는 실제 데이터에 근거하여 건전성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지표들로 재구성
 - 효율성 분야 체계는 2014년도 재정분석 체계에서 효율성과 재정운용노 력을 통합하여 재구성
 - 이상의 2가지 분야 이외에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지표들을 모

아서 정책 방향에 맞도록 자치단체의 행태를 유도하는 지표를 구성하도 록 하고, 정책유도 지표로 명명하기로 함

<표 5-1> 2015년 지방재정분석 분석체계

2014년	도	2015	년도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건전성	700	건전성	500
효율성	300	충으셔	500
재정운용노력	300	효율성	300
		정책유도	최대 -15

○ 2015년 재정분석 지표 개선안은 건전성 7개(광역시도는 8개), 효율성 13개 의 총 20(+1)개 지표에 정책유도 페널티 지표 3개로 개편되었으며, 총점은 건전성 500점, 효율성 500점의 1,000점 만점으로 결정함

<표 5-2> 2014년 지표와 2015년 지표(안) 비교

	 2014년 지표		2015년 지표(안)
분야	분석지표	분야	분석지표
l. 재정 건전성	통합재정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생각 관리채무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 관리채무상환비율 관리청출자산대비 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실질수지비율 3. 경상수지비율 4. 관리채무비율 참고지표로 이동 참고지표로 이동 6. 광기업부채비율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II.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재정 효율성	8. 실질채무비율(신규, 광역만) 9. 자체세입비율(증감률) 10.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11.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참고지표로 이동 12.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참고지표로 이동
Ⅲ. 재정운용 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3. 지방세징수율(제고율) 변경 14.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감률) 변경 15.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변경 16. 세외수입체납액비율(증감률) 변경 17.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8. 인건비 절감 노력도 19.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20.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21.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변경 참고지표로 이동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2016년 신규)
		정책 유도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상생발전기금 확보 위탁금 편성 후 보조금 집행 자체사업 보조금 절감(2016년 신규)

^{※ &#}x27;14년 5개 지표(관리채무부담비율, 관리채무상환비율, 의무지출비율, 자본시설지출비율, 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도)는 참고지표로 이동하고, '15년 3개 지표(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상생발전기금 확보, 위탁금 편성 후 보조금 집행)는 신규 추가하고, '16년 2개 지표(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자체사업보조금절감) 추가

- 재정건전성 분야는 2014년에 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5년에는 7+1개 지표로 줄여서 유용할 계획임
 - 수지관리에서 경상수지비율은 수입에서 특별교부세를 제외하여 산정하기로 함
 - 부채관리에서 실증분석 결과 상관관계가 높은 관리채무부담비율과 관리 채무상환비율을 참고지표로 이동함
 - 광역자치단체는 실질채무비율과 관리채무비율을 조합하여 평가함
 - 현금창출자산대비부채비율은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로 명칭을 변경함
- 재정효율성 분야는 2014년에 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5년에는 재정운용노력도 지표와 통합하여 13개 지표로 운용할 계획임
 - 의무지출비율, 자본시설지출비율,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도는 참고지표
 로 이동함
 - 민간이전경비비율에서 사회복지보조(307-10)은 평가시에만 제외하기 로 함
 - 5개 노력도 지표는 기저효과 축소를 위해 비율과 증감률로 나누어 분석 하기로 함
- 정책유도 분야는 그 성격이 현안 정책의 평가와 관련되어 있고, 변동이 상 대적으로 손쉬우며, 재정분석에서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적 인 성격을 띠고 있음
 - 2015년 현재 감점지표 3개만 운용될 예정이며, 2개는 재정분석을 위한 지표라기보다는 준법을 유도하는 지표이고, 1개는 재정운용을 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정책성 지표임
 - 건전성이나 효율성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며, 정책 목표가 달성될 경우
 삭제하고 다른 정책이 필요할 경우, 가-감점으로 운용하는 지표가 될 것임

<표 5-3> 2015년 재정분석 지표 가중치(안)

1차분류	2차분류	지표	비중(안)
		통합재정수지비율	15%
	수지 관리	실질수지비율	10%
		경상수지비율	10%
건전성	<u> </u>	관리채무비율	20%(광역) 30%(기초)
(500점)	채무 관리	실질채무비율	10%(광역만)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5%
	고리아 크리	공기업부채비율	10%
	공기업 관리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0%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8%
	세입 효율 (45%)	지방세징수율(제고율)	8%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감률)	7%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7%
		세외수입체납액비율(증감률)	7%
		탄력세율적용노력도	8%
효율성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12%
(500점)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8%
	세출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증감률)	8%
		인건비 절감노력도	7%
	효율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6%
	(55%)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7%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7%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2016년 신규)
	-111-1-1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5점
	페널티 (감점)	상생발전기금 확보	-5점
정책유도	(百百)	위탁금 편성 후 보조금 집행	-5점
	인센티브 (가점)	자체사업 보조금 절감	(2016년 신규)

○ 지방재정분석의 활용도 개선을 위해 거시적 지방재정정책 개발 및 활용, 재정 분석 결과를 지자체별 예산편성에 반영, 재정분석결과 및 조치사항의 동시 공시, 재정분석결과 연찬회, 재정관리기법 교육 등 사후관리 강화, 재정분석 우수 및 개선도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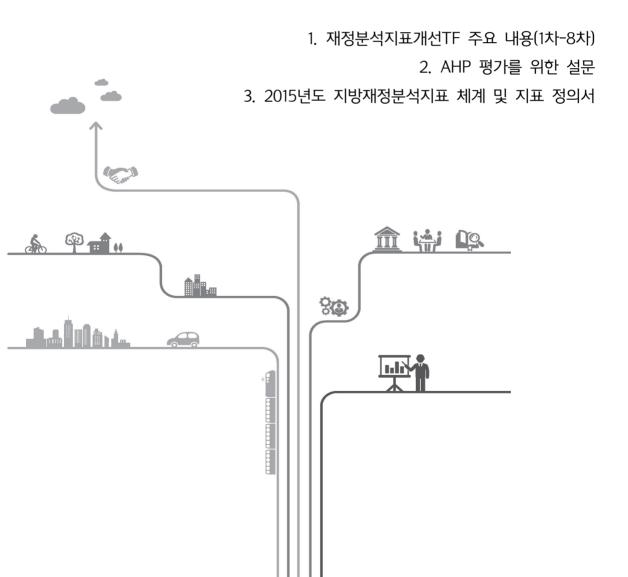
- 현재 재정분석의 데이터가 상당 부분 쌓여있으므로 잘 정리하여 자치단체의 유형별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예측한 결과를 종합보고서에 반영해 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종합보고서에 재정정책 개발 관련 정책제언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익년도 재정분석에서 이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여 전년도 재정분석의 성과로 적 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제2절 정책제언

-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 될 경우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국고보조사업의 운영 등 개선점을 발 굴하여 제도개선 등에 활용해야 함
- 시행령에 나와 있는 조항을 열거적 조항이 아닌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하고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하위 4개 단체를 진단단체로 선정하는 안을 고려할 필 요가 있음
- 재정분석의 환류기능 강화를 위해서 전년도 분석결과 미흡사항을 익년도 예 산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함
- 재정분석 결과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이에 기여한 담당 공무원(예산부서뿐만 아니라 사업부서 포함)에 대한 표창과 해외 우수사례 시찰 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재정분석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찬회가 필요하며, 재정분석결과 도출된 재정관리 기법 등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부 록



부록 1

재정분석지표개선TF 주요 내용 (1차-8차)

Ⅰ. 1주차 워크샵 개요

- 현행 재정분석 결과 및 개선사항
- 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개요
- 1) 현행 제도 목적과 역할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운영 실태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재정·통계자료를 토대로 종합 점검·분석·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정성, 효율성, 투명 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의 노력을 진작시키는데 목적 이 있음
 - 재정운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포상하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등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기능으로서 역함
- 2) 현행 제도 시행 근거

◇ 지방재정법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예산,</u> <u>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u>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한다.

<최종 개정일 2014.11.19.>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 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최종 개정일 2014.11.19.>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① 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 1.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의 예산보고서
- 2. 「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의 결산승인보고서
- 3. 법 제11조의 지방채발행보고서
- 4. 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보고서
- 5. 법 제18조의 출자보고서
- 6.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지방비부담보고서
- 7.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 8.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 9. 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
- 10.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
- 11.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관리현황보고서
-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
- 1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그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관한 보고서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이하 "재정분석·진단"이라 한다)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재정분석·진단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 잔액이 과다한 경우
-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 사용한 경우
- 3. 인건비 등 경상비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보고서의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등이 현저하 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체계

분야	점수	부문(영역)	재정분석지표	가중치
			1-1. 통합재정수지비율	0.125
		수지관리 0.250	1-2. 실질수지비율	0.050
		0.230	1-3. 경상수지비율	0.075
1. 재정건전성			1-4. 관리채무비율	0.126
(9개)	700점	채무관리	1-5. 관리채무부담비율	0.070
(77)		0.336	1-6. 관리채무상환비율	0.105
			1-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0.035
		공기업	1-8. 공기업부채비율	0.067
		0.114	1-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047
		재정운용	2-1. 자체세입비율(증감률)	0.090
	300점	0.156	2-2.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0.066
2. 재정효율성		지출관리	2-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0.045
(6개)		0.084	2-4.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0.039
		<u> 가본</u> 시설	2-5.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0.030
		0.060	2-6.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0.030
			3-1. 지방세징수율제고노력도	0.027
		수입부분	3-2. 지방세체납액축소노력도	0.030
		(구입구군 0.147	3-3. 경상세외수입확충노력도	0.030
3. 재정 운용		0.147	3-4세외수입체납액축소노력도	0.030
노력도	300점		3-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0.030
소 - 소 (10개)	300 🗖		3-6. 인건비절감노력도	0.030
(10/)		지출부문	3-7.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0.030
		0.153	3-8.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027
		0.133	3-9. 행사축제경비절감노력도	0.033
			3-10. 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도	0.033
25개	1300점			

3. 2014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

- 2013 회계연도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악화되었다가 2012년도까지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던 재정건전성이 2013 년 결산에서는 다소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세입 및 세출관리, 자본시설관리 측면의 지표들이 모두 실적이 부진하거나 미흡함. 재 정운용 노력의 경우 자치단체 자체의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으 나 민간과 관련된 지표들이 악화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재정 건전성을 수지, 채무, 공기업 운영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3년 결산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는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실질수지와 경상수지는 악화되는 경향을 보임. 채무관리에서 부채를 줄임에 따라 부채 관련 지표들은 모두 개선되고 있으나, 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관리채무상환비율 지표가 악화되는 것으로나타남. 공기업 운영의 경우 부채비율이 대폭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부(-)의 값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실질수지 및 경상수지의 개선과 함께 공기업 경영의 효율화가 필요함
- 재정 효율성을 자체세입 수준, 세출 관리, 자본시설 운영의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해보면, 먼저 자체세입 실적이 악화되었음. 다음으로 민간이전경비와 공기업회계에 대한 출연출자금이 증가하였으며, 의무지출비율도 높게 나타나 세출 관리 측면에서도 좋지 않음. 자본시설의 운영 역시 시설투자비율은 낮아지고 시설유지관리비비율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재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세입은 줄어들고 있으나 복지비 부담을 포함한 의무지출과 요금현실화가 요원 한 공기업 출연 출자, 민간 지원금이 모두 증가하였음. 자본시설 투자는 줄어 들었으나 기존의 시설유지관리비비율은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효율 적 배분과 재원의 체계적 관리에 모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재정운용 노력 분야는 전년도 결과에 비해 많은 지표에서 개선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세 분야 중에서 가장 긍정적임
 - 세입 확충영역의 지방세징수율제고노력도와 경상세입확충노력도는 개선되었으나 지방세체납액축소노력도와 세외수입체납액축소노력도가 부(-)의 값을 보임으로써 체납액 축소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세출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노력인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와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인건비절감노력도는 정(+)의 수치를 보여 개선되고 있는 반면, 민간 영역과 관련이 있는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와 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도는 과거 5년 평균대비 수치가 악화되었음. 특히 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도는 4년 연속으로 부(-)의 값을 보이고 있어 민간이전경비절감을 위한자치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함

4. 재정분석 개선 사항

- 공공서비스 제공 관련 재정성과 측정을 위한 질적 지표 보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 요인을 발견하도록 지역여건, 산업경제 변화 등 미 래 재정영향 등에 관한 심층 분석 추가
 - 비계량 지표를 활용한 질적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예: 고령화, 복지수요, 고용창출, 비과세·감면 등)
- 자치단체 재정운영에 의한 재정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원인 식별 및 설명 필요
 - 2013년도의 자체세입비율 전국평균은 26.35%로 전년도에 비해 1.60% 포인트 소폭 하락하여 재정자립 수준이 점차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자체세입 감소는 부동산 경기위축 등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취득세 인 하 등 국가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것임
 - · 추후 재정분석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정부의 재정정책과 자치단체 내 재정운영에 의해 야기된 것을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재정운영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수행했는가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들 진단 결과를 통해 건설적인 재정진단이 가능할 것임
- 자치단체의 실태와 관련된 지표 개선
 - 자치단체 중에서는 행사축제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독립법인을 구성하고 그 독립법인에 민간이전경비로 지출하는 단체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실태를 반영 한 지표의 개선이 필요
 - 행사축제와 관련하여 매년이 아니라 2년마다 혹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행사축 제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점수화할 수 있는 방법 개발 필요

Ⅱ. 2주차 TF 개요

○ 현행 재정분석 건전성 지표 검토 및 개선

1. 현행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건전성 지표

분야	분석지표	분석기간	대상회계	지표성격	비고
	1. 통합재정수지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상향지표	국제기준
	2. 실질수지비율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3. 경상수지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복식부기
I 재정 건전성	4. 관리채무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5. 관리채무부담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 4년	통합회계	하향지표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복식부기
	8. 공기업부채비율	단년도	공기업회계 (직영, 공사)	하향지표	공기업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단년도	공기업회계 (직영, 공사)	상향지표	공기업

2. 건전성 지표 개선 요구사항

1) 수지관리 관점 지표

- 실질수지비율의 실질수지액에서 이월금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있는데, 재해 복구를 위해 사용한 금액이나 재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이월 금과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자치단체의 이월금과 국고보조금의 비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참조> 일본의 실질적자비율

의 실질적자액

- 실질적자비율은 당해년도의 세입부족에 의해 지불되어야 할 채무를 미루거나 집행해야 할 사업을 이월한 것이 있으면 이들을 포함한 적자액(실질적자액)을 표준재정규모와 비교해서 나타냄으로서 그 적자의 심각도를 파악하는 것임. 실질적자액에 대해서는 세출삭감이나 세입확보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야 하는데, 그 적자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적자액을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등 재원의 규모와 비교해서 지표화한 실질적자비율을 재정건전성판단지표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음

일반회계등의실질적자액 표준재정규모

• 일반회계 등의 실질적자액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 보통회계에 상당하는 회계

2) 채무관리

- 관리채무비율과 관리채무부담비율은 분모가 세입결산액과 경상일반재원이라 는 것을 제외하고 큰 차이가 없음
- 실제 자치단체의 채무 부담을 알기 위해서는 목적세원인 보조금과 임시세외수 입을 제외한 경상일반재원과 비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3) 지방공기업관리

-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바뀌기 힘든 지표이므로 자치단체 재정분석에 적합하 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자치단체의 보증채무문제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자치단체 담당자가 직영기업과 지방공사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공기업 자료 공개시스템과 일부 차이)

□ TF 논의 결과 종합

- 수지관련 지표 중 실질수지비율지표는 통합재정수지와 중복되므로 평가지표에 서 제외하여 참고지표로 관리하거나, 세입결산액에서 지방채수입을 제외하는 등 수정보완 필요
- 경상수지비율은 복식부기 실시에 따라 정책적으로 도입된 지표이므로 평가지 표에서 제외
- 채무관리지표 중 관리채무비율과 관리채무부담비율이 중복되므로 관리채무비 율을 평가지표에서 제외
- 현금창출대비부채비율은 건전성지표로 바람직하지 않아 평가지표에서 제외

Ⅲ. 3주차 TF 개요

- 현행 재정분석 건전성 지표 검토 및 개선(계속)
- □ TF 논의 결과 종합
- 통합재정수지비율 검토
 - 산정범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서는 제외되고, 세출에서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 융자지출을 줄이면 재정수지비율은 높아지나, 상대적으로 이자수익은 줄어들 어 세밀한 검토 필요
 - 국가통합재정수지와, 국제기준(IMF 등)과의 비교 필요
- 채무관리지표에서 관리채무비율은 존치하고 관리채무부담비율을 제외하는 방 안 제시
- 재정상황 예측을 위한 지표 제시
 - 단년도 이자율의 가중평균 또는 지출된 이자비용을 산정식으로 하여 지방채무 상환비비율(참고지표)을 본 지표에 추가
- O BTO를 부채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Ⅳ. 4주차 TF 개요

○ 현행 재정분석 효율성 지표 검토 및 개선

1. 현행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효율성 지표

분야	분석지표	분석기간	대상회계	지표성격	비고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5년 경향	일반회계	상향지표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2년	통합회계	하향지표	
Ⅱ 재정 효율성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 <u>₽</u> 0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2년	통합회계	하향지표	복식부기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사업예산

2. 효율성 지표 개선 요구사항

전체적으로 효율성 지표는 재정운영노력도 지표와 겹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함

1) 세입관리 효율성 관점 지표

- 자체세입비율을 과연 효율성 지표라고 볼 수 있느냐는 의견이 있음
- 자체세입비율 증감률의 경우에는 과거 4년치 평균대비 현년도 자체세입비율의 증 감을 보는 것으로 효율적인 세입징수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자체세입비율이외에 세입관리의 효율성을 측정할 만한 지표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징수율 증가율, 체납징수율 증가율 등)

2) 세출관리 효율성 관점 지표

- 민간이전경비비율과 관련해서 민간이전경비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비율만 보는 것보다는 한도액을 활용한 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간이전경비비율과 관련해서 사회복지보조(307-10)의 경우, 국도비 매칭으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많음. 이에 따라 순수 시비로 운영하는 사회복지보조금만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의무지출비율과 관련해서 국도비 사업비의 경우 노령연금이 매칭되는 비중이 커서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많음. 이에 따라 노령연금 매칭 비용은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몇 몇 자치단체들이 있음
- 상생발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전출금의 경우 의무지출로서 재정경직성을 불러 온다는 측면에서 세출효율성 측정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의무지출을 하지 않 는 경우 재정경직성이 축소되게 되므로 재정분석에는 유리하게 됨. 의무지출 을 강조하는 국가 정책과 충돌 우려가 있음

3) 자본시설관리 효율성 관점 지표

- 자본시설유지관리비의 경우, 수선유지비는 소모성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도로, 철도 보수비 등은 파악하여 산식에서 제외해 줄 필요가 있음
- 자본시설유지관리비에서 소모성 비용이 아닌 전기요금의 경우, 즉 도로과에서 산출되는 가로등 전기요금 등 필수비용과 공기업특별회계의 상하수도 정화시 설 전기요금의 경우도 파악하여 산식에서 제외해 줄 필요가 있음

□ TF 논의 결과 종합

- 재정분석의 방향성, 지표체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추진
- 재정분석 지표체계는 재정상태에 대한 **재정건전성 지표**와, 재정효율성과 재정 운용노력 지표를 재정립하여 **재정효율성 지표**로 분류
 - 현 지표에 대한 세부 산식 수정 및 지표 이동 검토
 - 정책 순응도, 투명성 등 신규 지표 개발 필요
 - 재정운용을 왜곡할 개연성 있는 지표 개선(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 등)
- O 단순한 평가체계 필요

V. 5주차 TF 개요

○ 현행 재정분석 재정운용노력 지표 검토 및 개선

1. 현행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재정운용노력 지표

분야	분석지표	분석기간	대상회계	지표성격	비고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4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상향지표	
Ⅲ. 재정 운용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
노력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세 연계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2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2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2. 재정유영노력도 지표 개선 요구사항

1) 세입 노력도

- 교부세과 데이터로 특별히 없음

2) 세출 노력도

- 행사 축제경비와 관련하여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 말고 행사축제비 총액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의견이 있었음. 재정규모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비율지표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 실제 금액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세출결산액의 변동으로 인해 행사 축제경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임
- 2년마다 혹은 3년마다 열리는 축제나 행사의 경우에는 +와 -가 반복되므로 점 수 계산시 개선방안이 필요함

- 행사축제를 민간으로 이전하여 운영하다가 제외 축제가 된 경우, 민간이전경 비를 줄여달라는 자치단체가 있었음

□ TF 논의 결과 종합

- 수지관련지표는 현행유지(3개지표)하되 경상수지비율은 산식 개선 필요
 - 통합재정수지비율 산출방식은 국가와 동일하게 적용(순세계잉여금제외)
 - 경상수지비율 산출식 {경상수지비율 = 경상비용/경상수익}을 {경상수지비율 = (경상수익 경상비용)/경상수익} 으로 변경
 - · 경상비용에서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경상수익에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을 제외하여 시뮬레이션 비교 필요
 - 경상비지출비율 등으로 명칭 변경
- 채무관련지표는(4개에서 유사·중복 통합)하여 2개(관리채무부담비율, 현금창출 자산대비 부채비율)로 조정
 - ※ 관리채무비율과 관리채무부담비율 상관관계 0.97, 관리채무부담비율과 관리채무상환 비율 상관관계 0.89, 관리채무비율과 관리채무상환비율 상관관계 0.80
 -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채무, 부채 용어통일 필요
- 공기업관련지표(2개)는 현행유지
- (기타) 평가점수 산정식을 Z-score에서 등급별 부여방식 변경 검토
 - 지방재정확충(상하수도요금 현행화, 주민세 등) 노력도 지표개발
 - 선심성 재정지출,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페널티 부여방안 연구 등

VI. 6주차 TF 개요

O 추가지표 고려

1. 추가 지표

- 1) 평가시 실질채무(가칭)의 산정
 - 지역개발기금은 학술적 개념으로는 부채 혹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이 중에 서 몇 가지는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채무라고 보기 어려움
 - 지역개발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도, 궤도, 자동차 운송, 지방유로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등의 사업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는 지방채로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개인이나 법인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함
 - 시군 등 대외융자채권이나, 자동차 신규등록 혹은 이전등록시 공채의 경우에 는 채권이 확보된 채무이므로 분석 지표 이외의 평가지표는 제외하고 산정할 필요가 있음

※ 2013년말 도 단위 실질채무현황

(단위 : 억원)

			_	구 성		
시도별	총채무	계	일반회계	기 타	기 금	지역개발기금14)
		(실질채무)	할민외계	특별회계	기급	(본청 융자금 원금잔액)
강원	8,611	5,722	2,489		6	3,227
충북	6,105	4,606	413			4,193
충남	8,964	3,557	203	430	13	2,911
전북	7,546	4,606	1,307			3,299
전남	10,683	7,432	2,255		72	5,105
경북	10,201	4,671	500			4,171
경남	11,909	9,737	2,101		11	7,625
대전	6,687	5,784	2,429		16	3,339

¹⁴⁾ 실질적인 지역개발기금 채무는 융자금 회수 잔액(도본청)으로 예산편성운영기준 상 내부거래 나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임

- 2) 지방채무상환 노력도 반영
 -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채무상환 시 가점 부여 검토 (이자절감분을 통해 노력도 평가)
 - 채무가 0인 자치단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3)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절감노력도
 - 2015년도부터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보조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의 엄격화 등을 통해 지방 보조금이 많은 부분 절감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자치단체의 세출예산대비 보조금 절감분을 타단체와 대비하여 평가
- 4) 공사공단 융자금 절감노력도
 - 공사 공단으로 일반회계에서 빌려주는 금액 축소
- 5) 잡손금 절감노력도
 - 결손처리 금액 축소
- □ TF 논의 결과 종합
- 경상수지비율지표에서 경상수익 산식에서 특별교부세 제외
- 의무지출비율지표는 지자체에서 통제할 수 없어 참조지표에서 관리
- 민간이전경비비율 지표와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도 지표에서 사회복지보조 (307-10) 산식 제외
- O "정책이행도" 지표
 - 상생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전출금 적립 이행도 평가
- "채무상환노력도" 지표
 - 연도별 상환계획에 대한 상환실적 비율 평가(산정공식 연구)
- "실질채무" 지표
 - 관리채무비율과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지표에서 채권이 확보된 채무인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하여 시뮬레이션 확인

Ⅷ. 7주차 TF 개요

○ 추가지표 및 개선사항 고려(계속)

1. 추가 지표

1) 재정분석 편람 중심으로 2014년도 분석지표 세부 검토(계속)

자체세입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사회복지보조(307-10) 제외)/ 출연출자금비율/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자본시설지출비율/ 노력도 지표들/ 부채증가액/ 세입 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2) 건전성과 효율성에 포함되는 지표를 어떻게 가름할 것인가

3) 감점 지표

- (1) 지출해야 하는 부분을 제대로 지출하였는가? 주법/ 정책이행도 고려(재난관리기금전출금/ 상생발전기금)
- (2) 위탁금으로 예산 편성하고 보조금으로 집행 처리 실현가능성 고려
- (3) 청사 에너지 관리 에너지 관리공단의 청사에너지 등급 현황 이용

4) 가점 지표

- (1) 자체사업 보조금 절감
 - 자치단체의 세출예산대비 보조금 절감분을 타단체와 대비하여 평가
- (2) 잡손금 절감
 - 결손처리 금액 축소
- (3)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축소
- (4) 자치단체 투명성 평가

- 기존에 정성평가로 수행한 적이 있으나 폐지되었으며, 정부 3.0과 관련하여 현재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
- 5) 실질채무비율의 적용 여부
- 6) 예산에 의한 경상비용절감비율 예산에 명기된 경상비용절감액/ 경상일반재원으로 평가 가능. 예산에 모든 자치 단체가 명기하는가? 추경은?
- □ TF 논의 결과 종합
- 채무관리에 실질채무비율(가칭) 지표 추가 검토
 - 산정식 : 관리채무액 확보채권액(시군등 대외융자채권)
 - * 지자체 채무현황을 중앙정부의 적자성채무(자산매각이나 융자금회수 등으로 상환)와 금융성채무(세금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로 구분 추가 검토 필요
- 기존 노력도부문 지표들은 비율지표(70%)와 증감률(30%)지표로 구분하여 계산 하고, 효율성 부문으로 통합하여 분류하기로 함
- 민가이전경비 절감노력도 지표는 삭제(민간이전경비비율 지표이용)
- O "준법성" 지표 개발
 - 상생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등 법 준수 사항 평가
- 페널티 지표 개발(샘플검사 방법 : 위탁금 편성 후 보조금 집행)
- 정성지표 개발 필요(재정정보공개, 투명성, 정책이행도 등)

Ⅷ. 8주차 TF 개요

○ 자치단체 의견조회 결과 및 재정분석 지표 개선안 종합 검토

1. 논의 및 결정사항

- 자치단체 의견 청취 연구원 검토안의 재검토
- 2015년도 지방재정분석 지표 가중치 선정(안)
- 2015년도 지방재정분석 지표 가중치 검토 및 조정
- 부가정책유도지표 명칭 및 배점 검토

□ TF 논의 결과 종합

- 재정분석 체계는 건전성과 효율성으로 개편하고, 점수산정 비율을 건전성(500)
 - : 효율성(500)으로 종합점수 1,000점으로 정함
 - 총 20개 지표로 개편 : 건전성(7개, 광역은 8개), 효율성(13개)

201	4년	2015	년(안)				
구 분	배 점	구 분	배 점				
건전성	700	건전성	500				
효율성	300	중 이 내	500				
재정운용노력	300	효율성	500				

- 민간이전경비비율지표는 실질적으로 민간으로 이전되는 경비(대행사업비 : 402-02 등)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여 추진
- 페널티 및 인센티브 관련 신규지표는 "정책유도지표"로 관리
 - 배점은 실행결과(예/아니오)에 따른 이분적 점수 부여

부록 2

AHP 평가를 위한 설문

AHP 1

ID		
----	--	--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분야별 가중치 설정을 위한 의견조사

1. 재정건전성 세부지표의 우선순위

1. 2015년 재정분석의 재정건전성 항목은 7개로 구성됩니다. 이 7가지 지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해당 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실질수지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를 1순위로 "1"이라고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항목	우선순위
통합재정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실질채무비율)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 항목이 7개이므로 순위는 1순위에서 7순위까지 가능합니다.

Ⅱ. 재정건전성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2. 1번 응답을 기초로 각 항목을 두 개씩 짝을 지어 비교하는 경우, 두 가지 지표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중요한 지 그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실질수지비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중 간의 1을 중심으로 본인이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통합재정수지비율 쪽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온		평 ⁷ 평가					쪽		오			평가 항목				쪽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 요		약 간 중 요		동등	(2)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통합재정수지비율	(9)	(0)	(/)	(0)	(3)	(4)	(3)	(2)	(1)	(2)	(3)	(4)	(3)	(0)	(/)	<u>(0)</u>	(9)	월의사수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실질 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비율																		환금자산대비부채 비율
통합재정수지비율																		공기업부채비율
통합재정수지비율																		총자본대비영업 이익률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실질 채무비율)
실질수지비율																		환금자산대비부채 비율
실질수지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실질수지비율																		총자본대비영업 이익률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실질 채무비율)
경상수지비율																		환금자산대비부채 비율
경상수지비율																		공기업부채비율
경상수지비율																		총자본대비영업 이익률

	왼쪽 평가항목이 오른쪽 평가항목에 비해										른-		평가 항목				쪽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7)		중 요		약간중요		동 (1)	(2)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7)		절대중요 (0)	평가항목
관리채무비율		(0)	(/)	(0)	(3)	(1)	(3)	(2)	(1)	(2)	(3)	(<u>-)</u>	(3)	(0)	(/)	(0)	(2)	실질채무비율
관리채무비율 (실질채무비율)																		환금자산대비부채 비율
관리채무비율 (실질채무비율)																		공기업부채비율
관리채무비율 (실질채무비율)																		총자본대비영업 이익률
환금자산대비부채 비율																		공기업부채비율
환금자산대비부채 비율																		총자본대비영업 이익률
공기업부채비율																		총자본대비영업 이익률

[주] 2, 4, 6, 8은 근접해 있는 두 개 척도들 사이의 중간정도의 중요도를 나타냄.

III. 재정효율성 세부지표의 우선순위

3. 2015년 재정분석의 재정효율성 항목은 크게 2개로 구성됩니다.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중요한 지 그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른 해		\$	<u>른</u>	옥 ^I 당가	평가 항목	항- <u>5</u> -에	무이 비	왼 [.] 해	쪽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동등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9)((8)	(7)(6	(5)	(4)	(3)	(2)	(1)	(2)	(3)	(4)	(5)	(6)	(7)	(8)	(9)	
세입효율성																	세출효율성

4. 세입효율성은 다시 6가지 지표로 구성됩니다. 이 6가지 지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해당 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이 재정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를 1순위로 "1"이라고 표시 해주시면 됩니다.

 항목	우선순위
~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감률)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액비율(증감률)	
탄력세율적용노력도	

* 항목이 6개이므로 순위는 1순위에서 6순위까지 가능합니다.

Ⅳ. 세입효율성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5. 4번 응답을 기초로 각 항목을 두 개씩 짝을 지어 비교하는 경우, 두 가지 지표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중요한 지 그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자체세입비율이 지방세징수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중간의 1을 중심으로 본인이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자체세입비율 쪽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왼쪽	평 평가	가항 항목	목이 에	오. 비하	른쪽 	-			오른	쪽 : 평가	평가 항목	항목 -에	-이 된 비해	인쪽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동등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월비에서저																		지방세징수율
월비에서저지																		지방세체납액비율
원비에서자																		경상세외수입비율
원비의제저지							_											세외수입체납액비율

		왼쪽	· 평 평가	가항 항목	목o [에	오 비하	른쪽 	-		,	오른	쪽 [:] 명가	평가 항목	항목 -에	-이 비히	왼쪽 	-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동등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월비에서자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체납액비율
지방세징수율																		경상세외수입비율
지방세징수율																		세외수입체납액비율
지방세징수율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지방세체납액1율																		경상세외수입비율
원바일제사이지																		세외수입체납액비율
울바에서생지																		탄력세율적용노력도
경상세외수입비율																		세외수입체납액비율
경상세외수입비율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세외수입체납액비율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주] 2, 4, 6, 8은 근접해 있는 두 개 척도들 사이의 중간정도의 중요도를 나타냄.

V. 세출효율성 분야의 우선순위

6. 2015년 재정분석의 세출효율성 분야 항목은 7개로 구성됩니다. 이 7가지 지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해당 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민간이전경비비율이 재정운용노력을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를 1순위로 "1" 이라고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항목	우선 순 위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증감률)	
인건비 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 항목이 7개이므로 순위는 1순위에서 7순위까지 가능합니다.

VI. 세출효율성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

7. 6번 응답을 기초로 각 항목을 두 개씩 짝을 지어 비교하는 경우, 두 가지 지표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중요한 지 그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민간이전경비비율이 출연출자금비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중간의 1을 중심으로 본인이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민간이전경비비율 쪽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왼쪽 평가항목이 오른쪽 평가항목에 비해										른2	쪽 <u>-</u> 당가	평가 항목	항- <u>5</u> -에	음이 비전	왼 ⁴ 해	쪽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ド이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9)	(8)	(7)((6)	(5)	(4)	(3)	(2)	(1)	(2)	(3)	(4)	(5)	(6)	(7)	(8)	(9)	
민간이전경비비율																		출연출자금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자본시설유지관리 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인건비 절감노력도
민간이전경비비율				_	_						_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민간이전경비비율											_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왼]쪽 평	평7 평가	가항 항목	목o -에) 오 비さ	그른 ³ 해	<u>쪽</u>		오	른 등	주 되	평가 항목	항-5 -에	무이 비	왼 ³ 해	쪽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동등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민간이전경비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
출연출자금비율																		자본시설유지관리 비율
출연출자금비율																		인건비 절감노력도
출연출자금비율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출연출자금비율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출연출자금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
자본시설유지관리 비율																		인건비 절감노력도
자본시설유지관리 비율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자본시설유지관리 비율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자본시설유지관리 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
인건비 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인건비 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인건비 절감노력도																		행시축제경비비율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

[주] 2, 4, 6, 8은 근접해 있는 두 개 척도들 사이의 중간정도의 중요도를 나타냄.

☺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3

2015년도 지방재정분석지표

Ⅰ. 2015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분야	분석지표	분석기간	대상회계	지표성격	비고
	1. 통합재정수지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상향지표	국제기준
	2. 실질수지비율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3. 경상수지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복식부기
I 재정	4. 관리채무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건전성	4-1. 실질채무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광역단체
	5.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복식부기
	6. 공기업부채비율	단년도	공기업회계 (직영, 공사)	하향지표	공기업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단년도	공기업회계 (직영, 공사)	상향지표	공기업
	8.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5년경향	일반회계	상향지표	
	9. 지방세징수율(제고율)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10.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11.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12. 세외수입체납액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Ⅱ 재정 효율성	14.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15.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2년	통합회계	하향지표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2년	통합회계	하향지표	복식부기
	17. 인건비 절감 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18.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19.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20.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Ш.	1.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단년도	일반회계	페널티지표	
ш. 정책유도	2. 상생발전기금 확보	단년도	일반회계	페널티지표	페널티
07114	3. 위탁금 편성 후 보조금 집행	단년도	일반회계	페널티지표	

주 : 통합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참고지표 : 20개

①지방채무잔액지수, ②지방채무상환비비율, ③장래세대부담비율, ④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⑤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⑥예산집행률, ⑦정책사업투자비비율, ⑧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⑨유동비율, ⑩고정순자산비율(증감률), ⑪경상재원비율 ⑫ 총예산대비 자체수입증가율 ⑬ 지방세수입 대비 인건비비율 ⑭ 부채증가액(증감률) ⑮ 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⑯ 관리채무부담비율 ⑰관리채무상환비율 ⑱의무지출비율 ⑲자본시설지출비율 ⑳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도

Ⅱ. 지표정의서

□ 재정분석 지표

건전성

- 1. 통합재정수지비율
- 2. 실질수지비율
- 3. 경상수지비율
- 4. 관리채무비율
- 4-1. 실질채무비율
- 5. 화금자산대비 부채비율
- 6. 공기업부채비율
-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효율성

- 1.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 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 3.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감률)
- 4.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 5. 세외수입체납액비율(증감률)
- 6.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7.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 8.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 9.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 10. 인건비 절감 노력도
- 11.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12.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13.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정책유도

- 1.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 2. 상생발전기금 확보
- 3. 위탁금 편성 후 보조금 집행

1. 통합재정수지비율

지표유형		건전성	성	Ţ	표나	용			재정:	수지
개요(정의)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 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재정의 성과 및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산정공식	※ 정부 (경상수입	통합재정수지비율 =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정부(행정자치부) 통합재정수지 기준에 의함 (경상수입+이전수입+자본수입)-(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회수-융자 지출)/ 통합재정규모								
측정시점(기간)	2014회	계연도	결산		다료신 기부통		e-	호조.	시스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정책유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지표값이 높을수록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기	계(일반	회계, 기E	나특별호	회계,	공기	업투	특별호	l계, 기	금회계)
	통합재	정수지난	비율							(단위 : 원)
제출서식	회계구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	세입액 (A)	세입액+순 세계잉여 금(D)	지출 소계 (B=a+ b)	및 순위 (B) 지출 액 (a)		통합 재정 규모(C)	순세 계잉 여금 (d)	통합재 정수지 비율 (A-B)/ C×100	순세계잉여금 포함 통합재정수지 비율 (D-B)/C×10 0
	회계 공기업특 별회계 기금	대정규드	고 = 지출	및 순	융자					

2. 실질수지비율

지표분류	건	전성	ЛI	E내용		재정=	누지		
개요(정의)	자치단체의 측정	자치단체의 재정적자 여부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수지균형성을 측정							
해석 및 특징		재정 안정성 게 근접할수					물이 사회적		
산정공식	 ※ 실질수지액 ★ 이월금 : ※ 일반재원 : ⇒ 지방세(지 ⇒ 세외수입 ⇒ 지방교부 	실질수지비율 = 실질수지액 일반재원결산액 × 100(%) ※ 실질수지액: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이월금 - 보조금집행잔액 * 이월금: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 일반재원: 결산서상 세입 결산부문의 실제수납액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모두 포함 →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분권, 부동산교부세를 모두 포함 * 재정자주도 작성 시 분자에 해당하는 일반재원과 동일한 범위를 포괄							
측정시점(기간)	2014 회계인	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_	호조시스 입세출결(_			
지표특징		미시적 지표 [관심지표, 경		1표, 天	l 기단체 기	자기학습	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	듩은 것이 바	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	기타특별회계	I						
제출서식	실질수지비율								

3. 경상수지비율

지표유형	건전 [.]	건전성			재정	경수지		
개요(정의)	복식부기 재정	운영보고서의	J 경상수익	대비 경성	아비용	의 비율		
해석 및 특징								
산정공식	* 경상비용 : 인건* 경상수익 : 지수익	경상비용 경상수지비율 = × 100(%) 경상수익 ※ 경상비용: 인건비+운영비+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수익+재정보전금 수익 - 지방교부세는 보통·분권·부동산 교부세만 합산(특별교부세 제외)						
측정시점(기간)	2014 회계연도	결사 I '	·료산출 부통계)	e-호조/ 복식부기		•		
지표특징	거시/미시 : 가 특성 : 일반지.		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	회계, 기타특	별회계, 공기	기업특별효	5月,	기금회기	뷔)	
	경상수지비율					(단위	리 : 원)	
	경상비:	용(A)	711	경상수익(B	<u> </u>			
	계 (①+②+③+ 실+⑤) 인건비 ①	운영 조정 비 교부금 ② (③광역)	(6+7+8+9 +10-11)	지방세수익 (⑥)	경상 세외 수익 (⑦)	지방 교부세 수익 (®)	지표값	
	일반회계		일반회계				(A/B)	
	기타특별		기타특별				×100	
제출서식	공기업특별		공기업특별 기금회계					
세출시국	기금회계 내부거래		기금회계 내부거래					
	특별 교부 수익(세 보전금	교육비특별회 계 전출금 (⑤광역)	조정 교부금수익 (⑨기초)		L		
	일반회계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공기업특별 기금회계							
	내부거래							

4. 관리채무비율

지표유형		건전성	3	지3	포내용		채무	관리	
개요(정의)	세입결신	대비 지	방채무 현재역	백의 비율	율을 측정	정하는	저량(sto	ock) 지표	
해석및특징		'의 상대 ² 전한 것을	적 수준을 측정 을 의미	성하는 ㅈ	표로 그	[비율() 낮을수	-록 재무구	
	관리채목	위비율 =	지방채무잔의 세	백(BTL 기 입결산의		군함) 	× 100(%)	
	※ 지방채무	잔액은 201	5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데 산정시	적용하	는 지방채역	무잔액 적용	
산정공식	⇒ 자치당 하는	채 증권+차 단체의 일반 = 금액은	입금+채무부담형 ŀ·특별회계·기금 제외 원금기준으로	이 그 자					
	⇒ 준공	 ** BTL 지급액 ⇒ 준공 후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 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 							
측정시점(기간)	2014회	계연도 길	멸산		산출 통계)	-	호조 시스 교결산보		
지표특징	, .,		l적 지표 , 주민관심지	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0	낮은 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기	॥(일반회	계, 기타특별	회계, 등	공기업특	특별회기	계, 기금	회계)	
	관리채두	리						/ELOL . 81\	
			2014 지방치	내무 자의	υH(A)			(단위 : 원)	
제출서식	구 분	지반채즐궈 차				BTL 지급 액 @	2014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 (A/B)×100	
세르시크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공 기 업특별회계기 금								

4-1. 실질채무비율

지표유형		건전성		지표	표내용		채무관	년리	
개요(정의)	치단체 융 경우, 세일 (stock) 지	광역자치단체 관리채무에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중 기초자 치단체 융자금 부분을 제외하고 본청에서 사용하는 융자금만을 포함하는 경우, 세입결산 대비 실질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저량 (stock) 지표							
해석및특징		채무의 상[가 건전한	것을 의미					낮을수록	
	광역실질차	무비율 = -	관리채 ⁹ 	P-기초: 세입결		∥ 융자금 	= ×	100(%)	
산정공식	황 ※ 지방채무 ⇒ 지방치 ⇒ 자치ር 하는 ⇒ 지방치 ※ BTL 지급 ⇒ 준공혹	 ※ 지방채무 잔액 ⇒ 지방채 증권+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 지급액 ⇒ 자치단체의 일반·특별회계·기금이 그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상환하는 금액은 제외 ⇒ 지방채무 잔액은 원금기준으로 작성 ※ BTL 지급액 ⇒ 준공후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 							
측정시점(기간)		^{1업자에게 지} 11연도 결산		자료	산출	e-호	조 시스	_	
지표특징	거시/미/	" 시 : 거시적 일반지표, 7	지표		통계)	재무	결산보고	<u> </u>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0	낮은 것0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겨	l(일반회계,	기타특별:	회계, 공	공기업특	별회계	, 기금호	계)	
	실질채두	비율					(단위 : 원)	
		77141	2014 지방치	ዘ무 잔액((A)		2014	지표값	
제출서식	구 분 계(A = (a)+(b)+ (c)+(d)-(e) (a) (a) (b) (c) (a) (b) (c) (a) (b) (c) (c) (d) (d) (d) (d) (d) (d) (d) (d) (d) (d						세입 결산액 (B)	(%) (A/B)×100	
MEMI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			
	특별회계					-			
	공 기 업 특별회계								
	기금					-			

5.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지표유형		건전	성		Ţ	I표내	용		부	채괸	리
개요(정의)		현금화하기 용이한 자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로 채무부담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및특징		환금자산 대비 총부채의 비율을 측정하는 재정 건전성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환금자산	대비 누	캠베윌	<u>=</u>		부채· 환금			×	100(%	%)
산정공식	* 일반미수 ※ 부채총계 ※ 유동자산: ※ 기타유동자 ※ 일반미수금: ※ 장기금융상: ※ 유동부채: 1 ※ 장기차입부.	※ 환금자산: (유동자산 - 기타유동자산 + 일반미수금*) + 장기금융상품 + (장기대 여금* - 학자금위탁대여금) + 기타 투자자산 * 일반미수금 및 장기대여금은 해당 대손충당금을 차강한 순액 ※ 부채총계: 복식부기 재정상태보고서 상의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기타비유동부채 ※ 유동자산: 고정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1년 이내에 환금할 수 있는 자산 또는 전매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현금, 예금 등) ※ 기타유동자산: 선급금과 선급비용 ※ 일반미수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을 제외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확정 채권 ※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단기 금융상품, 당기대여금을 제외한 부분 ※ 유동부채: 1년 이내 갚아야 하는 부채 ※ 장기차입부채: 기한이 1년 이상인 차입부채 ※ 기타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서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격의 부채를 모두 통합한 금액으로 장기네소금, 장기선수수의 등									
측정시점(기간)	2014회겨	연도 길	별산			료산출 부통계		e-호: 복식!			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특성 : 일				1표		·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	것이 ヒ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	(일반회	계, フ	I타특별	불회계, 급	공기업	ļ특별	회계,	기금	회계)	
			부채	총액(A)			환·	금자산	` '		지표값
	구분	계 (A= a+b+c)	유동 부채 (a)	장기 차입 부채 (b)	기타 비유동 부채 (c)	用 (B= d+e+ f+g)	유동 자산 (d)	장기 금융 상품 (e)	장기 대여 금 (f)	기타 투자 자산 (g)	(A/B)× 100
	합 계										
제출서식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u> 내</u> 구기대(△)										

6. 공기업부채비율

지표유형	건전성	5	지표니	내용	공기업				
개요(정의)	-	지방공기업(직영기업, 지방공사)에 대해 자기자본에 대한 부 채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공기업의 부채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및특징		자기자본 대비 부채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재정 건전성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공기업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 공기업부채비율 = × 100(%) 자기자본							
	* 공기업 재정상E * 공기업은 직영기	배표 상의 자본, 업과 지방공사	부채 포함						
측정시점(기간)	2014회계연도	71 AF I 1	료산출 부통계)		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기업 재무제표				
지표특징	,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공기업부채비율				(단위: 원)				
	구분	부채총액(A)	자기	자본(B)	지표값 (A/B)×100				
제출서식	합 계								
	지방직영기업	려 입	Ę	입력					
	지방공사	지방공사 입력 입력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연락처 생활자건조 내용이 내용 (4)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직영기업 재정상태표의 자기자본, 부채총액 확인 작성자								
	▶ 지방공사 재정상태표			(작성부/	서)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지표유형	근	선전성		지표내용	<u>₹</u>	₹	당기업		
개요(정의)	의 비율을 니	지방공기업(직영기업, 지방공사)에 대해 총자본에 대한 영업이익 의 비율을 나타내며 공기업 영업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및특징		총자본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을 측정하는 수익성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하고 재정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총자본대년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총자본 × 100(%)							
2007	│ * 총자본:	* 영업이익 : 지방공기업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이익 * 총자본 :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상의 총자본(자본+부채) *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포함							
측정시점(기간)	2014회계	연도 결신					정보공개시스템 재무제표		
지표특징	,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0	바람직						
대상회계	지방직영기	기업, 지빙	:공사						
	총자본대비	미 영업이	익률				(단위: 원)		
				총자본(B)					
제출서식	구분	영업이익 (A)	소계 (a+b)	자기자본(a)	부차	H(b)	지표값 (A/B)×100		
	합 계								
	지방직영기업	지방직영기업 입력 입력 입력							
	지방공사	지방공사 입력 입력 입력 입력							
	2014회계연도 2			=익계산서	연락처	1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직영기업, 공사의 재정상태표의 자기자본, 부채 확인 							
20,41	작영기업, 공/작영기업, 공/			구세 확인 (2	작성부.				

1.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개요(정의)	자체세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의 안정적 성	 장상태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 (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	정도를 파악힘	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산정공식	1-1 자체세입비율(%) =						
측정시점 (기간)	2010-2014회계연도 결산 (5년간 비교)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방세시스템(위텍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e-호조 시스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 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1-1 자체세입비율

(단위 : 원)

제출 서식

		자체/	자체세입액(A) (실제수납액)							
			지방세(100)		세외수입 (200)	세입 결산	지표값		
연도	계 (A=d+e)	지방세 총액 (110) (a)	지난년 도수입 (113) (b)	지방교 육세 (112-0 2) (c)	반영액 d=(a- b-c)	경상적세외 수입 (210) (e)	액 (B)	(A/B) ×100		
2014										
2013										
2012										
2011										
2010										

1-2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제출 서식

		(단위 : 원)
현년도 자체세입비율(A)	전년도 자체세입비율(B)	지표값(%) {(A-B)/B}× 100

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Silicate Silicat	개요(정의)	지방세의 징수실적과 징수노력을 측정하는 비율 지표							
2-1. 지방세징수율 (%)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과년도분 및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실적은 제외 * 주행분 : 자동차세 중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2.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 2014년도 지방세징수율 / 2013년도 지방세징수율 (단, 2년 연속 지방세징수율이 98%를 넘는 경우, 제고율 1이 넘는 자치단체들의 평균점을 부여함) 측정시점(기간) 지표특징 2013~2014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외부통계) 지방세시스템(위텍스) e-호조시스템 기사/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연계지표 목표・기준치(바람직한 상태) 대상회계 일반회계 2-1. 지방세징수율 2014년 지방세징수율 (단위 : 원) 2014년 지방세징수율 (대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체(주행분,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함 전 과년도 제상 제상 교원 전공정액) (b) 제출서식 제출서식 제출시식 제출시식		지방세 징수율의 연도간(또는 중·장기 추세)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 과년도분 및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실적은 제외 * 주행분 : 자동차세 중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2.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 2014년도 지방세징수율 / 2013년도 지방세징수율 (단, 2년 연속 지방세징수율이 98%를 넘는 경우, 제고율 1이 넘는 자치단체들의 평균점을 부여함) 측정시점 (기간) 2013~2014회계연도 결산 (외부통계) 지표특징 국제 : 보통교부세 연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대상회계 2-1. 지방세징수율 2014년 지방세징수율 (단위 : 원) 2014년 지방세징수율 (단위 : 원) 2014년 지방세징수율 (단위 : 원) (단위 : 원) 지청서식 제 (주행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주행분), 지방소비세 (주지방소 설계수 과년도 세 (주지방소 설계수 대변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주제방소 설계수 대변도분 (주제방소 설계수 대변도분), 지방소 설계분 (주제방소 설계수 대변도분), 지방소비세 (주제방소 설계수 대변도분), 지방소비세 (주제방소 설계수 대변도분), 지방소비세 (주제방소 설계수 대변도분 (주행분), 지방소비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주제방소 설계수 대변도분 (주행분), 지방소비세 (주제방소 설계수 대변도분 (주행분), 지방소비세	특징								
* 주행분 : 자동차세 중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2.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 2014년도 지방세징수율 / 2013년도 지방세징수율 (단, 2년 연속 지방세징수율이 98%를 넘는 경우, 제고율 1이 넘는 자치단체들의 평균점을 부여함) 축정시점 (기간) 지표특징 국생시점(기간) 지표특징 국내/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연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대상회계 2-1. 지방세징수율 (단위 : 원) 2014년 지방세징수율 (단위 : 원) 지표성시식 제(주행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고변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징수결정액) (由) 지현도 (대원도 (대원도 (대원도 (대원도 (대원도 (대원도 (대원도 (대원									
### 2-2. 지당제정수을 제고을 ### 2013년도 지방세징수을 (단, 2년 연속 지방세징수율이 98%를 넘는 경우, 제고율 1이 넘는 자치단체들의 평균점을 부여함) ***********************************		TOE MOAN O NON TOWN SIL NOAM							
(단, 2년 연속 지방세징수율이 98%를 넘는 경우, 제고율 1이 넘는 자치단체들의 평균점을 부여함) 축정시점 (기간) 2013~2014회계연도 결산 (외부통계) 지표특징 지비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연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대상회계 2-1. 지방세징수율 (단위 : 원) 2014년 지방세징수율 (단위 : 원) 2014년 지방세징수율 (단위 : 원) 지불서식 제 (주행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구행분), 지방소비세 징수결정액 (b) 지청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구행분), 지방소비세 징수결정액) (b)	산정공식	2-2.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지하는제들의 평균점을 부여함)		= 2014년도 지방세징수율 / 2013년도 지방세징수율							
***		(단, 2년 연속 지방세징수율이 98%를 넘는 경우, 제고율 1이 넘는							
(기간) 2013~2014회계연도 결산 (외부통계) e-호조시스템 지표특징									
지표특징		1 2013~201751 1194 234 1 1							
지표특징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대상회계 일반회계 2-1. 지방세징수율 (단위: 원) 2014년 지방세징수율 (단위: 원) 2014년 지방세징수율 (단위: 원) 지를(A=(a/b) × 100 지를(A=(a/b)	(기간)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상태) 대상회계 일반회계 2-1. 지방세징수율 (단위:원) 2014년 지방세징수율 (단위:원) (단위:원) (전위:원) 지청서식 지청서식 지청시의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징수율 (지방선명구(지방세징수율 (지방선명구(지방세징수율 (지방선명구) 지방소원에 (지방선명구) (지방소원에 (지방선명구) (지방전명구) (지방전명구) (지방선명구) (지방전명구) (지방선명구) (지방전명구) (지방전명구) (지방전명구) (지방전명구) (지방	지표특징								
(바람직한 상태) 대상회계 일반회계 2-1. 지방세징수율 (단위: 원) 2014년 지방세징수율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지불서식 제A=(a/b)	모표. 기조취	득성 : 모동교무세 연계시표							
상태) 대상회계 일반회계 2-1. 지방세징수율 (단위: 원) 2014년 지방세징수율 (단위: 원) All A=(a/b)		 							
대상회계 일반회계 2-1. 지방세징수율 (단위: 원) 2014년 지방세징수율 (단위: 원)	•	지표없이 표는 것이 마음ㅋ 							
2-1. 지방세징수율 2014년 지방세징수율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a) 소계(a) 소계(a) 실제수 과년도 세(주지방소 소계(b) (한) 자동차 세(주지방소 소계(b) (한) 사용하는 기자방소 비세		일반회계							
지출서식 지하는 지방에 전수율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A) (A) (A) (A) (A) (A) (A) (A) (B) (B) (B) (B) (A) (A) (B) (B) (B) (B) (B) (B) (C) (B) (C) (D) (D) (D) (D) (D) (D) (D) (D) (D) (D		2-1. 지방세징수율							
제출서식 A=(a/b)		(단위 : 원)							
제출서식 (과년도분, 자동차세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구행분), 지방소비세 징수결정액) (a) 지출서식 조계(a) 실제수 과년도 세 (주 지방소 소계(b) 실제수 과년도 세 (주 지방소 비세 (주 지방		2014년 지방세징수율							
제출서식 (주행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주행분), 지방소비세 징수결정액) (b) (b) 자동차 소계(a) 실제수 과년도 세 (주 지방소 비세 조계(b) 실제수 과년도 세 (주 지방소 비세 조계(b) 납액 행분) 비세									
제출서식 소계(a) 실제수 과년도 세 (주지방소 남액 행분) 비세 소계(b) 실제수 과년도 세 (주지방소 남액 행분) 비세		A=(a/b) (주행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주행분) 지방소비세 장수격정액)							
소계(a) 실제수 과년도 세 (주 지방소 반액 분 행분) 비세 소계(b) 실제수 과년도 세 (주 지방소 반액 분 행분) 비세		(a) (b)							
	제출서식	지 기 시 기 시 기 시 기 시 기 시 기 시 기 시 기 시 기 시 기							
입력 입력		소계(a) 날씨 부 파인도 세 (두 시 8 또 소계(b) 날씨 두 배인도 세 (두 시 8 또 남액 분 행분) 비세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입력							

2-2.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단위:원) 2014년 지방세징수율 2013년 지방세징수율 실제수납액-징수결정액-실제수납액-징수결정액-(과년도분. (과년도분. (과년도분. (과년도분. 지표값 계 계 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세 A/B A=(a/b)B=(c/d)(주행분). (주행분), (주행분). (주행분). × 100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 100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징수결정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실제수납액) (a) (b) (c) (d) 제출 서식 자 자 자 자 동 동 동 동 차 차 차 차 과 년 세 세 과 세 세 과 과 방 소 제 소 계 수 비 (d)납 방 소 제 소 계 수 비 (b)납 소 제 계 수 (c) 납 소제 방 편 (도 도 분 (주 행 년 ((년 계 수 (a) 납 내비 · 주 행 도분 · 주 행 내반 Ы Ш 세 액 앤 세 액 세 세 분 분 분 분) 입 력 입 입 입 력 력 력

3.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가율)

### ### #############################									
제납액 비율이 낮을수록 증가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3.1 지방세 체납액 비율 = 2014년 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2014년도 세입결산액 ※ 2014년 채납누계액 : 2014년 미수납액* - 2014년 자동차세 (주행분) 미수납액 ※ 자동차세(주행분) 체납액은 산정에서 제외 3.2 지방세 체납액 증가율 = 2014년도 체납누계액 - 2013년도 체납누계액	개요(정의)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실적과 관리노력을 측정하는 비율 지표							
# 2014년 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2014년도 세입결산액 # 2014년 체납누계액 : 2014년 미수납액* - 2014년 자동차세 (주행분) 미수납액 # 자동차세(주행분) 체납액은 산정에서 제외 3.2 지방세 체납액 증가율 =		체납액 비율이 낮을수록 증가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기간) 2013~2014회계연도 결산 (외부통계) e-호조시스템 지표특징 거시/미시: 거시적 지표 특성: 보통교부세 연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산정공식	2014년 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2014년도 세입결산액 ※ 2014년 체납누계액 : 2014년 미수납액* - 2014년 자동차세 (주행분) 미수납액 ※ 자동차세(주행분) 체납액은 산정에서 제외 3.2 지방세 체납액 증가율 =							
지표특성 특성 : 보통교부세 연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상태)		'2013~2011/5							
(바람직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상태)	지표특징								
대상회계 일반회계	(바람직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3-1. 지방세 체납액 비율 (단위 : 원) 2014년도 말 현재 체납누계액 제 세입 지표값 출 자동차세(주행분) 체납 결산액 (A/B) 체납 H 반영액 누계액 누계액 (B) ×100 식 (A=a-b)(a) (b) 입력

	3-2.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									
		년도 말 납누계		2013년	2013년도 말 현재 체납누계액					
제 출 서 식	반영액 (A=a-b)	체납 누계액 (a)	자동차세(주행분) 체납 누계액 (b)	반영액 (B=c-d -e)	체납 누계액 (c)	결손 처분액 (d)	자동차 세(주행 분) 체납 누계액 (e)	지표값 (%) {(A-B) /B}× 100		
			입력				입력			
	V									

4.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개요(정의)	자치단체의 경상세외수입의	증대노력을	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					
해석 및 특징	경상세외수입 확충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경상세외 수입비율과 증감률의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산정공식	4.1. 경상세외수입비율 = 2014년도 기준 3년 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2014년도 세입결산액 4.2.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 2014년도 기준 3년 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2013년도 기준 3년 평균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2013년도 기준 3년 평균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2013년도 기준 3년 평균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경상적세외수입(210) - 이자수입(216)을 제외하여 작성							
측정시점 (기간)	2011~2014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연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4-1	. 경상	세외수입	비율							(5	<u> </u> 한위 : 원)
제 출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A) (A/B) (B) ×100									(A/B)	
서식	평균		2012		2	2013	}	4	2014	1		
	(A)	소계	경상세외 수입(a)	이자수입 (b)								
											·	

	4-	4-2.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제 출	전전년도 기준 지표값(%							(단위 : 원 지표값(%) {(A-B)/B] ×100										
서	ᇳ		2012		2	013	3 2	2014	4	평	20	11	20	12	201	3		
식	평균	소계	경상세외 수입(a)	이자수 입(b)						균								

5. 세외수입체납액 비율(증가율)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세외수입 체납액의 연도별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해석 및 특징	지표로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5.1 세외수입 체납액 비율 =							
	2014년 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2014년도 세입결산액							
	※ 세외수입 = 경상세외수입 + <u>임시세외수입</u>							
	5.2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율 = 2014년도 말 체납누계액 - 2013년도 말 체납누계액 × 100(%)							
산정공식	2013년도 말 체납누계액							
	※ 세외수입 = 경상세외수입 + 임시세외수입							
	※ 미수납액(결손처분 + 다음연도 이월액) 기준으로 작성							
	(단, 2013년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제외)							
	※ 세외수입체납액 계산은 2014년도 세외수입예산과목 변경을							
	고려하여 2014년도 기준으로 일치시켜 2013년도 체납액을							
	<u>재계산함</u>							
측정시점(기간)	자료산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2013~2014회계연도 결산							
	(외부통계) e-호조시스템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712 10	특성 : 보통교부세 연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상태)								
대상회계	일반회계							

	5-1. 세외수입 체납액 비율		
제 출 서	2014년도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A)	세입 결산액 (B)	(단위 : 원) 지표값 (A/B) ×100
식			

	5-2. 세외수	입 체납액 증	가율			(단위 : 원)
	2014년도말	2013	크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B)	지표값(%)
제	현재 체납 누계액(A)	반영액 (B=c-d-e)		납기미도래 미징수액(d)		{(A-B)/B} ×100
출 서				세외수입정보 시스템		
식				시 그 급의 세입관리-결의 관리-징수부관		
				리-납기미도래		
				미수납내역에서 금액을 그대로		
				입력		

6.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개요(정의)	자치단체가 자체세입 확충을 위해 과세자주권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할수록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가 감소한 경우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낮은 것을 의미								
산정공식	(2014년도 해당 자치단차 / 2014년도 해당 자치단 의 과세총액)	단력세율 적용 노력도 = (2014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2014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 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평균점수를 부여							
측정시점 (기간)	2014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직접입력 및 근거자료 제출 (외부통계) 세입세출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 특성 : 보통교부세 연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비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단위 : 원							
제출서식	2014년도 탄력세율 자치단체의 적 적용세목 징수한 해당 과세총액	용세율로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지표값세목의산출한 해당 세목의A/B							
	력 직접입력※								
	정자치부 교부세과에서 마	시설세 등 지방세 세율관련 조례를 참조하여 항 배년 조사하는 양식의 총합으로 직접 입력할 것 부 교부세과 일괄조사 대응 부서에 문의하여 작성							

7.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개요(정의)	세출결산 대비 민간이전경비의 비율로 단	민간이전경비로 인한 재정부								
71111(84)	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출결산액에 대한 민간이전경비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 성과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7-1.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결산액	민간이전경비결산액) × 100								
	2013년도 민간이전경비 결산 ※ 민간이전경비: 민간경상보조(307-2), 사회단체 민간행사보조(307-04), 사회복지보조(307-10) ※ 평가시 사회복지보조(307-10) 제외	액 보조(307-03),								
측정시점(기간)	2013~2014 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시스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7-1. 민간이전경비비율	(단위 : 원)								
	민간이전경비 결산액(A)									
	계 (A=a+b +c+d+e) 민간경상 보조(a) 사회단체 보조 (b) 민간행사 보조(d)	민간자본 보조 (e) 세출 (%) (A/B) ×100								
	일반회계 기타특별									
제출서식	7-2. 민간이전경비증감률									
	(단위: 2014 회계년도 민간이전경비결산액(A) 2013 회계년도 민간이전경비결산액(B)									
	게	지표값(%)								
	(A= a+b+c da)	사회								
	일반회계 기티특별									

8.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개요(정의)	출연·출자금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정도를 측정하 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출결산액에 대한 출연·출자금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8-1. 출연·출자금비율 =									
측정시점(기간)	2013~2014 회계연도 자료산출 e-호조시스템 (외부통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									
제출서식	8-1. 출연·출자금비율 출연·출자금 결산액(A) 제 (A=a+b 출연금 출자금 (b) 전출금 (c) 공기업자 본전출금 (d) (A/B) × 100 일반회계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기금 8-2. 출연·출자금 결산액(A) (A=a+b 출연금 출자금 (b) 조건출금 (c) 조건호금 (d) +h) 조건호금 (h) 지표값(%) (A-B)/B} 지표값(%) (A-B)/B} 지표값(%) (A-B)/B} 지표값(%) (A-B)/B} 기금 지표값(%) (A-B)/B 조건호금 (c) 조건호금 (c) 조건호금 (c) 조건호금 (c) 조건호금 (c) 조건호금 (d) +h) 조건호금 (d) 구건호금 (d) 구전호금 (d)									

9.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I								
개요(정의)	유형고정지 비주의 측								산에서의
해석 및 특징	유형고정지	비중을 측정하는 지표로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측정 유형고정자산 대비 자산유지관리비용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함							
	9-1. 자본시	설유지관	기出	비율 =					
	_ <u>자본시설유지비용</u> × 100(%) 유형고정자산								
사적고시	9-2.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								
산정공식	(2014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 2013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2013	크 크도	 - 자본시	 설유지	 비용			× 100
	※ 자본시설유지비용 : 수선유지비, 연료비, 전기요금※ 유형고정자산 : 일반유형자산(토지 제외), 주민편의시설(토지 제외)								
측정시점(기간)	2013~2014	L 히게여드	-			e-호조/			
78/10(712)	2013~2014 회계연도 (외부통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정책유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9-1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회계구분) (단위 : 원)								
	자본시석유지비용(A) 유형고정자사(B)								
제출서식	계 (A=a+b+c) 유기			전기요금 (c)	音 계 (B=d-	 자산(토지	주민편의 시설(토지 제외)(e)	지표값 (A/B) ×100
	9-2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회계구분 없이 총계) (단위 : 원)								
	2014년도 제	ll용(A)	자	2013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B) <u>지표</u> 값					
	계 = (A=a+b+c) 유	수선 연호 (III(a) (I	로비)	전기 요금 (c)	계 (B=d+e +f)	수선	연료(e)	저기	- {(A-B) /B}× 100

10. 인건비 절감노력도

개요(정의)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총액인건비(2014년 3월 이후 기준인건비) 기준액과 비교하여 기준인건비를 실제 얼마나 절감하였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노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기준인건비 기준액보다 실 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인건비 절감 노력도 = {1-(인건비 결산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								
산정공식	 ※ 총액인건비 기준액: 2013년 말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시달한 총액인건비 기준액(총액인건비 기준액: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통보) 2014년 3월 법 개정으로 "기준인건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소방직 인건비는 제외 ※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 대상 과목(7개 항목)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측정시점 (기간)	2014회계	연도 결산			산출 통계)	e-호조시스템 직접입력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지표특징	특성 : 보통교부세 연계지표								
NHT0	※ 기준인력을 준수하지 않은 단체는 값이 양호해도 인센티브 적용 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인건비 절감 노력도 (단위 : 원)								
	2014년도	인건비 결산	반영액(A)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B)					
제출서식	반영액 (A=a-b)	인건비 결산액 (a)	소방직 인건비 (b)	반영액 (B=c-d)	총액인건비 (c)	소방직 총액인건비 (d)	지표값 {1-(A/B)}		
	일반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공기업특별					

11.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개요(정의)	지방의회경비에 대한 절감 노력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자치단체가 지방의회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얼마나 절감하였는지를										
WI 7 X 70	판단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1지방의회경비 기준액										
산정공식	※ 지방의회 경	비 중	3개 고	나목)	U망의회	경비 기	순액			
	-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 지방의회경비 기준액은 2014.12.31 기준 의원 정원수를 기준										
측정시점	001.4=1711.01			7	다료산출	e-	호조시스	·템			
(기간)	2014회계연도 결산				김부통계	 부통계) 직접입력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시표특성	특성 : 평가지표, 정책유도지표, 보통교부세 연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단위	: 원)		
	지방의효	[] 경비 	_			1방의회경	비 기준액	(B)			
	소계 (A=	의정	기관 운영	예외사항 으로	소계				지표		
	a+b+c 국외	운영 공통	압무	 편성되어	(B=d+e	국외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값 1-(A/		
제출서식	-d) 여비(a)	공동 경비	추진	집행된	+f)	(d)	공동경비 (e)	(f)	B)		
		(b)	(c)	국외여비 (d)			(5)	(1)			
	일반		<u> </u>	직접입력	일반	입력	입력	입력			
	기타 특별			직접입력	기타 특별	입력	입력	입력			
	※ 기준액은 자치단체 직접입력, 결산액은 e호조 시스템으로 산출										

12.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 중 업무추진비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크지표		
해석 및 특징	기관운영이나 시책추진에 필요한 추진비용을 기준금액 대비 얼마 나 절감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어모초지	비정기	려드 _		2추진비 길	결산액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 1 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공식			중 2개 과목						
2001				책추진업무추 현황은 201	,	•)1/1녀 주 ㅈ		
						,	,,,,,,,,,,,,,,,,,,,,,,,,,,,,,,,,,,,,,,		
	직개편에 따른 변동분은 증빙자료 제출시 추가로 반영 ※ 2014년도 조직개편 내용 증빙자표 미제출시 2013.12.31 기준으로 산출								
측정시점				마료산출	e-호조시스템				
(기간)	2014회계연도 결신		(9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N#76	특성 : 평가지표, 정책유도지표, 보통교부세 연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단위 :								
	업무	추진비 결신	[액(A)	업무추진비 기준액(B)					
제출서식	소계 (A=a+b)	기관운영	시책추진	소계 (B=c+d)	기관운영 업무추진	시책추진	지표값 1-(A/B)		
세출지역	(((a)b)	업무추진비 (a)	업무추진비 (b)	(5 6 4)	비 (c)	업무추진비 (d)			
	일반회계			일반회계	입력	입력			
	기타특별 입력 입력 입력								
	※ 기준액은 제	다치단체 직접	입력, 결산의	!은 e-호조 시	스템으로 산	출			

13. 행사·축제경비 비율(증감률)

개요(정의)	행사축제를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절감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및특징	총 예산 중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13-1.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세출결산액)×100 13-2.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2014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3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측정시점(기간)	2012~2014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e-호조시스템 (3년 추세 파악) (외부통계) 직접입력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주민관심지표, 정책유도지표, 보통교부세 연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행사축제경비 비율

(단위 : 원)

	20	014년 행사축	제경비(a)		제외대상	2014년	지표값
계 (a)	201-03 (행사 운영비)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제되네당 행사축제경비 (b)	세출 결산액(c)	A=(a-b) /c×100
	20	013년 행사축	제경비(d)		제외대상	2013년	지표값
계 (d)	201-03 (행사 운영비)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해되네용 행사축제경비 (e)	세출 결산액(f)	B=(d-e) /f×100
	20	012년 행사축	제경비(g)		제외대상	2012년	지표값
계 (g)	201-03 (행사 운영비)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해되네당 행사축제경비 (h)	2012년 세출 결산액(i)	C=(g-h) /i×100

출 서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단위 : 원)

	2014년 행사축제경비(a)					2014년		
계 (a)	201-03 (행사 운영비)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제외대상 행사축제경 비(b)	세출 결산액 (c)	A=(a-b) /c×100	지표값
	2013	3년 행사축	제경비(d)		제외대상	2013년		
계 (d)	201-03 (행사 운영비)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제되대성 행사축제경 비(e)	세출 결산액 (f)	B=(d-e) /f×100	{(A-B)/ B}×100
	2012	2년 행사축	제경비(g)		제외대상	2012년		
계 (g)	201-03 (행사 운영비)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제최대성 행사축제경 비(h)	세출 결산액 (i)	C=(g-h) /i×100	{(B-C)/ C}×100

제

식

167

14.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개요(정의)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경비의 절감수준	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및특징	비용은 낮추고 서비스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0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민간위탁의 도입 취지는 민간의 효율성을 공공조직에 적용하여 비용은 낮추고 서비스의 질은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오히려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 · · · · - · - · - ·	14.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2014년도 민간위탁금비율-2013년도 민간위탁금비율)												
산정공식	2013년	도 민간위탁금비	율											
	※ 민간위탁금(307-05)													
측정시점(기간)	2013~2014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시2 직접입력	스템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정책유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	<u>N</u>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단위 : 원)										
	2014년도 민간위탁금비율(A=a/b)	2013년도 민간위	탁금비율(B=c/d)	지표값 {(A-B)/B}										
제출서식	2014년 2014년 민간위탁금 세출 (307-05) 결산액 (a) (b)	민간위탁금 세출 민간위탁금 세출 (307-05) 결산액 (307-05) 결산액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	기타특별												

1.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개요(정의)	법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확보 여부 파악												
해석및특징	법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확 수 부여												
산정공식	2014년도 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전출금비율 =												
측정시점(기간)	2011-2014회계연도 결산	다르사촌 지방세시스템(위텍스)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준법지표, 정책유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1%가 법정기준임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재난관리기금전출금비율 2014회계 연도 적립 개난관리 기금전출 금 B = (ⓐ+(b+(e))/3 보통세(111) 보통세(111) 보통세(111) 보통세(111) 직접입력 (단위: 10 전 명균연액 명균연액 명균연액 명균연액 (%) 지표 (%) (%) 보통세(111) 보통세(111) 보통세(111) 보통세(111)												

2.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개요(정의)	법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 확보 여부 파악(서울, 인천, 경기)												
해석및특징	법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서울, 인천, 경기)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며 법정 금액 미확보시 페널티 점수 부여												
	2014년도	. 지역상생발전기금	선출금										
	상생발전기금비율 =	ما به الحالية الرابية ال		× 100(%)									
산정공식	※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111-08) ※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비율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저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원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 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측정시점 (기간)	2014회계연도 결산 2015년 6월 30일기준 추가정산액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3	시스템(위텍스) E 시스템 출결산서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준법지표, 정책유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35%가 법정기준임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상생발전기금전출금비율 (단위: 원) 2014회계연도 지역상생발전기금 30일까지 추가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C (A+B)/C × 100 직접입력(서울, 인천, 경기)												

3. 위탁금 편성 후 보조금 집행

개요(정의)	위탁금으로 편성하고 보조금처럼	집행한 현황 파	악										
해석및특징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p.125에 명시된, 민간위탁금(307-05)을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는 민간보조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유도하는 지표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 12-3. 민간위탁금(307-05) ①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 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는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서 구체적인 절차를 하위규정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위탁경비 산출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격 작성요령」등에 의하여 성상 사후 정산이 필요한 경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 민간위탁 계약시에는 「지방계약보로 계약을 제결하여야 하며, 다 기반계약법을 따르지 (307-05)하여,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기반계약보를 따르지 (기반계약서류 미비 집행 파악 - 부적절한 지출 발견시 페널티	학의 이행 등에 관련 다라야 한다. 인 절차를 규정하고 성으로 위임한 경우 약방식을 적용할 경 」(안전행정부 예구 소요비용을 산정하. 우에는 개산계약 5 한다. 학다. 학대. 변병」 및 관련 민간보조사업 예산 면성 사업예산(않고 보조금처럼	한 사항은 「지방계 있는 사항(법령에 포함)은 그 법령이 우에는 「지방자치 귀) 제2장 「예정가 고, 해당 사업의 특 E는 사후원가 검토 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 산으로 편성되어서는 안됨 에 대해 샘플 5건을 선정 I 지출한 내역파악										
측정시점(기간)	2014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예산서, 계약서 등 집행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준법지표, 정책유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샘플 5건 중에서 0건 발생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e호조 제출서식은 없으며, 현지실사 (307-05) 관련 지출서류 일체 준비	시 민간위탁금 예	산서, 계약서 등 민간위탁금										

4. 자체사업 보조금 절감

개요(정의)	자체.	사업	보	등조	절김	비율	耳	악																	
해석및특징	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절감을 유도하며 평균 이상으로 절감하였을 경우 인센티브점수 부여																							
산정공식	*자체사 2015년 *보 조금 2015년	2014년도 자체사업보조금 -2013년도 자체사업보조금 자체사업보조금 절감비율 =																							
측정시점 (기간)	2013	2013~2014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무조지스템 직접입력																							
지표특징	l				시적 E지표	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	회계	, フ	타	특별	회계																			
		2 계 민간 보	014 난경성 보조	년도 상사:	- - - - - - - - - - - - - - - - - - -	절감 예사업 민간형 보기	보기	조금 사회 보	복지 조	<u> </u>	보조.		^{AI}	·경신 !조	사	회단 보조 모	체	행사조	사	_	로지 로지 조	민	코조	:	지표 값 {(A-B)/B}
제출서식	A = (a + b + c + c + c + c + c + c + c + c + c		ŧ	a	b		С		d			е	B = (f + g + h + i + j)	f			g	H	1		i			j	
	일반 회계		2	댕	조		직 접		직접			직 접		Z Z			직 접	2	디		직 접			직 접	
	기타 특별		2		조집인		직 접 입		직 접 입			직 접 입		7 7 2			직접입	2			직 접 입			직접입	공란

□ 재정분석 참고지표

- ① 지방채무잔액지수
- ② 지방채무상화비비율
- ③ 장래세대부담비율
- ④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⑤ 예산집행률
- ⑥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⑦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 ⑧ 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 ⑨ 유동비율
- ⑩ 고정순자산비율(증감률)
- ① 경상재원비율
- ② 총예산대비 자체수입증가율
- ③ 지방세수입 대비 인건비비율
- ④ 부채증가액(증감률)
- ⑤ 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 16 관리채무부담비율
- ① 관리채무상환비율
- ⑧ 의무지출비율
- ⑤ 자본시설지출비율
- ② 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도

1. 지방채무잔액지수

지표유형	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일반재원 대비 지방채무 현재액													
해석및특징	지방채무의 절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을 의미													
	지방채무잔액지수 =	× 100 결산액												
산정공식	 ※ 지방재무진액은(귀지방채별행 총액한도제 신정식(13년 한도 신정 까지 적용에 따 ※ 일반재원 : 결산서상 세입 결산부문의 실제수납액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모두 포함 ⇒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분권, 부동산교부세를 모두 포함 * 재정자주도 작성시 분자에 해당하는 일반재원과 동일한 범위를 													
	※ 지방채무 잔액: 채무결산보고서 작성기준의 지방채무 범위와 동일 ⇒ 지방채 증권+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 ⇒ 시·도의 경우 지역개발채권 발행액도 지방채무의 범위에 포함 ⇒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도 포함 ⇒ 지방채무 잔액은 원금기준으로 작성													
측정시점(기간)	2014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시스템 채무결산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	계, 공기업특별회기	계, 기금회계)											
	지방채무잔액지수		(단위:원)											
제출서식	2014 지방채무 잔액(A) 구 계 A 지 차 채무 보증 분 (a)+(a) 하 (a) (a) (a) 분 (b)+(c) 권 (b) (c) (d)	2014 일반재 계 B= (@+① +③+① +①) 예 수 있 (한 +③+①) 세 있 수 있 (한 +③+①) 세 있 수 있 (한 +③+①) 세 있	원 결산액(B) 지											
	합 계 일반회계 이타특별 당특회계 기 금													
검증자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연락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채무결산보고서의 채무현황과 일치여부 (작성부서)													

2.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지표유형	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일반재원 대비 과거4년 및 미래4년 간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														
해석 및 특징	채무상환에 따른 단기적 재정운영의 안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되는 것을 의미함														
	지방채무상환비비율 =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100(%)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산정공식	☞ 과거4년: 2011, 2012, 2013, 2014 ※ 채무상환액 및 일반재원결산액는 년 한도 산정 까지 적용)에 따른 ※ 일반재원: 결산서상 세입 결산투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고 →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분등 * 재정자주도 작성시 분자에 해당하 ※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은 조기상환	: (구)지방채발행 값임 본문의 실제수납액 수입+지방교부세+2 과 임시적 세외수입 권, 부동산교부세를 하는 일반재원과 등	총액한도제 산정식('14 도정교부금+재정보전금 입을 모두 포함 를 모두 포함 동일한 범위를 포괄												
측정시점 (기간)	2011~2014회계연도 결산		-호조 시스템 무결산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무상환비비율	과거4년+미래4년2	(단위 : 원												
	과거4년+미래4년간 지방채무상환액(A)	(B)												
제출서식	계 A=(1+ d) 사무 조기 자환 지원 지원 사무 지원 사후 상환 악학 (1) (2) (3) (2) (3)	계 채무 조기 국비 시도 ⁴ 년 (A/B) 는(1+ 상황 상황 차환 지원 지원 채무 +g+h네 방 수 교 교 복 재원 ×100													
	*기초 단規만 해당														
	2011~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신	·서, 연 :	락처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채무결산보고서													

3. 장래세대부담비율

지표유형		건전성			지표	내용		참고	l지표					
개요(정의)	현재 형성된	현재 형성된 사회자본과 후세대의 채무부담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지표												
해석및특징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합계의 비율을 측정하는 재정 건전성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부채합계 장래세대부담비율 = × 100(%) 유형고정자산 ※ 유형고정자산 : 일반유형자산 + 주민편의시설 + 사회기반시설												
	※ 부채합계	: 복식부기	재정성						차입부차	1				
측정시점(기간)	2014회계연	도 결산			료산출 부통계)		·호조시 식부기		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특성 : 일반			표		·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	:은 것이 t	·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	반회계, 기	타특별	회계, 등	공기업	특별회	계, 기	금회계)					
제출서식	구조	부채형 계 유동 A= 부채 a+b (a)	통액(A) 장기 차입 부채 (b)	기타 비유동 부채	계 B= c+d+ e	형고정 일반 유형 자산 (c)	주민 편의 시성 (d)	3) 사회 기반 시설 (e)	(단위: (지표값 (A/B) × 100					
검증자료	2014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재정상태보고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재정상태보고서의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확인													

4.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지표분류		효율성	5	지	표내용	참.	고지표					
개요(정의)	중기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사업비의 당해연도 사업예산 반영 년										
해석및특징		재정운영의 거시적 계획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 지방재정 (예비비 포 ※ 천재지변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측정시점(기간)	2014ই	2014회계연도 최종예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직접입력										
지표특징	,) 시 : 거,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	0 100%) 달성 및	근접할수	수록 바람?	직						
대상회계	일반회	계, 기타 [.]	특별회계,	공기업특	특별회계							
	중기기	대정계획변	반영비율				(단위 : 원)					
		종세출예산/ 정책사업비(중기지방지	H정계획의 <i>I</i>	사업비(B)	지표값					
제출서식	계 A=(a-b)	정책 사업비 (a)	천재,재해 (b)	계 B=(c+d)	정책 사업비 (c)	(q) 예미미	(%) (A/B)×100					
제글지그												
	복구비 ※ 공기업	 (b)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없이 긴급시설 복구비를 집행한 경우 작성 공기업특별회계 정책사업비 = 총예산-총액인건비-(201-01~02, 202-01~02, 720, 730, 220) 										
	2014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연락처										
검증자료	<u>※</u> 현장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2013	년 중기자	l방재정계	회	(작성부/	H)						

5. 예산집행률

지표분류	효율성		지표내용	}	칟	·고지王	£						
개요(정의)	자치단체의 당해년	자치단체의 당해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집행된 예산의 비율											
해석및특징	예산집행률이 높 은 것으로 판단	예산집행률이 높을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높 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예산집행률 = -	예산현액											
	※ 세출결산액 :	세출지출역											
측정시점(기간)	2014회계연도	결산	자료산활 (외부통기			E시스템 출결산/	Н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 특성 : 정책유9			·									
목표 (바람직한 상태)	100% 달성 및	근접할수	록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티	·특별회계,	공기업특별	회계									
	예산집행률					(단위	: 원)						
	회계명	회계수	세출결산액 (A)	예산 [:] (E		비율(% (A/B)×1	· 11						
TII - 2 . I . A I	총계												
제출서식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흑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세출결산서 상 예산현액, 세출결산액 확인											

6. 정책사업투자비비율

지표분류	효율성	지	표내용	참고	집지표		
개요(정의)	정책사업비에서 시설비·자산취득비 등 투자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해석및특징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 것으로 판단	본형성을 우	한 투자지	출이 확[재되고 있는		
산정공식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투자지출액: 자본지 * 공기업자본전출금 4	= 정책/ 출(400) +	투자지출액 사업비 결제 융자및출	×1 산액	00 %		
측정시점(기간)	2014회계연도 결산		e-호3) 세입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 특성 : 일반지표, 정취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	1계, 공기업	특별회계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	단위 : 원)		
	투자지출	액(A)			지표값(%)		
제출서식	소계 자본지출(a) ^운 (A=a+b-c) (400)			정책사업비 결산액(B)	(A/B)× 100		
	※ 투자지출액 : 자본지출(400)+융자및출자(500) ※ 공기업자본전출금 404 제외 ※ 정책사업비 : 결산서 부속서류의 사업구분별 정책사업비						
	2014회계연도 세입서		연락처	4			
검증자료	<u>※ 현장검증시 확인사</u> ▶ 자본지출(400), 융자						
	공기업자본전출금(4 정책사업비 확인	04),	작성지 (작성부				

7.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지표분류	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투융자심사를 받아 추진되는 사업 중 당초 예산편성 계획액 대비 실제 예산편성된 금액의 비율							
해석및특징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							
산정공식	(구) 1 투용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치 (고) 10 투용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치 (고) 12 전 (고) 14년도 투용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2 (고) 14년도에 투용자심사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2 (고) 14년도에 투용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2 (고) 14년도 투용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2 (고) 14년도에 14년 제외 * 2014년도에 투용자심사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2 (고) 14년도에 투용자심사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2	해심사 제외) = 2015년도 실제 예산편성액 2015년도 예산편성 계획액 2015년도 예산편성 계획액 2015년도 예산편성 계획건 2015년도 예산편성 계획건 업에 한함(부적정, 재검토, 점 2015. 6월말까지 지방의회 해심사 포함) = 2015년도 실제 예산편성의 2015년도 예산편성 계획액 2015년도 예산편성 계획액 2015년도 예산편성 계획액 2015년도 예산편성 계획액 2015년도 예산편성 계획건수 2015년도 예산편성 계획건수 업에 한함(부적정, 재검토,)) (수) 수) 수) 사 × 30(%) } 반려 제외) (취) (취)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측정시점 (기간)	2015회계연도 예산 자료 (외부	산출 지정인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정책유도지표	,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100% 달성 및 근접할수록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	별회계						

	⑦-1 투원	당자심사사	업 예산편	성비율 (자	체심사 제	외)	(단위: 원)
	계획대비	예산편성액	(비율(A)	계획대	비 예산편 비율(B)	성 건수	
	편성액 비율 (A=a/b ×100)	실제 예산 편성액(a)	투융자 심사시 예산편성 계획(b)	건수비율 (B=c/d ×100)	실제 예산편성 건수(c)	투융자 심사시 예산편성 계획건수 (d)	
제출서식	⑦-2 투원	 ;자심사사	업 예산편	성비율 (자	체심사 포	함)	(단위: 원)
	계획대비	예산편성약	¦ 비율(A)	계획대	비 예산편· 비율(B)	성 건수	
	편성액 비율 (A=a/b ×100)	실제 예산 편성액(a)		건수비율 (B=c/d ×100)	실제 예산편성 건수(c)	투융자 심사시 예산편성 계획건수 (d)	
		세입세출예			P	년락처	
コス ロコ		!증시 확인 ₹·융자심사		-	Н		
검증자료	· 2015년	투융자심사의 예산편성결회 에서는 투융지	과(예산서 시	,		ł성자	
		참고하여 시		<u>-</u>	/II _ I		

8. 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지표분류	3	2월성		지표니	내용	참	고지표	
개요(정의)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부서관리비용의 적정비율 및 연도간 증감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해석 및 특징		있어서 인력 및 것으로 판단	부서운영	을 위힌	· 비용이	낮을수	수록 경비절감	
산정공식	ə 8-2. 행정운영	8-1. 행정운영경비비율 = 행정운영경비 결산액 × 100(%) 세출결산액 8-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 (2014년도 행정운영경비결산액 - 2013년도 행정운영경비결산액)						
	※ 행정운영경(2013년. 네: 인력운영비와 기	도 행정운영 기본경비의 협		열산액		× 100	
측정시점 (기간)	2013~2014	회계연도	자료산 ((외부통:		e-호조/ 세입세출		너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미시적 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음	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	타특별회계						
	⑧-1. 행정운	영경비비율					(단위:원)	
	행정	운영경비 결산!	액(A)		I 중 거 시 0	ш	T 7 1/0/)	
	계 (A=a+b)	인력운영비 (a)	기본경 (b)	비	출결산º (B)		지표값(%) V/B)×100	
제출서식	® -2. 행정운	영경비증감률					(단위:원)	
		회계년도		2013 회			지표값(%)	
		B비결산액(A)			내결산액({(A-B)/B}	
		:경비 인력운영바 a) (b)	l 계 B=c+d	기온경 (c)	비 인력원		×100	
	(A=a+b) (a) (b) B=c+d (c) (d)							
	2013~2014 👨	 기계연도 세입세출	· 흥결산서 부	소서류 ▮	연락처			
	※ 현장검증시				,^			
검증자료	▶ 사업예산 결산	·서 상의 인력운영	베 및 기년	경비 📗	작성지	}		
		·현원 현황표	1위 미 진국		(작성부/	서)		
	▶ 행성군영경대	II 예산편성기준X	I심 및 반단	사뇨				

9. 유동비율

지표분류	건전성		지표내·	용	춛	남고지표	
개요(정의)	복식부기 재정상태보고서의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의 비율						
	회계연도 종료일로	부터 1년	크 이내에 9	만기가	- 도2	배하는 유동부	
해석 및 특징	채를 상환할 수 있	!는 정도	의 유동자	산을 보	로유ō	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지금	-					
산정공식	유동비율 =	자산 등부채	× 100(%))			
	※ 재무보고서 중 재정	상태보고	1서의 유동자	다산과	유동복	쿠채	
측정시점(기간)	2014 회계연도		료산출 부통계)	e-호조시스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재정상태보고서)		 재무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치표					
ハガラ	특성 : 일반지표,	정책유도	지표, 자치	1단체	학습	i 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 바람격	4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	별회계, 공	기업특	별회	계, 기금회계)	
	유동비율				((단위 : 원)	
제출서식	유동자산(A)	유동부채(B)		(E값(%)) × 100	
	2014 회계연도 연락처						
검증자료	재무보고서(재정상E	내무보고서(재정상태보고서)					
	※ 현장검증시 확인시	·항(✔)	항(✓) 작성 무서)				
	▶ 재정상태보고서의 유동자신	난, 유동부차	항목 확인	707	-/I/		

10. 고정순자산비율(증감률)

지표분류	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이 점하는 비중 및 증감상황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판	고정순자산은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등 고정자본 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판단할 수 있음						
산정공식	(1)-1 고정순자산비율 = 고정순자산/선 (1)-2 고정순자산증감률 = 2014년도 고정순자산 - 	2013년도 고정순) 고정순자산 고정순자산						
측정시점 (기간)	2013~2014 외계언도 (외부통	!출 e-호조시스템 [계) 복식부기 재						
지표특징 목표·기준치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	일반시표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	기금회계)					
제출서식	(A) ※ 2014회계연도 재정상태보고서의 ※ 2013회계연도 재정상태보고서의	고정순자산 (B) {	(단위:원) 지표값(%) (A/B) × 100 (단위:원) 지표값(%) (A-B)/B}×100					
	▶ 고정순자산증감률 연도 2014년 2013년	고정순자(산 증감률					
검증자료	복식부기 재정상태보고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복식부기 재정상태보고서 상의 2013년과 2014년의 고정순자산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1. 경상재원비율

지표유형	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세입결산액에 대한 경상	세입결산액에 대한 경상재원(일반재원-경상비용)의 비율						
해석 및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며 호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경상재원비율 =	내원(일반재원-경상비용 세입결산액) × 100(%)					
	※ 일반재원 : 지방세+경상세오※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							
측정시점 (기간)	2017회비여도 결사 : .	료산출 e-호조시스템, 부통계) 속서류, 복식부	세입세출결산서/부 기 재정운영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정책유	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을수록 바람	ZI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재원비율		(단위 : 원)					
	경상 일반재원(a) 경상 지병 경상 지병	경상비용(b)	- 제입 지표값					
	재원 (A) 계 지방세 세외 교투 수입 세	계 인건비 변 표	경 일부 (B) ×100					
제출서식	a= ① ② ③		8 당역)					
	A= ②+ 조정 재정보전= a-b ③+ 교부금 재정보전=	(6+7) 재정 교육비특 +(8)+ 보전금 회계전출	별 금					
	(4)+ (5) (フ 초) (フ 초)	9+⑩ 9 ⑩ (광역) (광역)						
	(-12)	(8 1) (8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	산서 연락처						
	및 복식부기 재정운영보고서	,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_ 10:4						
	▶세입세출결산서의 일반재원 및 복수 재정운영보고서의 경상비용 내역							
	7110C0TT/17 00010 417							

12. 총예산대비 자체수입증가율

지표유형		건전성	5		지표니	용	참	고지표	
개요(정의)	총예산 증가액에 대한 자체수입 증가액의 비율로 재정운영 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총예산	증가에 비	해 자체=	누입 증	가 정	도를	측정히	h는 재정	
해석및특징	건전성	지표로 _	1 비율이	높을수	목 지	H정운	운영의	안정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	·단함						
	총예산다	비 자체수(입증가율						
산정공식	(2	.014년 자치	수입액 -	2013년	자체=	누입의			
	=	(2014년 등			 ! 총예a	· 산액)		100(%)	
	※ 자체수	입 : 지방세	+ 세외수		=				_
측정시점(기간)	2014호	계연도 길	렬산		산출 통계)	K	네입세출	· 클결산서	
지표특징	1	시 : 거시적 일반지표, 주	—	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	이 높은 글	것이 바림	·직					
대상회계	일반회기	, 기타특	별회계						_
	총예산	대비 자체	수입 증기	가율				(단위 : 원)
	자체	수입 증가역	백(A)	총(계산 증	가액	!(B)	지표값	
제출서식	계 A=a-b	2014년 자체수입 (a)	2013년 자체수입 (b)	계 B=c-d	2014 총예(c)	<u>사</u>	2013년 총예산 (d)	(A/B) ×100	
	2014회계9	면도 세입세를	출결산서			여	락처		_
コスココ	<u>※</u> 현장검	증시 확인사	항(/)						_
검증자료	▶ 2013, 20)14년 자체수	입액(지방세,	지방세, 세외수입) 확인 작성자					
	▶ 2013, 2014년 총예산액 확인 (작성부서)						성부서)		

13. 지방세수입대비 인건비비율

지표유형	건전성		Ţ	표내용	롱	참고지표
개요(정의)	지방세수입액 대비 인건비의 비율로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및특징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 전성 지표로 이 지표 I 당능력이 높아 재정운	비율이 낮	을수록	륵 지방	세수입	의 인건비 충
산정공식	지방세수입대비 인건!	- 율비바		!비 결 방세수		- × 100(%)
측정시점(기간)	2014회계연도 결산		자료((외부		세입	세출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 특성 : 일반지표, 주민				•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대비 인	건비 비율	Ē			(단위 : 원)
제출서식	인건비 결산액(A)	지방세	수입액	(B)		표값(%) /B)×100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연략	락처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인건비(100) 결산액 확인 작성자					
	► 지방세 수입액(100) 확인			(작성	부서)	

14. 부채증가액(증감률)

지표유형	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						참고지표
개요(정의)	부채총액의	증가액과 증감률	룰로 부채관	리 능력	력을 측정	하는	: 지표
해석및특징		:력을 측정하는 록 부채관리능				1 증	하 에나 비율
산정공식	부채증감률 =	201	4년도 부채 3년도 부채	총액 - 총액	- 2013년도 	부: 	
측정시점(기간)		I연도 결산	, , , , , , , , , , , , , , , , , , ,	나료신	·····································	호	조시스템 부기 재무보고서
지표특징	, .,	: 미시적 지표 반지표, 주민관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날	낮은 것이 바람	남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	일반회계, 기티	·특별회계,	공기	l업특별호	1계,	기금회계)
	부채증가(액, 율)					(단위:원)
	구분	14년도 부채총액(A)	13년도 부채총액		증가규도 (A-B)	2	표값 증가율 ((A-B)/B)×100
제출서식	합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검증자료		도 복식부기 (재정상태보고 시 확인사항(•		(;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	

15. 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충액비율

지표유형	건전성 지표내					참고지표	
개요(정의)	해당연도 세입예산(당초) 대비 채무지급보증 총액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및특징	전성 지표로	세입예산(혹은 결산) 대비 채무지급보증 총액을 측정하는 재정 건 전성 지표로 그 값(비율)이 낮을수록 향후 재정위험이 낮아 건전 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세입예산대비차	무보증의	백비율 = -	채무보 세입예	증 총액 산(당초)	× 100(%)	
	※ 회계범위 : ※ 보증범위 : 기		상 지급보증	및 예산 외	부담 포함		
측정시점(기간)	2014회계연	!도 결신	. F	마료산출 기부통계)		시스템 1 재무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른	}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효	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	기업특별회	계, 기금회기	비)	
	세입예산대비 역	?발채무 총	·액비율			(단위:원)	
제출서식	우발채무총 액(A=a+b)	보증채 무액a	예산외의! (부지매입력 리턴제/	학약/토지	세입예산 (B)	2014년도 지표값 (A/B*100)	
	※ 행정자치부				·료 입력	_	
	2014회계연도 파악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l 및 별도	연락처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재무보고서 확인▶ 지급보증, 예산와		(√)		작성자 (작성부서)	

16. 관리채무부담비율

지표유형	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경상일반재원 대비 지방채무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저량(stock) 지표						
해석및특징	지방채무의 절대적 수준을 측정 건전한 것을 의미	하는 지표로 그 비율	물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 * 2014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신	구잔액(BTL 지급액 경상일반재원 정방식과 동일	포함) × 100(%)				
산정공식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경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 ※ 지방채무 잔액 ⇒ 지방채 증권+차입금+채무	일 부담행위+보증채무이	행책임액				
	→ 자치단체의 일반·특별회계 입·상환하는 금액은 제외 → 지방채무 잔액은 원금기준 ※ BTL 지급액 → 준공후 자치단체로 소유권 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의	으로 작성 이 이전된 시설물에 무가 생긴 총액중 :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				
측정시점(기간)	2014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시스템 채무결산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	H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	회계, 공기업특별:	회계, 기금회계)				
	관리채무부담비율		(단위:원)				
	2014 지방채무 잔!	박(A) 2014	4 경상일반재원 결산액(B) 지표				
제출서식	분 ©+Ø+ 생 블 행위 ⁰	백 e 박상	本 (
	합계 의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 기 업 특별회계 기 금						
검증자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채무결산보고서의 채무현황:	·, ··· – – ·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7. 관리채무상환비율

지표유형	건전성	지표내용	츤	고다	田					
개요(정의)	경상일반재원 대비 미래4년의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									
해석 및 특징	채무상환에 따른 단기적 재정운 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채무상환에 따른 단기적 재정운영의 안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되는 것을 의미함								
	관리채무상환비율 =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형	 의 평균수입액	× 10	00(%)						
산정공식	☞ 미래 4년: 2015, 2016, 2017, 2018년 ※ 2014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산정식과 동일 ※ 관리채무: 일반채무 + BTL지급액 총액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경상세외수압+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세외수압은 경상적 세외수입 ※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은 조기상환액, 차환액, 국·도비 채무상환액 제외 ※ 평균 관리채무상환액 및 평균 경상일반재원 수압액 계산식 ⇒ 미래4년 상환할 평균채무액: 미래 4년 관리채무상환액* / 4년 * 기준일 현재 지방채무 잔액을 기준으로 미래 4년 관리채무상환액 산정, 이 자액은 과거 4년 평균 이자액을 미래 4년간 관리채무상환액에 합산 ⇒ 평균 경상일반재원 수압액: 미래 4년 경상일반재원 수압액* / 4년 * 직전연도의 경상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 경상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									
측정시점(기간)	2015~2018회계연도	자료산출 e- 기부통계) 채의	-호조 시스 무결산보고	_ -템 !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기	ᅦ, 공기업특별호	l계, 기금호	회계)						
	관리채무상환비율			(단의	위 : 원)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 액(A)	미래 4년 경상일빈	재원의 평균: 3)	수입액						
	이래 4년	, , , , , , , , , , , , , , , , , , ,	<u>"</u> 미래 4년		TI 77 71					
제출서식	A=(1) 전기방비(a=1+2+3) 국비 시도 되는 사람이	계 B=e+f+ g+h+i+i dl 수입 (e) (f)	조정교부급(h) 지방교부세(g)	재정보전급()	지표값 (%) (A/B) ×100					
	*기 <u>본</u> 체 만 해당									
שאדום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각처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내용과 일		성자 부서)							

18.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지표분류		효율성	5		지표내용	3	참고지	丑		
개요(정의)	세출결산	대비 의두	무지출의	비율로 자	l정운영의	경직도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세출결산액에 대한 의무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특징	유연성0	낮은 것	선으로 핀	난단						
산정공식	18-1. 의무지출비율 =									
측정시점 (기간)	2013~201	2013~2014 회계연도 자료산출 e-호조시스템 (외부통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0	낮은	것이 바	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1, 기타	특별회계							
	18-1. 의	무지출터	비율				(딘	위:원)		
			의무지출	결산액(A)						
	Я	인력 운영비 (a)	기본경비 (b)	국도비 사업비 (c)	의회비 (d)	차입금 원금상환 (e)	세출	지표값 (%)		
제출서식	(A=a+b +c+d+e+f +g+h+i+j)	차입금 이자상환 (f)	재정보전 금(광역) (g)	보전 조정교부 상생발전 재난관리 당역) 금(광역) 기금 기금전출	결산액 - (B)	(A/B) ×100				

	18-2	. 의	무지를	출증김	를							(단위:	원)
		_		회계연9 결산의				+m+ n+o+ p+q+r r+s+t)					
	Я	인력 운영 비 (a)	기본 경비 (b)	국도 비사 업비 (c)	의회 비 (d)	차입 금원 금상 환(e)	계	고 기본 국년 명 경비 사((k) (l) (r 명=k+ +m+	사업비		금원 금상	지표 값(%)	
제출 서식	(A=a+ b+c+ d+e+f						(B=k+ l+m+ n+o+						{(A-B)/B} ×100
M ^A	+g+h +i+j)	^ . <u>-, ., </u> 오성 성생 재단 · · ·	p+q+r +s+t)	자입 금이 자상 환(p	보전 금 (광역)	부금 (광역)	전기금 (광역)	관리 기금 전출					
	무속서류												
검증 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세출결산서 상의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국도비사업비, 의회비, 채무상환비(차임금원금상환, 차입금이자상환), 재정보전금(광역), 조정교부금(광역), 상생발전기금(광역),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인												

19.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지표분류	효율성	지표	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정책사업비 대비 자본시 통한 장기적 재정안정성			기반시설 형성을					
해석 및 특징	정책사업비에 대한 시설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9								
	(5)-1. 자본시설지출비율 시설비지출 정책사업	<u>он</u> × 1	00(%)						
산정공식	산정공식 (5)-2.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 (2014년도 시설비지출액 - 2013년도 시설비지출액)								
	※ 시설비지출액 : 시설난	II 및 부대비(4	401)						
측정시점(기간)		2013~2014 자료산출 e-호조시스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자 특성 : 일반지표, 정책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	계							
	⑯-1 자본시설지출비	율		(단위 : 원)					
	시설비지출액(A)	정책사업비(В)	지표값(%) (A/B)×100					
제출서식 ⑮-2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단위 :									
	2014년도 시설비지출액(A)	2013년도 시설비지출액		지표값(%) {(A-B)/B}×100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시	네류	연락처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형 ▶정책사업비 확인 ▶시설비및부대비(401) 확		작성자						

20.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도

지표유형	재정운영노력				지	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경비의 절감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및특징	총 예산 중 민 절감노력이 밝				01 2	암소할수 [.]	록 자치!	단체의 기	대정운영	
시되고시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1-(2014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2013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세출결산액)×100								비율)}	
산정공식	※민간이전경비 중 4개 과목(사회복지보조는 평가시 제외)									
	민간경상보조(3	807-02),	사회단처	l보조	:금(3	807-03),	민간행시	보조(307	7-04),	
	사회복지보조(3	07-10),	민간자본							
측정시점(기간)	2013~2014회겨	∥연도 결	!산		료산 부통	0 – 7	호조시스	:템		
지표특징	,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주민관심지표, 정책유도지표, 보통교부세 연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내용: 민간경상보조(307-02), 사회단체보조금(307-03), 민간행사보조 (307-04),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단위 : 원)									
	2014년 민간보조액(a)									
	소계 (2P명상 (a) 보조)			(VF			세출 결산액 (b)	A= (a/b) ×100	지표값 1- (A/B)	
제출서식	20.	13년 민	フレー エ 0	H/a\						
	20 307-02 3 소계 (민단	13년 년: 307-03 3	간모소의	;(C)		400 04	세출	B=(c/d		
	(c) 경상	(사회 단체 보조금)	(민간 행사 보조)	(사본	-10 함복 참()	402-01 (민간자 본보조)	결산액 (d)) ×100		
	2013~2014회계연				{	견락처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 보조, 사회복지보조 금액 확인 (작성부서)									